

공간통계정보관리 근거법제의 입법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Spatial
Statistics Information Management

2008. 12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간통계정보관리 근거법제의 입법추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 헌 영

참 여 진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광운대학교)	권현영
공동연구원(명지대학교)	정운수
공동연구원(서울산업대학교)	김기환
공동연구원(광운대학교)	이상경
공동연구원(연세대학교)	이삼열
공동연구원(NIA)	고윤석
공동연구원(홍익대학교)	최진원
연구보조원(광운대학교)	김경렬
연구보조원(광운대학교)	박광수
연구보조원(광운대학교)	이정민

통계청

통계지리정보과장	정창호
전산사무관	강계화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의 목적	3
4. 연구의 범위	3
5. 보고서의 구성	5
6.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지식정보사회와 공간통계정보	7
제1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통계행정	7
1. 사회변화와 통계수요의 증가	7
2. 지식정보화와 새로운 통계행정 수요	10
3. 지식정보화에 따른 통계정책의 변화방향	11
제2절 통계제도의 변천 및 현황	12
1. 통계제도의 변천	12
2. 통계제도의 현황	14
1) 통계의 분류	14
2) 통계의 특성	15
3) 통계제도의 비교	15
4) 통계조직 및 통계법	17
제3절 공간통계정보의 개념과 수요	18
1. 공간통계정보의 개념	18
1) 개념정립의 필요성	18
2) 공간통계정보의 정의	20
3) 인접 개념과의 비교·분석	21
(1) 국토정보	21
(2) 지리정보	21
(3) 공간정보	22
(4) 공간통계정보법(안) 내부의 유사 개념과의 비교	22
4) 공간정보와의 관계	22

2. 공간통계정보의 의의와 수요	24
1) 공간통계정보의 의의	24
2) 공간통계정보의 수요	25
(1) 공공차원의 수요	25
(2) 민간차원의 수요	27
제4절 공간통계 관련 행정업무 현황	27
1. 기초단위구	29
2. 전수집계구	32
3. 표본집계구	35
4. 도시화지역	36
5. 도시권	39
6. 사업체 정보	45
7. 인구조사	46
8. 센서스지도	48
9. 행정체계	49
제5절 공간통계업무의 개념모형	49
1. 공간통계업무 개념모형	49
2. 건축·주택 관련 통계와 공간통계와의 연계	52
1) 건축·주택 행정업무 개요	52
2) 건축·주택 행정업무 관리조직	53
3) 건축·주택 행정업무 처리절차	54
4) 건축·주택 행정업무 관련 법·제도	56
5) 공간통계정보와 건축·주택 행정통계와의 연계	58
제6절 국내·외 통계 관련 서비스	59
1. 국내 통계 관련 정보화	60
1) 국가통계포털시스템	60
(1) 추진배경	60
(2) 추진방향	61
(3) 국가통계포털시스템 기반 구축	63
2) 통계네비게이터	70
(1) 추진배경	70
(2) 시스템 구성	71
(3) 서비스 내용	74
3) 인터넷 통계조사시스템	77

(1) 추진배경	77
(2) 시스템의 구성 및 적용기술	78
(3) 인터넷 조사의 성과	81
4) 국가 GIS 구축 사업	83
(1) 세부 국가 GIS 구축 사업	87
(2) 기타 국가 GIS 구축 사업	94
2. 해외 통계 관련 정보화	99
1) 미국	99
2) 캐나다	100
3) 유럽	101
4) 일본	102
제 3 장 공간통계정보관리의 법제적 고찰	103
제1절 국내 공간통계정보 관련 법제 현황	103
1. 통계법	104
2.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106
3. 국가공간기본법안	108
제2절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111
1. 미국	111
2. 영국	113
3. 캐나다	114
4. 일본	115
5. 시사점	116
제3절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과제	117
1.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배경 및 필요성	117
2.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규범적 의미	118
3.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과제	119
1)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이념의 실현	119
2) 실효적·실질적 표준화의 구현	120
3) 지역통계 발전계획을 통한 지방자치이념의 구현	121
4) 중앙과 지방간 마디 없는 행정의 구현	122
제4절 입법체계 분석	123
1. 공간통계정보법의 헌법적 근거	123
2. 헌법의 원리 실현과 공간통계정보	123

1) 국민의 권리 실현	123
2) 평등권 제고	125
3) 사생활 비밀과 자유 존중	125
4) 국가경제 향상 제고	127
3. 관련 법률의 분석	127
1) 관련 법률 분석의 목적	127
4. 법이론적 분석에 따른 공간통계정보법의 입법체계 분석	128

제 4 장 입법 추진 전략130

제1절 법률안의 방향130

1. 공간통계정보 법(안)의 성격	130
2. 공간통계정보 법(안)의 목적	130
3. 법률안의 쟁점	131
1) 공간통계정보의 개념 정립	131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2
3) 공간통계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기술 기준	132
4) 타부처와의 소통 협력 기반 마련	132
5) 정보의 보호와 정책품질에 관한 책임	133

제2절 입법 환경의 성숙133

1. 헌법적 당위성	133
1) 지식정보사회 헌법적 요청	133
2) 정보복지증진권	133
3) 알권리의 보장	134
4)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실현	134
5)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의무	134
2. 실무적 당위성	135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135
2) 중앙기관 지자체 간의 행정협력 근거 마련	135
3) 관련 정보자원간의 연계	136
4) 안정적 예산의 확보	136
3.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성과	137

제3절 관련 법률과의 조화 모색138

1. 관련 법률의 검토	138
--------------------	-----

1) 직접관련법률	138
2) 간접관련법률	138
3) 최근 공간통계정보 관련 입법 추진 상황	139
2. 국토 해양부 추진 3법과의 위상 정립	141
1) 측량통합법과의 관계	141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과의 관계	143
3)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과의 관계	175
3. 통계법과의 위상 정립	179
1) 2007년 통계법 전부 개정의 의의	179
2) 통계법과 공간통계정보법(안)의 관계	180
3) 통계법 관련 규범의 미래 지향적 목표 제시	201
4. 소결	202
제4절 입법 방식의 선택	203
1. 입법 절차의 개요와 특징	203
1) 입법 절차의 개요	203
2) 우리나라 입법 절차의 특징 : 이원적인 법률안 제안	205
2. 의원발의 정부제출의 선택	208
1) 절차의 비교	208
2) 의원 발의의 장단점	210
3) 정부 제출 입법의 장단점	211
3. 소결	213
1) 절차적 간편성과 가결을 비교	213
2)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	214
제 5 장 결론	216
1. 연구의 목표와 진행 개요	216
2.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성격	216
3.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쟁점	217
4. 입법 환경의 성숙	217
5. 입법 방식의 전략적 선택	218
참 고 문 헌	219

표 목 차

〈표 1〉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작성 현황	8
〈표 2〉 연도별 사회통계조사 불응률	9
〈표 3〉 통계주무부서의 소속기관별 분류	13
〈표 4〉 통계의 분류	14
〈표 5〉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비교	16
〈표 6〉 우리나라 통계 유관기관	17
〈표 7〉 공간통계정보의 수요	26
〈표 8〉 공간통계정보의 수요	26
〈표 9〉 공간통계정보의 수요	27
〈표 10〉 공간통계정보 관리현황	28
〈표 11〉 대구역과 기초단위구 구분	30
〈표 12〉 번호 할당체계	31
〈표 13〉 집계구 번호 할당 체계	33
〈표 14〉 도시권 확정기준	41
〈표 15〉 센서스지도DB 구축을 위한 참조데이터	48
〈표 16〉 건축행정 업무	55
〈표 17〉 전자정부사업과의 관련성 분석	58
〈표 18〉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63
〈표 19〉 2006년 통합DB 구축 현황	65
〈표 20〉 입력방법에 따른 웹 시스템 구분	78
〈표 21〉 1차 국가GIS 구축 사업 추진내용	84
〈표 22〉 기본지리정보구축 기본지리정보 분야별 항목	88
〈표 23〉 부동산 정보관리 센터 구축에 따른 성과	96
〈표 24〉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목표	97
〈표 25〉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내용	98
〈표 26〉 국내 공간통계정보 관련법과의 관계	129
〈표 27〉 현행 측량제도	141
〈표 28〉 기존 3개 법률과 통합법의 목적	142
〈표 29〉 제17대 국회 처리의안 통계	214

그림 목 차

<그림 1> 통계청 조직도	18
<그림 2> 기초단위구 사례지역	31
<그림 3> 전수집계구 확정절차	33
<그림 4> 전수집계구 사례	34
<그림 5> 표본집계구 사례	36
<그림 6> 도시화지역 획정 시스템	37
<그림 7> 도시화지역 획정 절차	38
<그림 8> 도시화지역 사례	39
<그림 9> 도시권의 정의	40
<그림 10> 도시권 획정 과정	42
<그림 11> 상대도시권	43
<그림 12> 절대도시권	44
<그림 13> 수도권 상대도시권과 절대도시권 비교	45
<그림 14> 사업체 정보 조사 절차	46
<그림 15> 인구조사 조사구 설정과정	47
<그림 16>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의 비교	47
<그림 17> 공간통계업무의 개념 모형	50
<그림 18> 건축·주택행정업무 관리조직	53
<그림 19> 건축·주택행정업무 처리도	54
<그림 20> DB 통합화 방안 체계도	64
<그림 21>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념도	67
<그림 22>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68
<그림 23> 국가통계포털서비스 시스템의 통계표 조회화면	68
<그림 24> 통계 네비게이터 서비스 메인 화면	70
<그림 25> 대전광역시 센서스지도 모습	72
<그림 26> 입력된 포인트가 표출된 모습	73
<그림 27> 기초단위구 및 집계구 설정 모습	74
<그림 28> 인구 및 가구 부문 서비스 내용	75
<그림 29> 주택부문 서비스 내용	76
<그림 30> 사업체 부문 서비스 내용	76
<그림 31> 비율과 지수 서비스 내용	77
<그림 32> 이용자 인증 체계	79

<그림 33> 보안 시스템 구성도	80
<그림 34> 주소DB 구축 및 활용 체계	81
<그림 35> 제1차 국가 GIS 구축 사업 추진체계	85
<그림 36> 제2차 국가 GIS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	86
<그림 37> 제3차 국가 GIS 구축 사업의 협력적 사업추진 구상도	87
<그림 38> GOS의 검색화면	100
<그림 39> 유럽 Geo-Portal의 maps	102
<그림 40> 국가공간정보 관련법 체계도	140
<그림 41> 입법 절차	203
<그림 42> 입법의 세부절차	206
<그림 43>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절차 비교표	208
<그림 44> 의원 발의, 정부 발의 법안 처리 절차	209
<그림 44> 정부입법 처리 절차	212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계는 넓고 깊게 침투되어 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통계를 이용하고 있고 통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통계청, 2008, 11쪽). 특히, 국가통계는 현재의 모든 국가현황과 발전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객관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이재원, 2004, 1쪽). 또한 국가통계는 국가의 정책결정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써 정책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barome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통계는 단순히 집단의 사실 확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 또는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집단에 대한 일정한 법칙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는 개인, 기업, 연구기관, 국가를 막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통계를 생산자와 이용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국가통계의 최대 생산자인 동시에 최대 이용자이다¹⁾. 국가는 치안, 국방, 조세 등 국가 존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취업,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도 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 될수록 통계의 수요는 늘어나고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통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제공의 신속성과 시의성이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현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에 알맞은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국가통계를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의 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통계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 2008년 10월 1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승인받은 통계는 총 956종으로 지정통계 93종, 일반통계 86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계분야에 적극 도입하면서 통계의 생산 및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순하고 1차원적이며 제공자 중심적인 통계정보가 공간이라는 개념과 융합되면서 보다 구조화되어 그 활용가치 및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Michael F. Goodchild).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통계정보와 공간이 빠르게 결합(이하 공간 통계정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인해 이론적·법적 개념이 불명확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유용한 서비스를 적용하고 확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범국가적인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을 달성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보급·확산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통계정보는 공간이라는 개념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통계정보가 체계화된 구조적 틀을 통해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향후 유사 또는 중복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자원낭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하여 미래 지식정보화사회에 기반이 되는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와 함께 각종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공간통계정보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07년에 ‘공간통계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공간통계정보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간통계정보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 및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통계정보법(안)의 근거, 주요내용, 체계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집행 타당성의 검증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고시, 지침, 기준 등 세부

시행규범의 기본적인 시안이나 방향이 정해져야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조기 시행은 물론, 신속한 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

현실에서의 입법은 이론적 당위성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안이 아무리 훌륭한 이론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입법은 요원하다. 따라서 통계청과 주위 환경을 감안하여 법안의 현실적인 입법화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행정체계의 정립을 위한 근거법률의 입법방안을 밝히는 것이다. 입법방안이 도출되면 실제 입법화를 위한 입법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입법근거로서 헌법이론 및 법리적 개념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민·관·학의 협력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 입법이 완성된 단계에서 정부와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법 설명자료를 각 조문별로 제시하여 실제 공간통계정보가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현행 법령체계 및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간통계정보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법령체계와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입법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공간통계정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간통계정보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법적 성질을 분석·정립한다. 공간통계정보라는 개념이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부상한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률안 마련과 입법추진에 앞서 이에 대

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하여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논리구조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입법추진의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 생산, 효율적 관리·운용, 원활한 보급·확산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공간통계법(안)을 마련하고 법률안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규의 규범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여 각 입법안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호보완적인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간통계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유사 법리²⁾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셋째, 동 연구에서는 공간통계정보와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고 법률안 및 법률안 설명자료 등 입법에 필수적인 자료의 작성은 물론, 입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법을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지침의 제공도 연구 범위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법률안 근거자료와 참고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조문별 해설서의 형태로 도출한다. 입법안은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전 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비법학 전문가를 위해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과 법안의 취지 및 연혁을 동시에 연구하여 결과를 수록하고, 법안의 운영에 있어 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설과 인접분야의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여 집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조문의 도출과정과 실무적 운용방안, 입법 참고자료에 대한 해설도 함께 수록할 것이다.

넷째, 각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연구협력회의에 초청하여 상호 의견조율 기회를 마련하고,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학계 등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관해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학자 및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률안의 국회 상정시 국회의원 및 입법 실무진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 추진절차를 지원한다.

2) 국내 공간통계와 관련된 법제도로는 통계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측량법/지적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저작권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이 있으며, 국외 사례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통계법과 통계보고조정법, 통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5.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의 보고서는 제1장에서 기존 통계정보와 구분되는 공간통계정보의 개념을 정의한다. 공간통계정보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토정보, 지리정보, 공간정보의 개념과 비교·분석하여 논의의 당위성을 수립한다. 제2장에서는 공간통계정보가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제도적 취약점을 분석한다. 공간통계정보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수요가 요구되어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해야 할 공공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본 장에서는 현재의 활용현황과 관련 법제의 현황을 연구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적 논의를 진행한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법령의 해석론적 접근 및 개정, 신규 법제도의 제정 등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 할 것이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입증할 것이다. 이로써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법제도가 국내 다른 유관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론적 근거와 위상을 연구하고, 헌법적 당위성과 법의 성격, 목적, 수립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도출된 법률안의 실제 입법을 위해 입법 추진전략을 연구할 것이다. 입법의 당위성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바탕으로 유사법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률들을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입법예고³⁾, 발의준비 중인 법률안까지도 함께 비교·분석하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면서 통계청의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입법 추진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을 연구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안 작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그 동안 동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연구의

3) 대표적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가칭)’을 들 수 있다. 기존의 ‘NGIS법’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가칭)’으로 확대·개정할 계획인바, 이를 분석하고 공간통계정보관리법(안)과의 관계 설정, 내에서 이에 대응되는 대안 및 논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산출물인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성격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연구진들이 동 법의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벌여왔던 노력들을 간략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입법 방식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다.

6.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법률안, 해설서, 보고서 등의 결과물이 산출되며, 여기에 추가로 학술 세미나 참가,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입법 추진전략을 지원할 것이다. 우선, 공간통계정보의 이론적 연구를 위해 교재, 논문, 연구보고서 등 학술문헌과 정부의 정책자료, 관련 웹사이트 등을 조사·분석한다. 특히, 법률안의 기초연구를 위해 통계청이 수행했던 2007년도 연구용역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 및 검증하고, 국토연구원에서 1996년 이후에 발행한 10여권 이상의 공간정보 관련 연구 보고서를 비롯하여 기타 유관기관의 연구결과를 함께 분석한다⁴⁾.

동 법률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며, 제정과 동시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실제 통계행정 분야의 최전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현장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와 조사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유관 행정기관 및 지자체, 학계, 민간 사업자 등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검증과 의견수렴을 위해 집단적 학술모임과 각종 토론회 및 협의회를 통해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의 품질을 제고할 것이다.

4) 최근의 연구 자료로는 2007년도 국가GIS 지원연구, 기본지리정보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중첩활용성 제고 방안, 국토해양부 2008.3; 국가지리정보유통 고도화 방안연구, 건설교통부, 2007.4; 지리정보 가격체계 개선방안연구, 건설교통부 2007.6; 제2회 국가 GIS 관계부처 워크숍, 주최 : 건설교통부 주관 : 국토연구원 등이 있다.

제 2 장 지식정보사회와 공간통계정보

제1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통계행정

1. 사회변화와 통계수요의 증가⁵⁾

통계는 모든 사회·자연현상을 숫자로서 계량화한 정보로서 현대사회의 기초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제도적 틀의 설정과 유지, 사회 구성원의 합의 도출과 이에 근거한 일관된 국가전략의 추구를 위해서 불가결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⁶⁾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으로써의 통계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소들이 이러한 수요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천 개 이상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각종 통계는 먼저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민 개개인의 욕구의 다양화,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른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계의 질과 양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의 돌입에 따라 다양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중앙(대도시) 또는 전국단위의 통계가 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의 통계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정치단위에 걸맞은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민 전반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복지분야에 대한 통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보다 정확한 통계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5) 통계청(2008), '통계행정편람'

6) 박준경 외 5인(1997), '국가통계발전계획'

넷째, 융합분야에 관한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 및 지식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인 산업 및 경제통계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융합분야에 관한 통계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다.

〈표 1〉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작성 현황

(단위 : 개, 중)

구 분	작성 기관별	작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 방법별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390	1,036	95	941	383	589	64
정보기관	308	852	79	773	260	543	49
중앙행정기관	45	469	63	406	166	281	22
통계청	1	56	40	16	44	1	11
이외기관	44	413	23	390	122	280	11
지방자치단체	263	383	16	367	94	262	27
지정기관	82	184	16	168	123	46	15
금융기관	10	35	9	26	22	10	3
공사·공단	24	48	2	46	21	23	4
연구기관	14	28	2	26	24	1	3
협회·조합	26	56	3	53	46	7	3
기타기관	8	17	0	17	10	5	2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go.kr>)

더불어 국가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국제화·개방화의 가속에 따라 국제통계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내통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급증은 국가간의 통계정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UN, OECD, ILO, IT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의 생산 환경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통계의 생산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우선, 부정적인 효과를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계에 대한 거부감의 증대이다. 통계의 생성을 위해 모아진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정부 내에서 정확히 어떠한 경로를 통해 생산, 유통, 폐기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국민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가족의 핵가족화와 개인화이다. 기존에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여 방문과 조사가 용이하였으나 요즘은 핵가족화로 인해 세대 당 거주 인원은 줄고 가구 수는 증가하여 통계조사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통계조사 항목의 난해화이다. 사회가 과거보다 첨단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용어들이 새로이 생성되어 통계조사 항목에 추가되면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에 어려워 통계생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권위의 저하와 상명하달식 행정관행의 퇴조이다. 종전에는 국가에서 지시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따랐으나, 지금은 자신에게 이득이 없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이러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통계의 생성에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사회통계조사 불응률(가구기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0%	3.9%	3.6%	4.2%	5.0%	5.5%

출처 : 살아있는 통계 변화하는 통계청

위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와는 상반되게 인력의 고학력화, 정보기기의 발달 등은 조사의 능률을 향상시켜 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산업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대용량의 컴퓨터, 고성능의 개인컴퓨터(PC)의 보편화, 다양한 통계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정보매체의 발달로 통계정보의 대량 및 신속한 전달, 그리고 통계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미국, 일본 등 몇몇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특정 부문에 대한 통계의 결여, 정확성·시의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수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개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과의 광범위한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통계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통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해외 통계의 적극적 소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가통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하에서는 “지식 또는 정보자원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상승하여 지식정보자원의 생산, 유통, 활용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면서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강홍렬 외, 2005, 42쪽)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통계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2007).

2. 지식정보화와 새로운 통계행정 수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행정은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통계제도와 통계의 내용 및 종류를 적절히 조절하여 대응하여 왔다. 통계행정이 새롭게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크게 보면 지식정보화, 지방화, 국제화라고 할 수 있다 (유홍림 외, 2006, 19쪽). 지식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통계행정 수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즉 정보의 수집과 제공 그리고 이용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몇몇의 경우에 정보의 수집과 함께 동시에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한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의견조사는 의견조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러한 실시간성을 중시하는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은 기존의 통계행정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통계의 수집과 유통의 수단으로써 인터넷 등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통계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통계의 유통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통계의 수집에 인터넷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정보화의 발전과 함께 맞춤형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다. 맞춤형 정보와 더불어 상호의사소통 및 사용자가 정보생산자가 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Wikidpedia와 같은 웹 2.0이라 불리는 서비스들은 이러한 특징을 매우 잘 보여준다. (O'Reilly, 2005). 즉 통계행정이 이전까지와 같이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을 준비하고 동시에 정보사용자와의 상호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가공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평면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보다 입체적이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행정구역 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정보수요가 증가하였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보의 제공은 기존의 통계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재원, 2004, 10쪽)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다 활발한 이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공간의 규모와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 지식정보화에 따른 통계정책의 변화방향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통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기존의 통계행정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첫째, 정보제공의 실시간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부 통계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는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통계와 업무통계로 나뉜다. 업무통계는 국가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통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자료 제공의 실시간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간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통계행정 허브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이용하여 조사통계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07년 4월 통계법의 개정을 통해 통계청은 국가통계담당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는데 개정된 통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와 . 통계작성 승인 취소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특히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경이었다고 평가된다 (법제처, 2007). 이러한 통계청의 역할강화와 더불어 이의 실질적인 집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의 성공적인 확립을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둘째, Web 2.0의 도래와 더불어 통계행정을 상호작용 중심으로 한층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 사용자의 수요를 수렴하여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Web 2.0의 특징은 홈페이지 등에 실린 기존 정보의 단순한 사용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그저 정보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은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 기존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일종의 공공재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웹의 진화를 통계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 세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통계생산이 요청되며, 이와 동시에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생산되고 있는 인터넷 관련 통계들이 통합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통계제도의 변천 및 현황

1. 통계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통계행정의 주무부서는 <표 3>와 같이 시기별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조직 개편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정책적 요구에 의한 변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1955년 공보처에서 내무부로 통계를 관장하는 소속기관이 변경되면서 통계와 관련된 기관의 규모와 위상은 축소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변경은 통계의 중요성이 낮거나 등한시한 측면보다는 기존 조직의 변경에 따른 후속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서의 소속변경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통계의 중요성 인식에

서 비롯되었다 (유홍립 외, 2008, 5-10쪽).

〈표 3〉 통계주무부서의 소속기관별 분류

기간	소속
1948년11월~1955년2월	공보처 통계국
1955년2월~1961년7월	내무부 통계국
1961년7월~1991년1월	경제기획원 통계국 (63년 조사통계국으로 변경)
1990년12월~현재	통계청으로 격상,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정부의 통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60년대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1962년 통계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통계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국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통계행정은 양적·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1970년대는 통계의 질적·양적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통계법 상의 통계가 1970년 223종(지정통계 24종)에서 1975년에는 307종(지정통계 28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81년에는 지정통계 33종을 포함하여 승인통계가 427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1962년에 제정된 통계법은 1975년에 한 차례 개정되어 통계작성의 승인요건 강화, 통계신고 및 제출의 강제성 등을 포함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제통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다양한 국제협력에 관한 통계들이 생산되었다. 1990년대는 국가통계행정체계가 크게 정비된 시기로 볼 수 있다. 1990년 12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경제기획원 외청으로 승격되었고 통계인력 양성을 위와 같이 국가통계주무부서는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그 역할이 확대·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2. 통계제도의 현황

1) 통계의 분류

〈표 4〉 통계의 분류는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를 법률적 근거, 조사 및 작성방법 등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분류한 것이다. 통계는 법률적 분류에 따라 크게 승인통계와 기타통계로 나뉜다. 승인통계는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인 지정통계와 승인통계 중 지정통계를 제외한 일반통계로 다시 나뉜다.

조사방법에 따라서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또는 업무통계)로 나눌 수 있다. 조사통계는 실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에서 작성된 통계를 이른다. 작성방법에 따라서는 1차 통계와 2차 통계로 나눌 수 있다. 1차 통계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이며 2차 통계는 가공통계로 1차 통계를 가공한 것이다. 생산주체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국가통계와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민간통계로 나눌 수 있다.

〈표 4〉 통계의 분류

법률적 분류	승인통계	지정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기타통계	일반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 상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조사방법에 의한 분류	조사통계	조사대상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	
	보고통계(업무통계)	국가기관의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	
작성방법에 의한 분류	1차 통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	
	2차 통계(가공통계)	1차 통계를 통해 얻어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연산을 가해 얻어진 통계	
생산주체에 의한 분류	국가통계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민간통계	민간기관이 조사·생산하는 통계	

출처: 통계청(2008) 15~16쪽 및 이재원(2004) 15쪽

2) 통계의 특성

통계는 정보재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정보재는 높은 고정비용이 들지만 한계비용은 매우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Krugman et al., 2004, 520쪽). 통계가 정보재의 특성을 지닌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의 경우 통계작성을 위한 초기비용이 매우 높다. 작성이 덜 된 통계는 완성된 통계 보다 그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둘째, 일단 통계가 완성되면 거듭되어 사용되더라도 통계의 질은 전혀 저하되지 않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계사용의 한계비용은 거의 영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통계는 축적될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된다 (이재원, 2004, 18쪽). 넷째, 정보를 사용하기 전까지 정보의 가치를 알 수 없으며 일단 정보의 사용 후에는 이의 복제나 유출이 손쉽게 일어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통계는 국가의 소프트 기반시설로 인식되어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3) 통계제도의 비교

통계제도는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통계조직과 통계작성 능력에 따라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한 국가의 통계제도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나라의 통계제도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한 나라의 모든 통계활동이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 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공급토록 되어 있는 제도이며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형 통계제도의 장점은 하나의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므로 통계작성의 중복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며, 숙련된 인적자원과 기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통계전문 인력의 집중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통계이용자가 여러 분야의 통계자료를 단일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다. 더불어 각종 조사에 단일기관이 담당하여 편리성이 높고, 집중화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료의 생산 및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중립된 통계기관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긍정적이며, 통계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용이하다.

반면, 통계업무가 정책부서와 멀어지면서 통계작성자가 통계이용자로부터 유리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통계를 필요로 하는 각 기관의 통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각 부문별 전문지식의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중앙통계기관이 거대해지면 관료주의의 심화로 이용자의 변화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중앙통계기관이 통계법의 비밀보호 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여 다른 부서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통계제도로써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집중형 통계제도의 단점과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이들 나라보다는 집중적 성격이 강하다.

<표 5>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비교

	집중형	분산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균형적 개발 및 유기적 체계 확보 -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 통계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개발에 활용 가능 - 통계수요에 신속히 대응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분야의 전문지식 활용 곤란 -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상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초래 - 체계적인 통계개발의 제약 - 통계전문요원의 집중적인 활용이 곤란 - 통계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 초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의 단일화된 통계전문기관에서 작성 - 부처간 통계연결기구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활용 - 통계조정기관의 설치 필요

출처 :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

4) 통계조직 및 통계법

1962년에 제정된 통계법은 정부를 위시한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독자적인 통계작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통계기관으로는 국가통계행정을 관장하는 통계청 이 외에도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각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각 시도 또한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책기획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을 시·군·구에는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계단위 조직을 두고 주민등록연구, 통계연보 등 자체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현지 조사업무 또는 자료수집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6〉 우리나라 통계 유관기관

구 분	기관
정부 통계기관	통계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 지정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 80여개 기관

2008년 10월 현재 통계청 본청은 1관 5국 4담당관 23과 7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8지방청, 4사무소, 65출장소가 있다.

<그림 1> 통계청 조직도 (2008년 현재)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제3절 공간통계정보의 개념과 수요

1. 공간통계정보의 개념

1) 개념정립의 필요성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입법 추진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공간통계정보’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법적 개념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법을 비롯하여 기존 법령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통계’와 유사 개념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는 지식경제기반시대에서 통계 행정의 변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의 관련 법령들은⁷⁾ 공간통계정보를 단편적인 위치 속성에 관한 정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T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다변화된 정보원을 수용하여 실시간 쌍방향성을 지닌 Web2.0시대에 적합한 통계 관리를 행하기에는 부족한 개념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건설교통부 법률은 국토, 도시, 지역에 대한 규제적 경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전자지도 관련 설명은 활용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통계정보와 공간경계가 연결될 포괄적 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지리정보를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여(동법 제2조), 지도에 딸린 속성 정보로만 인식되어 통계 텍스트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통계법’은 공간성을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며(통계법 제3조, 제22조), 표준 분류대상에서도 공간통계에 대한 분류는 포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경계에 대한 규정(동법 제7조), 지형에 대한 정의(시행령 제13조)만을 두고 있어 광의의 지도로 정의를 확대하더라도 공간 통계조사의 항목을 포함하기는 어렵고,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조사통계(동법 제25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관련 항목에 공간통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며 반대로 공간통계 개념이 정보통신 관련 통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법’에 근거하여 토지가격의 안정 및 토지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적정보센터가 설치되었으나,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 관련 자료’는 지적측량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중시하고 있어 공간적 통계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와 같이 기존 법률에서는 공간통계정보 생산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본 법안에서 제시하는 공간통계정보는 단순한 지리정보 및 측량된 공간정보의 수준을 넘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통계정보의 창설·관리를 목표로 새로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7) 공간통계정보 관련 법령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건축법/도로법’, ‘전자정부구현법’, ‘측량법/지적법’, ‘수로업무법’ 등이 있다.

2) 공간통계정보의 정의

공간통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통계와 공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통계의 개념은 통계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⁸⁾.

통계의 개념이 위와 같이 명확히 정의된 반면에, 공간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 않다. 공간은 물리학, 수학, 철학 측면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도 상이하다. 그러나 수학과 철학에서 정의되는 공간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간과 그 개념에서 괴리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간만을 다루기로 한다. 물리학에서의 공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⁹⁾.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의 활용에 있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더불어 공간통계정보는 통계 및 통계정보와 관련된 기존 20개 이상의 개별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17개 이상의 정부기관에서 각각 생산·관리·활용하던 정보들을 상호 연동·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정보에 비교해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지식정보라 할 수 있다.

8) 「통계법」 제3조

9) <http://ko.wikipedia.org/>

공간통계정보의 범주를 단순히 센서스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단위의 통계 고간으로 정의하여 통계정보와 공간정보의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확장한 개념인 것이다. 즉, ‘공간통계(정보)’는 텍스트 기반의 통계에 위치의 개념을 추가하여 기존의 통계에서 불가능했던 공간(영역) 또는 위치 상호관계 해석을 가능케 하는 통계 또는 통계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인접 개념과의 비교·분석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지리·공간정보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서, 지리·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 단위지역별로 유의미한 통계정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0여 년째 지속되고 있는 GIS사업이나 국토해양부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기본법과의 관계 조정을 위해, 공간통계정보는 유사 개념인 공간정보 및 통계정보, 지리정보와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1) 국토정보

국토정보는 국토, 즉 영토, 영해, 영공에 존재하는 자연적·인문적 모든 요소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집합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국토를 구성하는 개별 객체 수준에서 보면 객체의 위치자료와 속성자료를 나타내는 자료로 구분된다. 위치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지리자료 혹은 공간자료라고 부른다.¹⁰⁾

(2) 지리정보

NGIS법은 지리정보를 지형, 지물, 지명,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10) 국토연구원. 국토정보 관련 법제 발전방안 -국가공공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2006), 5면.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리정보를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실 세계를 최초로 추상화한 결과라면, 이는 지리자료(Geographical Data)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러나 GIS 활용체계에 의해 처리되고 분석된 결과라면 지리자료가 아니라 지리정보라고 할 수 있다. NGIS법이 주로 GIS 활용체계 개발,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NGIS법이 규정하는 지리정보는 지리자료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 공간정보

최근 지리정보라는 용어보다 공간정보(spatial data, geographical data)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지리 정보보다 더 넓은 개념의 공간 정보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즉, 국토정보와 지리정보, 공간정보는 배타적인 구분이 아니라 개념상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국토정보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는 지리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 공간통계정보법(안) 내부의 유사 개념과의 비교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 공간통계정보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두개의 개념 정의가 존재하는데, ‘센서스 공간DB’와 ‘공간통계정보체계’가 그것이다. 이들은 공간통계정보 개념의 확정을 위해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센서스 공간DB’는 인구·주택 및 사업체 센서스 개별 자료와 이에 대응하는 위치정보를 부가한 센서스 개별 공간DB와 센서스 지도정보, 센서스 경계정보가 결합된 지식DB을 의미하며, ‘공간통계정보체계’는 공간통계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센서스공간DB, 제도 및 기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H/W, S/W 및 응용솔루션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와의 관계

상기 언급한 개념들은 매우 포괄적인 범용 개념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상호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는 이들 개념 중 하나에 포함되도록 정의 내려져 있고 때문에 양자에 모두 속하는 중첩 영역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정 정보가 공간정보에 속하는 것인지 공간통계정보에 속하는 것인지를 상충영역으로 보고 필연적 조정을 시도할 필요는 크지 않다. 양자는 접근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는 지리정보의 진화적 개념으로서 기존의 평면적 지리정보를 입체적 관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구의 표면인 지표면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정보를 정보사회의 관념에 맞게 수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통계정보는 통계라고 하는 수치정보에 정보처리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통계에 포섭될 수 있는 개념이나, 정보사회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염두에 둘 경우 보다 적극적 의미로 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공간통계정보라는 개념은 지리정보의 진화개념인 공간정보에 통계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지리학적 접근에서 통계를 공간정보의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관점이 차이이며 공간정보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즉 개념 정의를 두고 부처간 주도권을 쥐기 위한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크지 않다.

정리하면, 공간통계정보는 공간정보와 통계정보를 기본적 인프라로 생각하고 양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다. 공간정보는 국토 관리 내지는 주권영토 내에서의 모든 행정정보의 총합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이는 자칫 공허한 개념으로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통계정보는 모든 분야에 대한 구체적 속성정보를 의미하지만 필요에 따라 운용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다. 공간통계정보는 이러한 양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양 개념의 강점이 상승하는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적 분석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공간정보와 통계정보 및 공간통계정보는 결코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상호 보완을 필요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적 조화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제도와 행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공간통계정보의 의의와 수요

1) 공간통계정보의 의의

전통적 의미의 통계나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공간정보기본법상의 공간정보와 비교하여 공간통계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진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공간을 기반으로 입체적인 정보의 축적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계정보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에 공간통계정보의 의의가 있다. 둘째, 공간통계정보는 콘텐츠 중심의 공공정보의 축적과 활용에 가장 강력한 정보자원이 될 수 있다. 셋째, 공간정보와 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로서는 공간통계정보로 부가가치를 높여 제공함으로써, 통계정책의 실시간성과 국민 참여적 공공정보관리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의미를 가지며, 통계를 비롯한 공공정보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공간통계정보의 수요

(1) 공공 차원의 수요

공간통계정보는 일반 정보화사업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사업, 국가GIS사업, 행정정보화사업 등 주요 공공정보화사업 고도화 추진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기업과 개인 및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공간통계분석 및 정보가 가

치 창출에 필수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공간통계정보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통계청의 조사용 지도인 요도는 전국을 30만 여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기존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해온 행정구역 중심의 공간통계업무보다 훨씬 상세 세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즉 향후 공간통계정보체계 구현을 통하여 대축척 개념의 소지역 공간통계업무를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공간분석업무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공공부문의 공간통계 수요를 충족시켜 해당 분야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추진에 필요하다.

<표 7> 공간통계정보의 수요

대분류	구 분		공간통계화		공간통계 활용도
	중분류	소분류	계획	시행	
토지	토지 행정	토지행정 서비스	○	-	-지역특성별 토지이용계획 -토지개발가능지 분석
주택건축	주택건축물 관리	주택관리 서비스	○	-	-노후불량지구재정비 -지역별 주택수급계획 -재정비촉진지구계획
		건축물관리 서비스	○	-	
	공공시설물 관리	지상시설물 서비스	○	-	
		지하시설물 서비스	○	-	
		연안시설물 서비스	○	-	
SOC	도로	ITS	○	-	-건설자재수급계획 -하천복원계획 -도로건설계획
	공항 정보통신	공항관리 서비스	○	-	-SOC투자우선순위계획 -물류거점입지분석
수자원	물관리(치수)	하천관리 서비스	○	-	-하천유역관리계획
		댐 관리 서비스	○	-	
환경	대기	환경정보서비스	○	-	-지속가능한환경관리계획
농림	산림관리	농지관리서비스	○	-	-농촌정비계획구역지정
지하국토	지하시설물	지하시설물 관리 서비스	○	-	-지하시설물정보화계획
		지질관리서비스	○	-	-지질정보관리체계

더불어 방재, 안전, 환경, 국토 및 도시계획 등 분야간 융·복합이 필요한 분야에 공간통계 수요를 충족시켜 복합분야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추진에 기여한다.

<표 8> 공간통계정보의 수요

대분류	구 분		공간통계화		공간통계 활용도
	중분류	소분류	계획	시행	
환경	환경정보체계	환경정보고도화서비스	○	-	-국토환경다차원분석
교통	교통정보체계	지역교통정보서비스	○	-	-지역교통계획수립
방범	치안관리체계	지역안전관리서비스	○	-	-안전정보 고도화
방재	방재정보체계	지역방재서비스	○	-	-방재정보 고도화
복지	지역복지정보체계	주민복지서비스	○	-	-복지정보 고도화
문화	문화공동체정보체계	문화정보서비스	○	-	-지역문화 고도화
교육	지역교육정보체계	교육정보서비스	○	-	-교육행정 고도화
예산	지역예산정보체계	지역균형예산서비스	○	-	-지역균형발전

(2) 민간차원의 수요

민간부문(민간기업, 일반시민 등)에서는 공간통계정보의 활용으로 상권분석, 생활지리정보서비스 등 민간부문의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민 개개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일일이 조사하여 별도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제공되는 정보 역시 표와 숫자로 이루어져 일반인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후 대축적 기반의 공간통계정보를 통해 인구 및 가구와 사업체 정보를 기반으로 타기관의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생활지리정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9> 공간통계정보의 수요

구 분			공간통계화		공간통계 활용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획	시행	
건설투자	건설투자정보체계	지역건설투자정보 서비스	○	-	-맞춤형 지역건설투자계획
창업투자	창업투자정보체계	창업지원정보 서비스	○	-	-지역창업투자분석
부동산투자	부동산정보체계	부동산 정보 서비스	○	-	-수요별 부동산투자동향
상권분석	상권분석정보체계	상권분석지원 서비스	○	-	-지역상권분석
마케팅	마케팅정보체계	마케팅지원 서비스	○	-	-지역마케팅분석
금융	금융정보체계	지역금융정보지원 서비스	○	-	-지역금융투자분석
소비지출패턴	소비자정보체계	블루슈머지원 서비스	○	-	-소비패턴분석

출처 : 통계청(2007), 9-10쪽

제4절 공간통계 관련 행정업무 현황

법률상의 공간통계정보는 앞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겠지만, 현재 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통계정보는 대략 다음과 같은 범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공간정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재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입법이 완료되고 공간통계정보가 보다 다양한 분류체계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점에서는 다른 형태의 정보도 공간통계정보의 범위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공간통계정보는 기초단위구, 전수집계구, 표본집계구, 도시화지역, 도시권, 사업체정보, 인구정보, 센서스지도, 행정경계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주 초기형태의 공간통계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공간통계정보 관리현황

구분	내용	자료형태
기초단위구	기초단위구	Polygon
전수집계구	전수집계구	Polygon
표본집계구	표본집계구	Polygon
도시화지역	도시화지역	Polygon
도시권	도시권	Polygon
사업체정보	사업체 조사구	Polygon
	사업체 포인트	Point
	전개도사업체 공간정보	Image
인구정보	인구조사구	Polygon
	거처포인트	Point
	공동거처포인트	Point
	공동주택전개도	Image
센서스지도	건물	Polygon
	하천	Polygon
	철도	Line
	도로면	Polygon
	도로경계	Line
	도로중심선	Line
	등고	Line
행정경계	동리경계	Polygon
	읍면동경계	Polygon
	시군구경계	Polygon
	시도경계	Polygon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1. 기초단위구

1) 정의

통계청은 공간통계의 기본적 단위로서 기초단위구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기초단위구는 도로, 하천, 철도, 능선 등과 같은 준항구적인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도상에 구획한 최소단위 구역으로 2000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초단위구의 구획은, 읍·면·동별로 가구 수에 관계없이 간선도로, 주요 하천, 산능선 등과 같은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크게 대구역을 구획하고 대구역 내에서 다시 소구역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구획방법

가구 수에 관계없이 읍·면·동 내에서 먼저 대도로, 하천, 산맥 등과 같은 주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대구역을 구획하고, 그 다음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소구역을 구획한다. 시가지 조성으로 인하여 블록화된 지역은 가구 수에 관계없이 블록 단위로 구획하고 아파트지역은 건물 동 단위로 구획한다. 시가지 주변지역이나 농촌지역은 가급적 자연부락 단위로 구획하였는데, 명확한 지형지물이 없는 경우에는 통·리 경계를 이용하여 구획하고 있다. 공단 등 사업체 밀집지역은 공단 내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구획하고 시가지 변두리지역 또는 농촌·산간지역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가급적 자연부락이 분할되지 않도록 구획하고 있다. 명확한 지형지물 이용이 곤란한 경우, 통·리의 경계를 활용하고 도서지역은 섬 단위로 구획하되, 자연부락이 2개 이상인 경우 분할해서 기초단위구를 획정한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전체를 하나의 기초단위구로 설정하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 구획기준에 의해 분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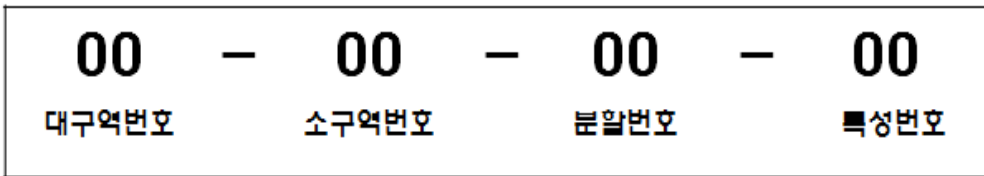
〈표 11〉 대구역과 기초단위구 구분

구분	대구역	기초단위구(소구역)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등 ·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광로, 대로, 중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1류: 70m이상, 2류: 50~70m, 3류: 40~50m 미만) - 대로(1류: 35~40m, 2류: 30~35m, 3류: 25~30m 미만) - 중로(1류: 20~25m, 2류: 15~20m, 3류: 12~15m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소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류: 10~12m, 2류: 8~10m, 3류: 3~8m 미만) - 기타지역: 도로폭 3m 이상 일반도록 등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에 의해 하천등급이 지방하천 2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권역의 약 62개 하천 - 지방하천 1급: 한강권역(청계천 등) 등 5개 하천권역의 55개 하천 - 지방하천 2급: 한강권역(양재천, 세곡천 등) 등 5개 하천권역의 3,799개 하천 · 하천등급이 지방하천 2급 이하(준용하천 등)이며 하천폭이 10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폭이 10m 미만 ·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천 줄기(상하수로 등)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능선이 길게 형성(산맥)되어 생활권이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내의 동리경계가 산능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경우 활용
철도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철 또는 사철: 준영구적인 철로만 해당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기초단위구에는 대구역번호, 소구역번호, 분할번호 및 특성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된다. 대구역번호와 소구역 번호는 각각 읍면동, 대구역 내에서 좌측 또는 우측 상단부터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부여하고 있다. 분할번호는 택지개발이나 지형지물의 번호로 해당 기초단위구의 분할이 일어날 경우 부여한다. 특성번호는 지형지물과 면적 기준으로 대표적인 특성을 분류하여 기초단위구의 토지이용특성을 나타낸다.

<표 12> 번호 할당체계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기초단위구의 사례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은 대전시 서구 도마 1동을 나타내는 기초단위구이다.

<그림 2> 기초단위구 사례지역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2. 전수집계구

1) 정의

기초단위구를 바탕으로 소지역 통계자료의 공표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통계집계공표구역을 전수집계구라 한다. 이는 기초단위구 보다는 크고, 기존의 행정 동·읍·면 보다는 작은 단위이다.

2) 구획방법

기초단위구에 아파트 및 용도지역 정보를 반영하고, 인구 과소 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기초단위구의 인구, 주택유형, 지가, 형태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각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AZP(Automatic Zoning Procedur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집계구를 구획한다. 각 요인별 가중치는 인구(0.4), 주택유형(0.3), 지가 (0.1), 형태 (0.2)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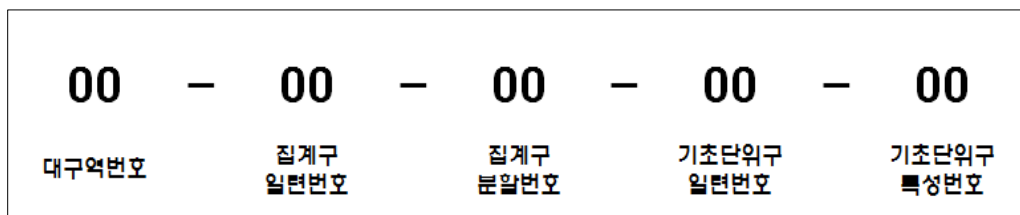
3) 유지관리

2007년에 최초로 전국 단위의 전수집계구가 설정되어 통계청에서 통계네이게이터 서비스를 실시(매년 전수집계구 갱신)하고 있다. 전수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이용한 통계지역 획정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획하고 통계청 통계지리정보과에서 전수집계구 획정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4) 번호부여체계

전수집계구의 번호는 대구역번호, 집계구 일련번호, 집계구 분할번호, 기초단위구 일련번호, 기초단위구 특성번호 등으로 이루어진다.

〈표 13〉 집계구 번호 할당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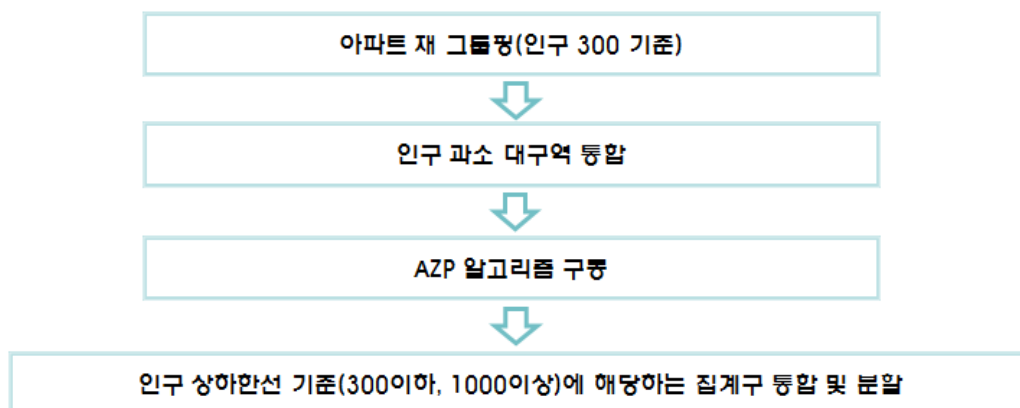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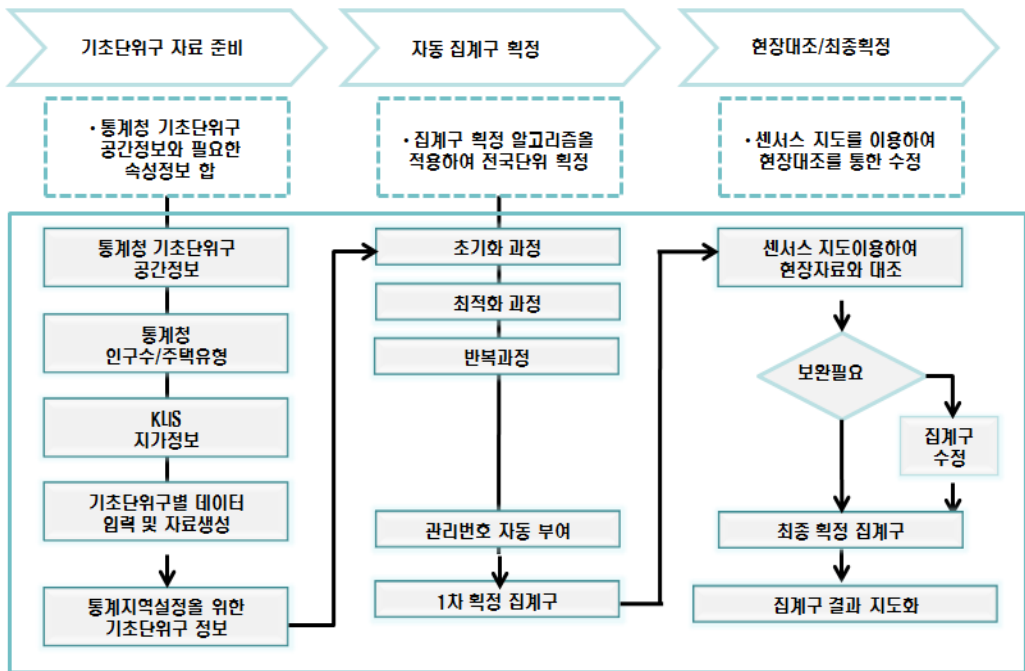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5) 확정과정

전수집계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그림 3〉 전수집계구 확정절차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전수집계구에 관한 사례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전수집계구 사례



출처 : 통계 네비게이터, 통계청, 2008

3. 표본집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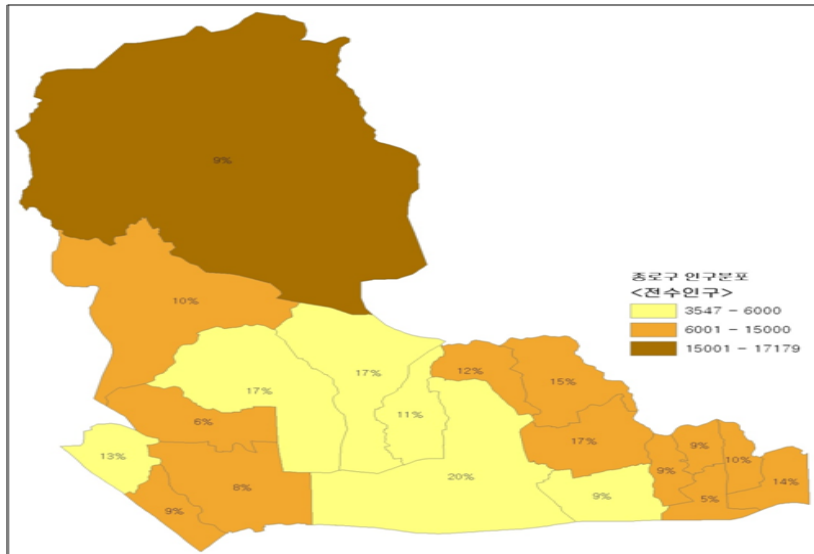
1) 정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 표본자료를 공표하기 위한 단위로 집계구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표본집계구이다. 표본집계구는 읍·면·동 및 대구역을 활용하여 설정한다. 표본집계구 인구기준은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7개 광역시, 9개 도·동부, 9개 도·읍·면부를 구분한다. 7대 광역시, 9개 도·동부, 9개 도·읍·면부 모두의 최적인구수와 최고 인구수는 각각 15,000명과 30,000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7개 광역시, 9개 도·동부의 최저인구수는 6,000명, 9개도 읍·면부의 최저인구수는 1,500명으로 설정한다. 표본집계구의 표본추출비율 임계치는 행정구역체계 모두 7%로 설정되어 있다.

2) 유지관리

표본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이용한 통계지역 확정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획하고 있으며, 통계청 통계지리정보과에서 표본집계구 확정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공표되는 시기, 즉 5년 주기로 갱신될 예정이다. 표본집계구의 사례는 종로구로 아래와 같다.

〈그림 5〉 표본집계구 사례



출처 : 통계 네비게이터, 통계청, 2008

4. 도시화지역

1) 정의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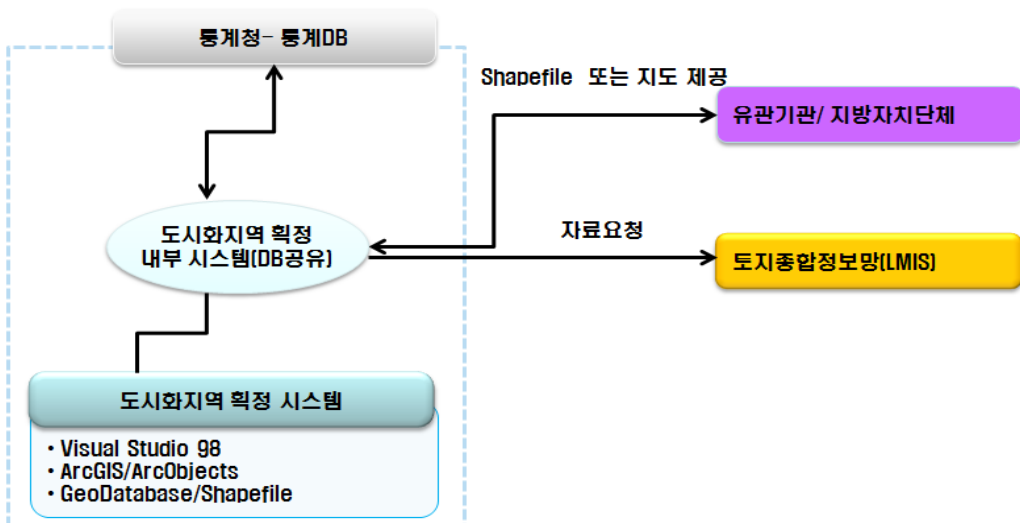
도시화지역은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상의 등질지역으로서의 도시지역을 의미한다. 1995년부터 도농복합 형태의 시 도입으로 행정구역상 시 지역에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통계청의 기초단위구를 바탕으로, ① 인구 밀도가 3,000/km² 이상인 기초단위구, ② 지목 기준 도시토지이용 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기초단위구, ①과 ② 중 최소한 어느 하나 이상 충족시키면서 공간상에서 연결한 기초단위구들과 그러한 기초단위구들에 둘러싸인 구역을 포함하는 인구 3,000명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최종 획정된 도시지역명은 기초자체인 시군구내에서 인구규모가 큰 지역부터 ○○도시화지역1, ○○도시화지역2, ○○도시화지역3, ○○도시화지역4 로 구분하여

명명하고 있다.

2) 확정시스템과 유지관리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도시화지역 설정연구(2004), 도시화지역 획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연구(2006) 등을 거쳐 2007년 도시화지역을 확정하였다. 도시화지역은 인구센서스조사결과(5년 마다 갱신)와 KLIS의 지적정보(1년 마다 갱신)를 바탕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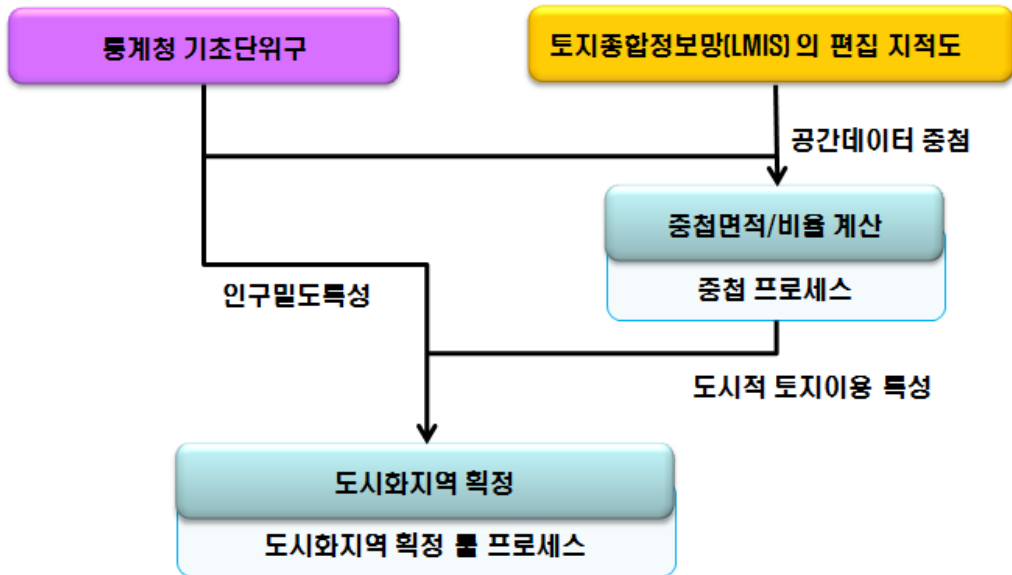
<그림 6> 도시화지역 확정 시스템



출처 : 도시화지역 획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통계청, 2008

도시화지역을 확정하기 위하여 ① 우선 확정 기준에 따라 통계청의 기초단위구별로 인구밀도를 계산하고, ② 기초단위구 레이어와 지목을 속성으로 갖춘 편집지적도(LMIS) 레이어를 중첩하여 기초단위구별 도시적 토지이용특성 면적비율을 계산한다. 이후 ①, ②를 충족하는 기초단위구에서 공간적 연결성 기준과 총인구 3,000명 이상을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기초단위구를 대상으로 도시화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그림 7> 도시화지역 확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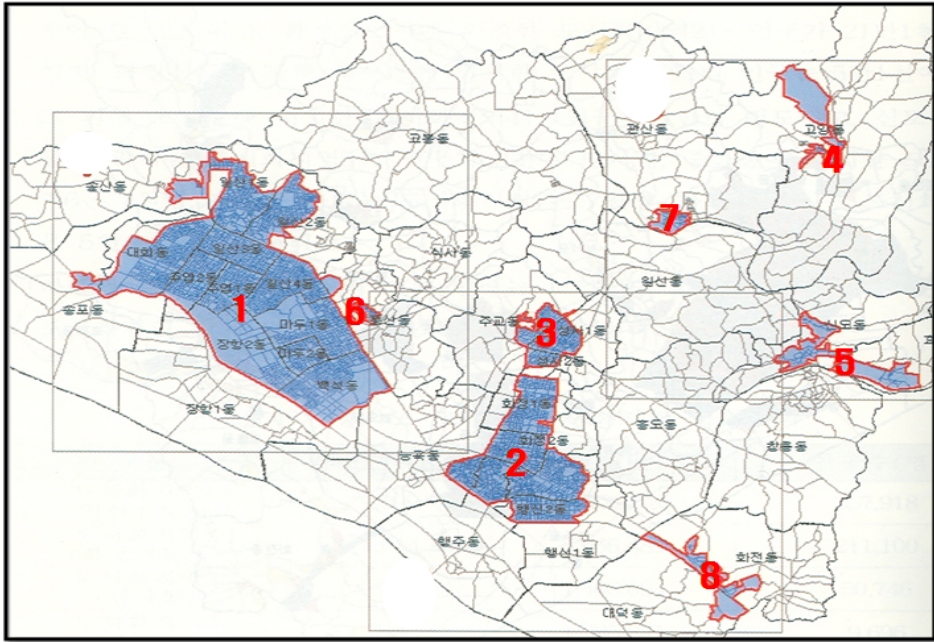


출처 : 도시화지역 확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통계청, 2008

3) 사례

도시화지역의 사례로 경기도 고양시를 들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8개의 도시화지역이 있는데 그 중 1은 일산신도시지역으로 인구가 35만8천명, 2,209의 기초단위구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8> 도시화지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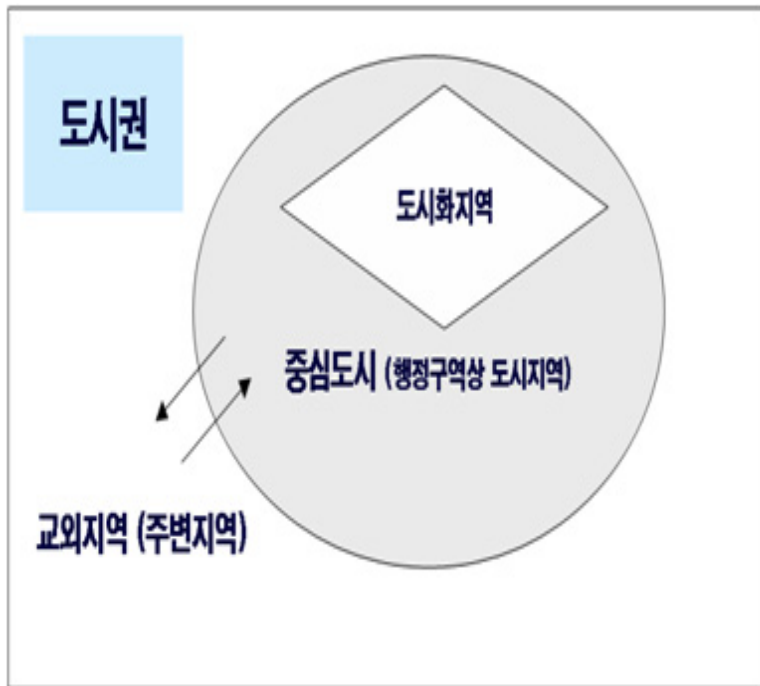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5. 도시권

1) 정의 및 유지관리

교외화의 진전으로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권역을 도시권이라 한다. 2007년도에 도시권 및 대도시권 설정기준을 정하고 시스템 구축 및 경계 획정을 하였다. 통계청에서 도시권 획정을 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SPSS, ArcObjects, ArcGIS9.2 VBA, Geodatabase/Shapefil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권 획정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근자료 등)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5년마다 갱신된다.

<그림 9> 도시권의 정의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2) 기준

절대도시권은 인접해 있는 중심도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를 만족하는 모든 교외지역을 포괄하는 도시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계층체계를 가지지 않으며 도시권 명칭은 중심도시 명칭을 따라 명명하고, 중심도시 인구규모가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권으로 명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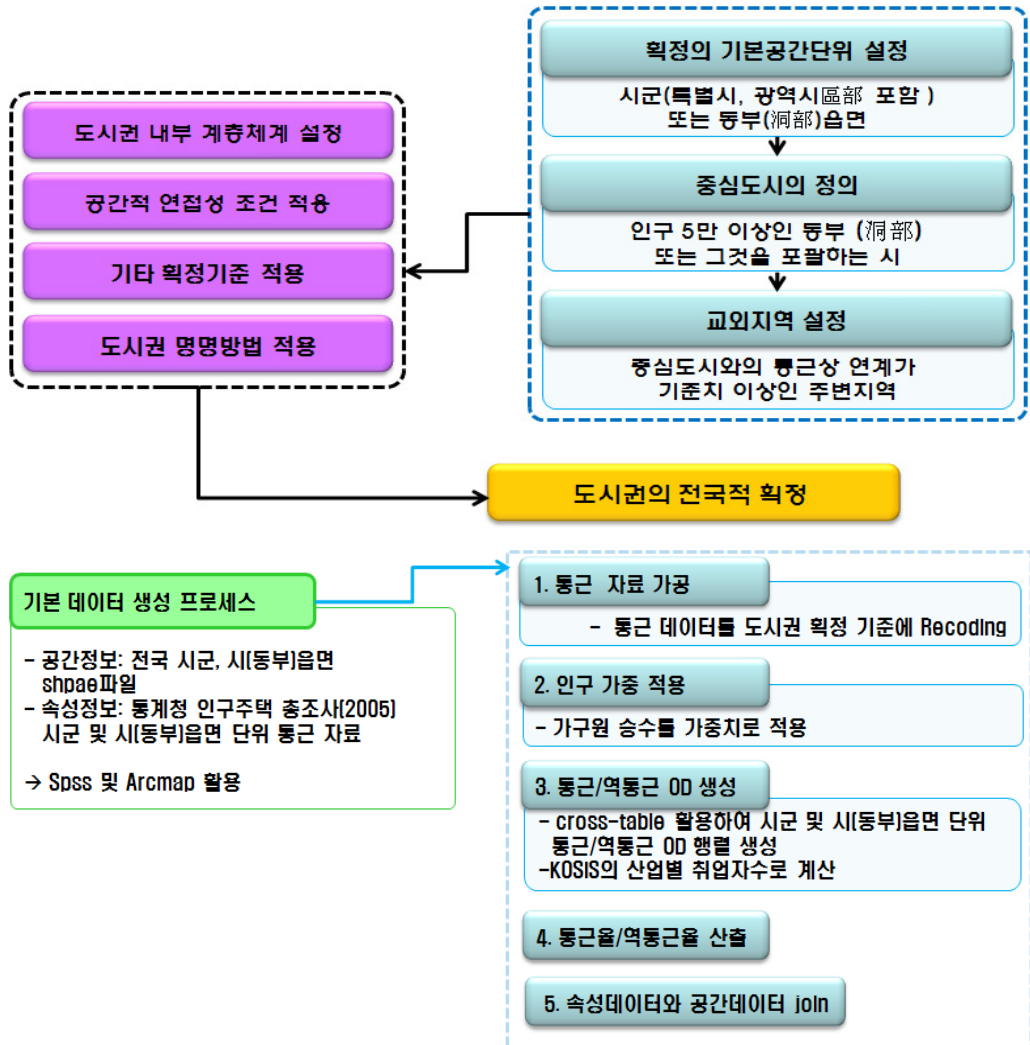
〈표 14〉 도시권 획정기준

획정의 기본 공간단위	상대도시권 획정기준		절대도시권 획정기준	
	시.군	시(동부 洞部).읍.면	시.군	시(동부 洞部).읍.면
중심도시 정의	상주인구 5만명 이상인 동부(洞部)를 포괄하는 시(특별시, 광역시의 區部 포함)	상주인구 5만명 이상인 동부(洞部)	상대도시권과 동일	
교외지역 설정	중심도시로의 통근율 5% 이상이거나 역통근율 5% 이상인 주변지역		-중심도시로의 통근율 5% 이상이거나 역통근율 5% 이상인 주변지역(시.군 또는 시(동부 洞部).읍.면)	
도시권 내부 계층체계 설정	-중심도시 A의 교외지역 B와 C중에서 C에 대해 교외지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D가 있을 경우, D는 A가 속한 도시권인 X의 교외지역으로 편입되고 C와 D는 X의 2차 도시권인 Y로 설정		없음	
공간적 연결성 조건	-포섭원리: 교외지역 설정을 위한 통근 및 역통근 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동일 도시권 내에서 그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교외지역으로 둘러싸인 주변지역은 도시권에 포함시킴(단, 2.3차 도시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배제원리: 교외지역 설정을 위한 통근 및 역통근 기준을 만족하고 비지적으로 위치해 있을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도시권에서 배제시킴(단, 도서지역 및 2.3차 도시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상대도시권과 동일(절대도시권의 경우 2.3차 도시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도시권의 구분	-대도시권 : 중심도시 동부(洞部) 인구가 100만이상 -도시권 : 중심도시 동부(洞部) 인구가 5만이상	-대도시권 : 중심도시 인구가 100만이상 -도시권 : 중심도시 인구가 5만이상	상대도시권과 동일	

출처 : 도시권 획정, 통계청, 2007

3) 확정과정

<그림 10> 도시권 확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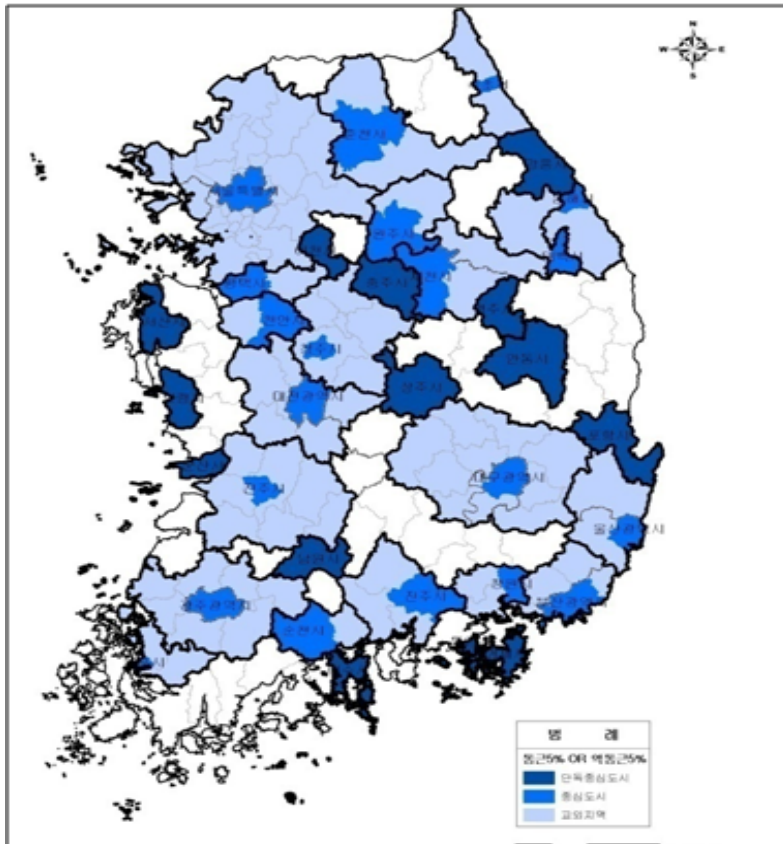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4) 사례

<그림 11> 상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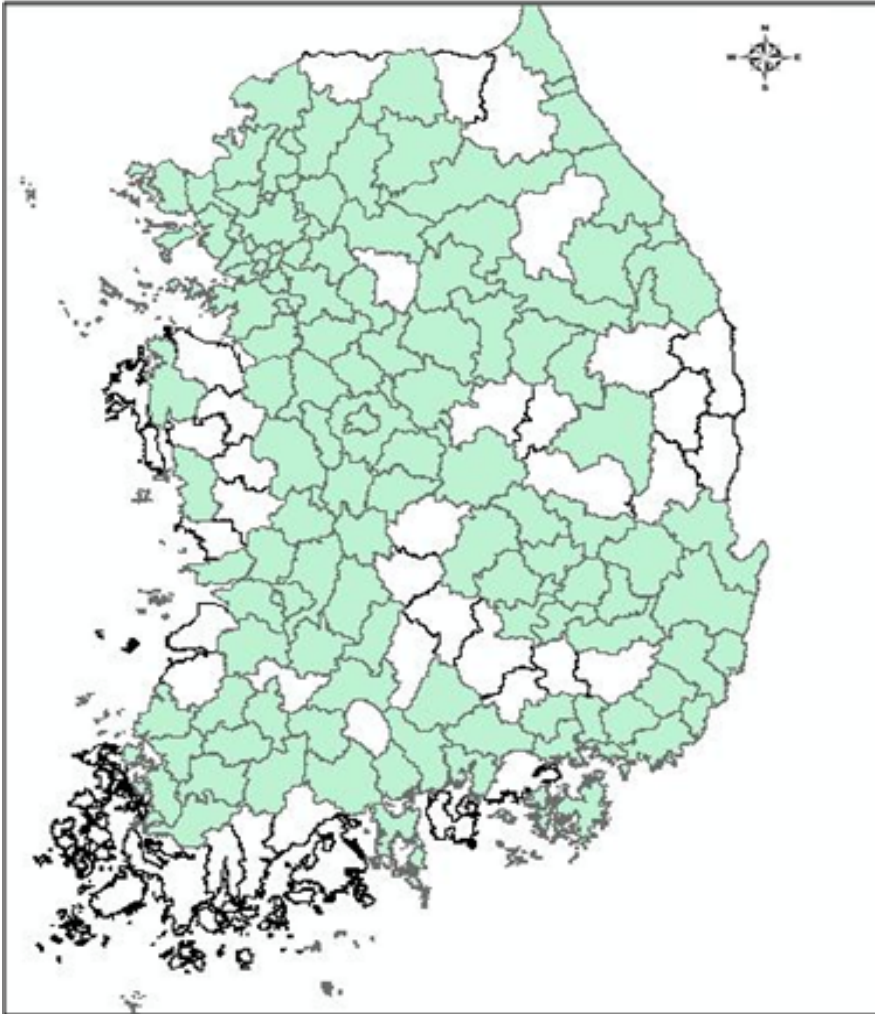
• 전국 35개 상대도시권 획정(시군 단위)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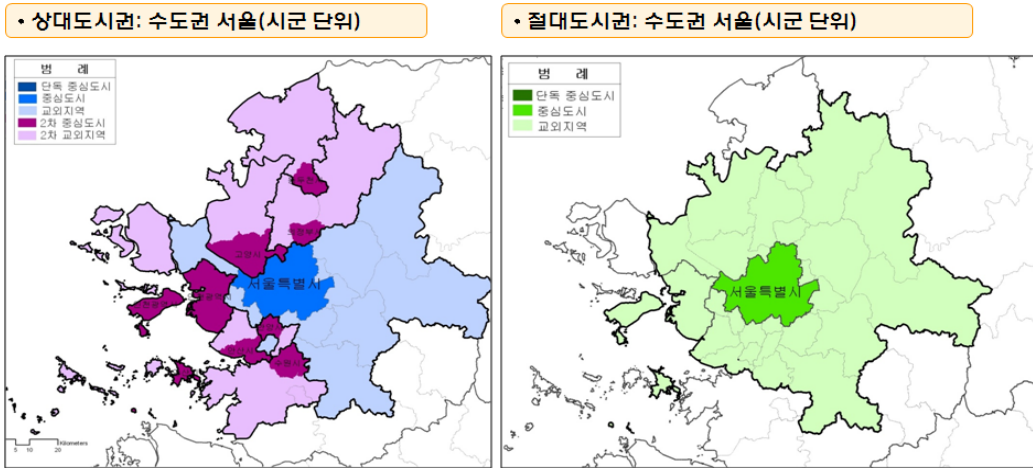
<그림 12> 대도시권

• 전국 71개 절대도시권 획정(시군 단위)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그림 13> 수도권 상대도시권과 절대도시권 비교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6. 사업체 정보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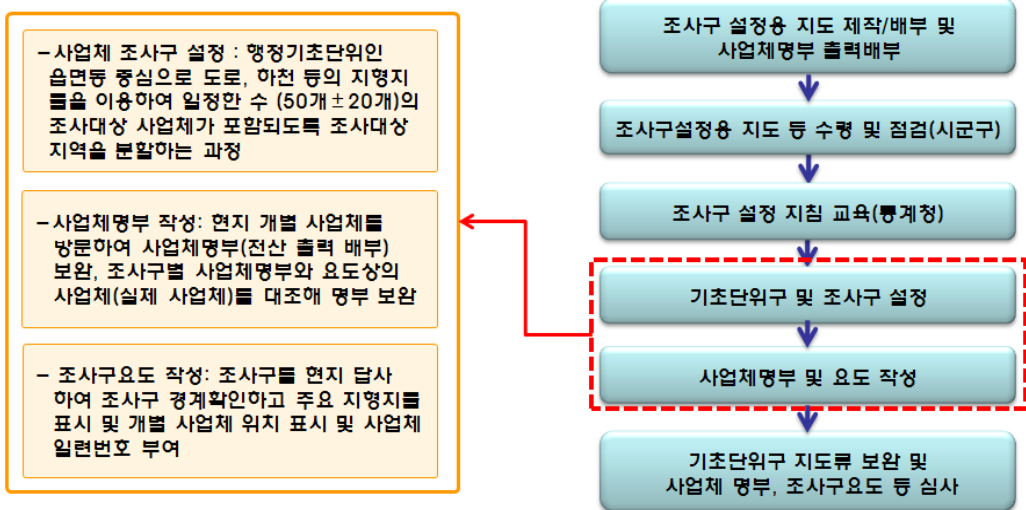
사업체 기초통계는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범위는 전국의 사업체이고 전수 면접조사로 이루어진다. 주기는 1년이다. 사업체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보고하고 시도를 거쳐 통계청에 종합되는 체계이다. 사업체 조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체 부문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제공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으며 공간통계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2) 조사절차

사업체 조사는 조사구설정용지도 제작, 배부 및 사업체 명부 출력배부로 시작한다. 공간정보가 기초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후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4> 사업체 정보 조사 절차



출처 : 조사구 설정 지침서, 강영욱, 2008

7. 인구조사

1) 정의

통계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조사원의 업무량을 분배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보통 하나의 조사구는 60가구 정도의 규모를 가진다.

2) 조사구 설정과정

인구조사는 조사구의 설정과 준비조사, 본조사 후, 내용검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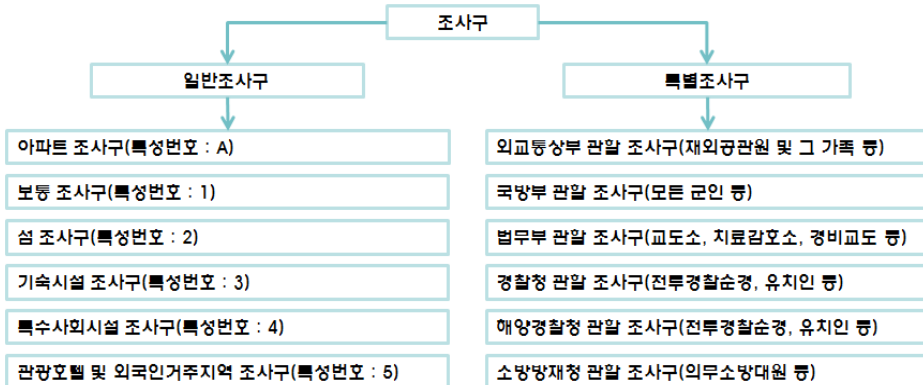
〈그림 15〉 인구조사 조사구 설정과정



출처 : 통계청 내부자료, 통계청, 2007

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대별된다.

〈그림 16〉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의 비교



출처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관련 업무 참고자료

8. 센서스지도

센서스지도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통계조사용 지도 및 통계 네비게이터 서비스의 바탕이다. 2006년도에 인구주택조사용지도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시, 기초단위구 및 지형지물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므로 1년 주기로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 변동 지역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한다.

또한 이원화된 인구/사업체 조사용 지도를 통합하기 위해 LMIS지도를 기준으로 중부원점 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요청되고 있다. 새주소지도 축척 1/1,000을 우선으로 1/5,000 기준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각 도엽별로 전국을 연결하여 구조화하여 편집작업을 수행한다. 인구/사업체 통계청 지도(기본도, 조사구요도), 도로명(새주소)지도, 수치지형도 및 LMIS지도를 이용하여 통계청 DB설계에 맞춰 센서스지도를 별도 레이어로 구축하고 있다.

센서스 지도 DB구축을 위한 참조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표 15> 센서스지도DB 구축을 위한 참조데이터

데이터	내용	좌표계/축척	작업 대상	갱신주기	자료형태	보유기관	비고
조사구 요도		와평 적역을 통해 좌표 부여	철거 및 추가 되는 건물	연 1회	종이지도	통계청	
새주소 데이터	새주소 및 도로명 정보	1/1,000 TM단일원점 (127.5)	건물과 도로및 도로중심선	실시간	파일(shp)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인 경우 무상으로 자료 제공 받음
KUS지도	지적 정보	TM 중부, 동부, 서부 원점	건물	매분기	파일(shp)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무상 확보
수치지도 (ver. 2)	기본 지리시설물/도로/하천	1/5000 GRS80타원체 기준원점(127.5)	건물, 도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 마다	파일 (ngi)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시설물과 하천은 무상 확보 도로데이터의 경우는 판매대행사인 한진지도를 통해 구입
교통주제도	편도 1차선 도로 이상	1/5000 Bessel TM 기준원점(127.5)	읍,면지역 (도로실폭, 도로중심선, 도로링크)	매년	파일(shp)	국토해양부 한국교통연구원	매년 현지 확인하여 교통DB센터에서 갱신

출처 :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강영욱, 2008

9. 행정체계

읍·면·동, 시·군·구, 시·도 행정경계를 의미하는데 행정동 경계 변동 사항이 반영된 기초단위구 설정 작업 이후, 기초단위구 경계를 행정동 코드 별로 병합하여 행정경계를 생성하고 있다. 행정경계는 1년단위로 갱신된다.

행정경계는 기초단위구 경계를 활용하여 생성되는데 전국 기초단위구 경계 작업 완료 후 행정경계 변경이 반영된 기초단위구 경계를 행정동코드 별로 병합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를 생성한다. 이후 행정통리 경계를 수정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지차체에서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용 도면에 수정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행정 통·리 경계 작업시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용 도면을 참조하여 통계청 현지 확인 보완지침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소축적지도(1/25,000) 확인 시 보완지역은 이번 확인에서는 수정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소축적 현지 확인으로 행정통리 수정한 경우 행정경계(읍면동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5절 공간통계업무의 개념모형

1. 공간통계업무 개념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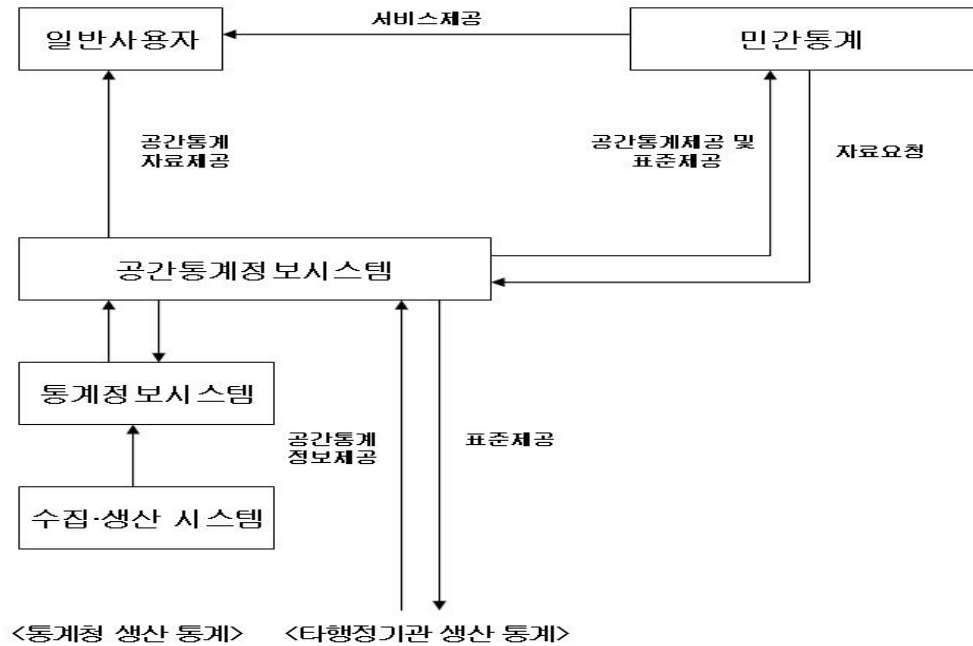
공간통계업무프로세스는 공간통계정보처리의 절차를 의미한다. 공간통계 정보가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것은 공간통계에 관한 각종 정보가 생산되고 수집 및 가공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유통되고 폐기되기 까지 일련의 과정이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공간통계업무의 개념모형은 이러한 절차에 관한 행정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모습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공간통계정보처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초단위구를 중심으로 조사구, 집계구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각종 통계정보가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관리되는 초기 모형이다. 이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으로서의 공간통계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통계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결과와 사업체 조사결과만이 공간통계일 수는 없다. 각 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통계정보가 현재보다 더욱 유용하게 운용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간통계업무는 다음과 같은 개념모형으로 진화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도 이 모형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7〉 공간통계업무의 개념모형



이 모형은 공간통계정보체계의 수립에 있어 핵심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념모형을 작성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를 생산 주체에 따라 국가통계와 민간통계로 나눌 수 있다. 국가통계는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를 이르며 민간통계는 민간기관이 조사 생산하는 통계를 이른다. 국가통계는 다시 생산주체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2008년 11월1일 현재, 정부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784종이며

이중 통계청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는 59종에 이른다. 지정기관 총 75개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68종이다.

현재 국가통계포털은 통계작성 승인기관의 승인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하나의 서버(통계청)에 통합관리하고 하나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통합되어 관리되는 DB를 공간정보로 전환하여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의 통계정보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일부분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 통계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정보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공간통계정보시스템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간통계정보시스템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계정보에 위치정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에 공간정보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때 현재 통계지리정보시스템(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의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통계지리정보시스템도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일부로 통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하위통계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들도 통계지리정보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청의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을 공간통계정보시스템과 연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간의 연계작업은 업무의 중복적 처리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제공의 실시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행정기관들과 지정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에도 공간정보가 부여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청은 공간정보 생산을 위한 기준 또는 표준 등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초단위구 또는 집계구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통계생산에 있어 공간정보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공간정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통계청의 역할을 상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보다 확실한 권한을 갖고 공간통계정보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의 원천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과 연계 내지는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계청이 공간통계정보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정기관들과의 영역다툼을 무의미하도록 만들 수 있다. 역할분담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협력하는 체

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계청이 직접 각종 정보에 공간정보를 추가하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각종 통계의 생산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사업자들의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민간사업자들이 요청할 경우 공간통계와 표준을 제공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돕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사업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각종 부가정보들을 제공하거나 이를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공간통계정보는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실비를 받고 제공될 수 있을 것이지만 공공정보의 유료이용에 관하여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건축·주택 관련 통계와 공간통계와의 연계

1) 건축·주택 행정업무 개요

현재, 건축 및 주택 관련 행정의 기능과 통계절차는 건축 및 주택 관련 각종 인·허가의 신청 접수 시,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성·변경·말소된 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합·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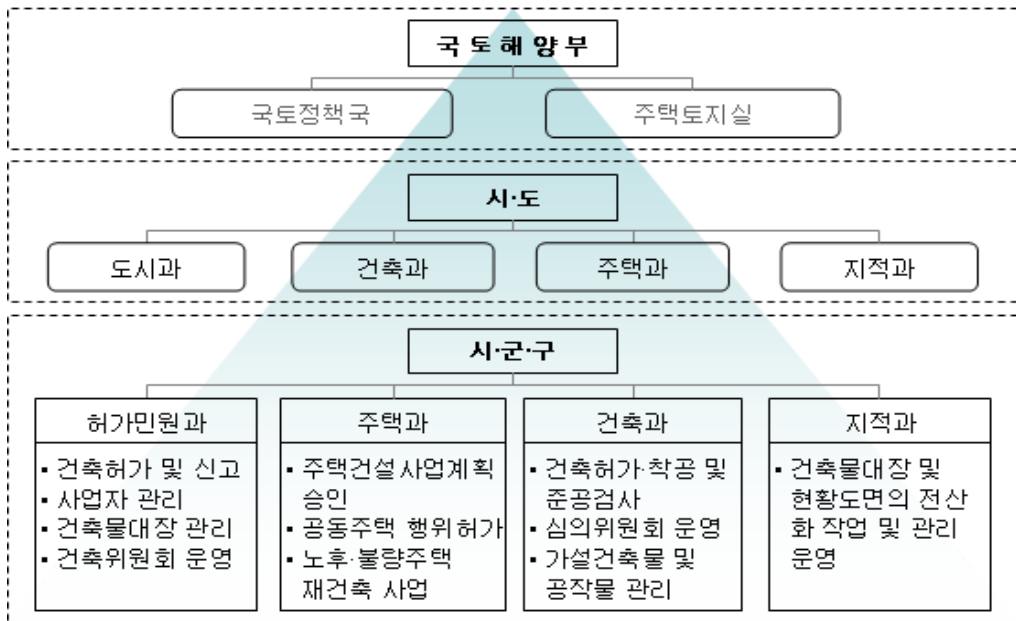
건축 및 주택 관련 사업자의 등록·관리와 함께 위반사항의 적발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수행하고 아파트, 공작물, 가건물, 영세민 전세금 및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 건축·주택 인·허가 정보, 건축물정보 등은 이를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2) 건축·주택 행정업무 관리조직

업무관리조직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의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지적과가 관련 업무와 연계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 허가민원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허가 발생건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군단위에서는 1~2개과(예: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시·구 단위에서는 3~4개과(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지적과 등)에서 건축 및 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8> 건축·주택행정업무 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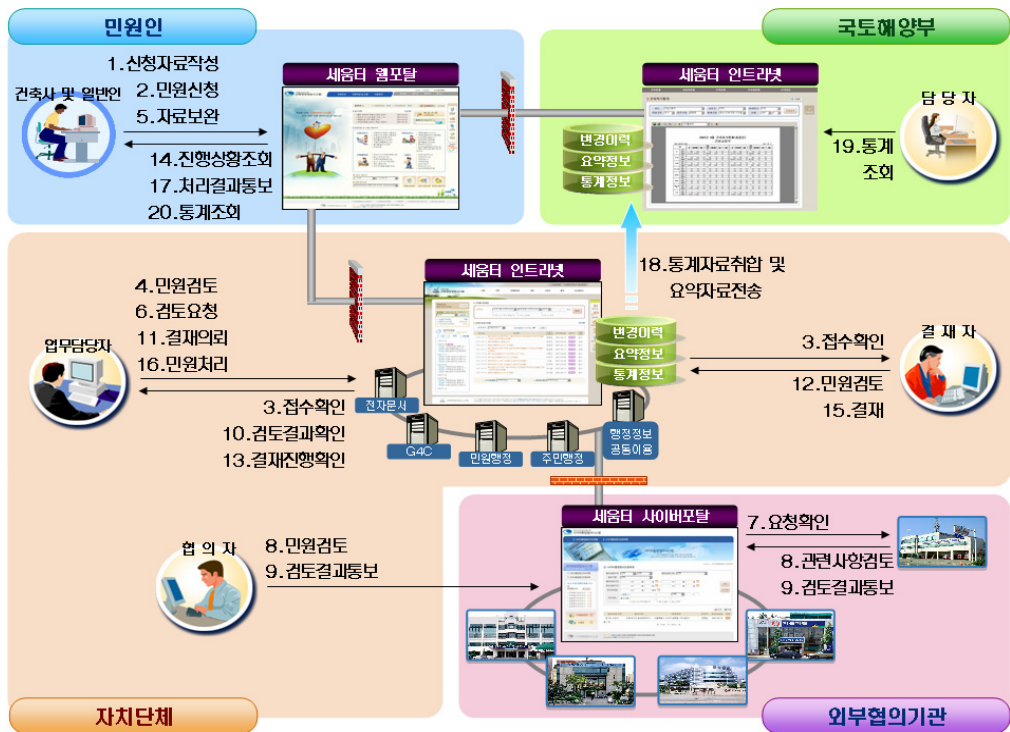


3) 건축·주택 행정업무 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건축·주택행정의 웹포털인 세움터를 통해 신청자료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움터의 인터넷에서 건축·주택 행정업무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업무담당자, 결재자가 접수확인, 민원검토, 결재를 진행하며, 협의자는 외부 협의기관과 세움터를 통해 관련 사항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통보받는다.

행정업무처리가 완료되면 관련 통계자료가 취합되고 요약자료가 전송되어 국토해양부에서 담당자가 통계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고,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통계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9> 건축·주택 행정업무 처리도



출처 : 2006년 건축·토지·등기 연계 고도화 관련 업무 참고자료

〈표 16〉 건축행정 업무

순서	절차	내용	사용자
1	신청자료작성	민원인이 세움터 웹포탈에 로그인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관련 설계도서를 등록	민원인
2	민원신청	민원인은 작성 완료한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며 신청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전자지불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전자적으로 납부하며, 민원신청정보는 해당 민원 시스템으로 자동 통보	
3	접수확인	공무원은 세움터 인트라넷에서 실시간으로 접수 민원 확인 및 민원별 담당자 지정	담당 공무원
4	민원검토	공무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입력된 신청내용 및 관련 설계도서를 검토하며, 관련 서류를 행정정보공유시스템과의 연계기능을 통한 조회 및 민원인에게 보완사항 요청	
5	자료보완	민원인은 보완 요청된 민원에 대해서 수정 후 재검토 요청	
6	검토요청	공무원은 해당 민원의 관련 내부협의부서 및 외부협의 기관에 검토 요청	
7	요청확인	외부협의기관에서는 세움터 사이버포탈에서 검토 요청된 민원에 대해서 요청현황을 조회	내부 협의부서 외부 협의기관
8	관련사항검토	내부협의부서 및 외부협의기관에서는 검토 요청된 민원에 대해서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설계도서를 검토	
9	검토결과통보	내부협의부서 및 외부협의기관에서는 검토 결과를 통보	
10	검토결과확인	공무원은 내부협의부서 및 외부협의기관에서 통보된 검토 결과를 확인	담당 공무원
11	결재의뢰	공무원은 검토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 결재자의 전자문서 시스템 연계 기능을 통하여 기안	담당 공무원 (결재자)
12	민원검토	결재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결재요청을 확인하고 세움터의 연계기능을 통하여 결재요청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	
13	결재진행확인	공무원은 전자문서시스템 연계기능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결재진행 상황을 확인	
14	진행상황조회	민원인은 실시간으로 민원진행상황을 조회 및 확인	민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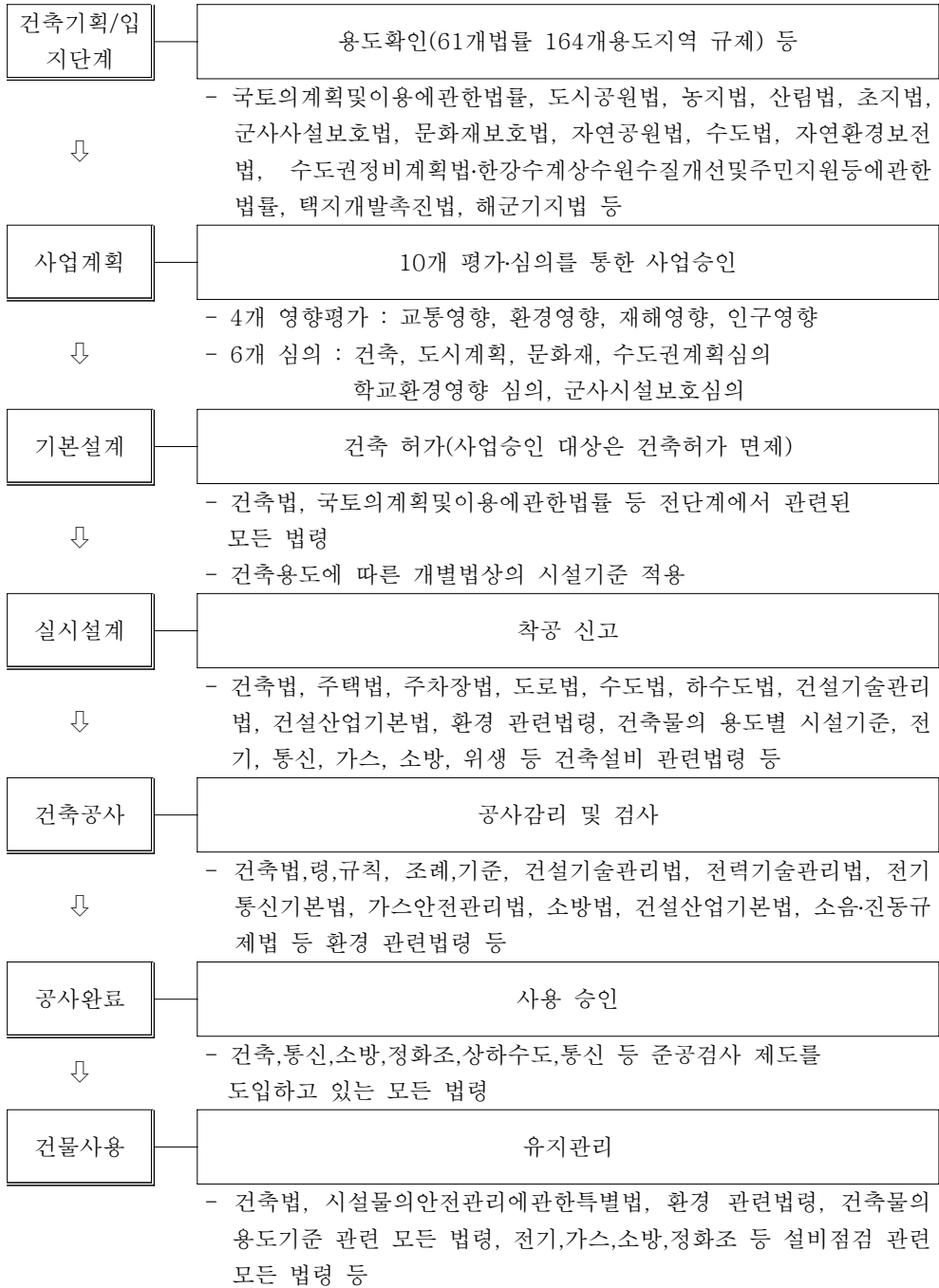
15	결제	결제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 민원을 결제하고, 연계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결과가 세움터로 전송	담당 공무원 (결제자)
16	민원처리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전송된 민원처리결과 자동 적용	담당 공무원
17	처리결과통보	민원인은 실시간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시 e-mail 및 SMS로 알림	민원인
18	통계자료 및 요약자료전송	시스템에서 자동적인 배치 작업을 통하여 하위기관의 통계자료와 민원관련 요약자료가 상위기관으로 전송	자치단체
19	통계관리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전국에서 취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분기별로 각 인허가 통계자료를 조회	국토해양부
20	통계조회	자치단체 및 대국민에게 건축인허가 관련 통계자료 조회 서비스	대국민 자치단체 관련기관

4) 건축·주택 행정업무 관련 법·제도

건축·주택 행정업무는 관련 부처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복합민원업무이며, 건축인허가 시 건축법 외 90여개의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기획/입지 단계에서는 용도확인을 위해 61개 법률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10개의 평가·심의를 통합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건축하거를 위한 법률이 적용되며, 실시 단계에서는 착공신고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건축공사 단계에서는 공사감리 및 검사와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며, 공사완료 단계에서는 사업승인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고, 건물사용 단계에서는 유리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적용된다.

단계별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공간통계정보와 건축·주택 행정통계와의 연계

건축·주택행정통계는 앞에서 살펴본 업무처리절차와 비교할 때 업무철자의 18, 19, 20단계에서 통계청의 공간통계정보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통계자료가 생성되어 상급기관으로 보고(순서 18)’ →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인 통계의 추출이 가능(순서 19)’ → ‘통계청에서 순서 19에서 생성된 자료를 공간통계로 활용 가능(순서 20)’ 한 순서로 처리되는 절차에서 통계청의 공간통계정보와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축·주택행정 고도화사업에서 생산되는 건축행정 DB는 속성정보로서 통계청에 제공되며, 통계청에서 생성된 UFID 기반센서스 지리정보와 건축물 평면도는 건축·주택행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전자정부사업과의 관련성 분석

구분	세부추진 과제	주요서비스	주요DB	연관성
대국민 서비스 혁신	국가안전 관리종합 서비스	재난재해업무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리DB, 재해재난DB	◁ 센서스 지리정보 재해·재난 기록 ▶
	건축, 토지, 등기 연계 및 고도화	건축·주택행정 전과정에 대한 인터넷 기반의 포털서비스 제공	토지DB, 건축행정DB	◁ UFID 기반 센서스지리정보DB, 건축물 평면도 ▶
	종합국세 서비스 고도화	인터넷을 통한 국세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국세DB	◁ 인구/사업체 정보 ▶
	국가복지 종합서비스	생애주기별 수혜자 중심의 포털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관련DB	◁ 인구정보 ▶
	고용, 취업 종합정보 서비스	고용/취업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인적자원DB	◁ 인구/사업체 정보 ▶

구분	세부추진 과제	주요서비스	주요DB	연관성	
	기업 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시공간적 제약없는 One-Stop 기업서비스 단일창구 구축	기업DB, 산업정보DB	◁ ◀	사업체정보
	국가물류 종합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물류업무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물류주체, 물류거점 및 분야별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물류정보DB	◁	사업체정보
	전자무역 서비스	전자무역 업무처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환경 구축 무역절차를 전자적으로 전환	무역DB, 기업DB	◁	사업체정보
	외국인종합지원 서비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 종합투자지원시스템 구축	외국인투자 DB, 외국인 관련DB	◁	인구DB (외국인근로자), 사업체DB

◁ : 속성정보 제공, ◀ : 공간정보 제공, ▷ : 속성정보 수집, ▶ : 공간정보 수집
출처: 공간통계지식체계 추진계획, 통계청, 2007, 8면.

정부의 DB구축사업 중, 건축물대장 정보제공, 행정업무지원 및 대민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사업은 건축물대장을 통계청에 제공하고 통계청은 건물의 속성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제6절 국내·외 통계 관련 서비스

통계청의 정보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되었다. 통계청은 1976년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착수하여 이듬해에 시험 가동하였다. 1980년에는 온라인시스템을 시험 가동하였으며, 이후 몇몇 정부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시스템을 연결하였다. 통계정보시스템(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은 1990년에 개발되었으며 1991년 이를 공개하고 대외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4년 이후로는 천리안 등의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최종후, 1997, 38쪽), 1999년에는 웹서비스 도입하여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08, 763쪽).

현재 통계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는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DW 등이 있다. 통계청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는 통계청 대표 홈페이지(<http://www.nso.go.kr>)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은 370여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1,055여종의 국가통계 전체를 DB에 수록하고 이를 One-Stop 포털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사용자는 물론 고급 통계 수요자를 위한 전문 검색 기능까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하여 87개 통계작성기관 343종의 승인통계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각종 통계정보의 수집을 위해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반면, 이제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통계정보를 쉽고 빠르게 득할 수 있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1. 국내 통계 관련 정보화

1) 국가통계포털시스템¹¹⁾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중앙통계기관(통계청)이 있지만 통계청과 각 부처에서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성격이 강한 절충형’ 국가통계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현재 국가통계는 통계청을 포함해 300여 국가통계 작성승인기관에서 900여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정보는 기관별로 각각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고, 통계서비스도 DB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11) 통계청에서 2008년에 발표한 ‘국가통계 포털서비스시스템’ 참조

기관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기관들은 엑셀, 워드문서 등 단순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거나 아예 서비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계 이용자는 원하는 통계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지 등 이용에 어려움과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2005년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에서는 현 국가통계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 저조, 통계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미흡, 통계자료의 공유 및 활용의 미비를 지적하였다. 2005년 국가통계통합DB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에서는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며 통계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조직이 53개 기관이고 평균 통계담당인원수는 약 1.8명이며 나머지 기관은 1명이 타 업무와 동시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DB 및 표준화도 미진한 상태로서 그 당시 전체 통계작성 승인기관 중 약 40%가 통계DB를 미구축한 상태이며 DB구축, 자료관리, 응용시스템에 대한 비표준화로 공동활용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자체 통계DB 시스템 구축으로 자료호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통계는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이 강한 주요 국가 인프라’라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통계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국가통계인프라를 한 단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통계정보서비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통계작성기관의 모든 승인통계를 DB화하여 통합구축하고 통계 수요자에게 통합된 국가통계자료에 대한 포털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2) 추진방향

국가통계 통합DB구축 사업은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가 통합되고 One-Stop으로 서비스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 증진은 물론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계 선진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통계 통합DB 구축, 국가통계 One-Stop 포털서비스체계 구축, 국가통계 공동활용체계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통계작성기관 통계DB의 효율적 통합 및 연계, 통계 포털사이트를 통한

One-Stop 서비스, 고급분석기능 및 다양한 통계 콘텐츠 제공, 이용자 계층별 맞춤통계 서비스 제공, 통합DB 자료의 기관 공동활용, 최신 웹서비스 기술 적용을 통한 공통 서비스모듈 개발 및 보급, 통계법 등 법제도 정비, 통합DB업무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 마련, 통계작성기관 협조 체계 마련 등의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통계청, 2008).

사업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국가통계작성기관의 통계DB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통계관리용 DB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통계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급용 통계DB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국가통계작성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 통계DB 담당자 전체회의(Workshop)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내용 안내, 통합DB구축 시 협조사항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더불어 시스템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포털서비스 제공기반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본 사업은 통계작성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DB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통해 통합DB 구축·운영 방향과 통합 및 포털서비스시스템 개발 내용 및 서비스 기능 그리고 통계DB 구축 시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을 검토하고 기관별 통계DB 시스템 구축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2007년도 통합DB구축 대상기관인 45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통합DB 구축대상 여부 및 대외서비스 가능여부와 자료형태별(데이터베이스, 인쇄물, 파일) 관리현황 및 구축기준을 조사하며, 나머지 기관의 승인통계에 대하여도 실사를 통한 세부현황 자료를 토대로 DB 구축 및 통합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한편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통계법에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DB 구축을 의무화하고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통계 통합DB 구축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집행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자부의 ‘2006년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1차 국가통계 통합DB 구축사업’을 ‘06.4.6.부터 ’06.11.15.까지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40개 기관의 승인통계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포털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여 ’07년 7월부터 서비스 중에 있다. 올해 2007년에는 ‘2차 국가통계 통합DB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5개 승인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합DB에 추가 수록할 것이다. 통합DB 구축사업의 기관별 주요역할은 <표 18>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와 같다.

〈표 18〉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행정자치부	- 행정정보DB구축사업 전체 기획 및 감독
한국전산원	- 계약체결(통합DB사업 주관기관과 공동) - 주관사업자 선정 지원 -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감리기관 선정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통계청	-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사업 주관 -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통합DB사업 전담기관과 공동) - 사업관리, 감독 및 확인 점검 - 감리수행 지원 및 검수 처리
국가통계작성기관	- 시스템 개발 관련 의견 및 요구사항 제시 - 통합DB 구축사업 협조 - 통계자료 제공 및 통합DB 구축 참여

(3) 국가통계포털시스템 기반 구축

가. 통합DB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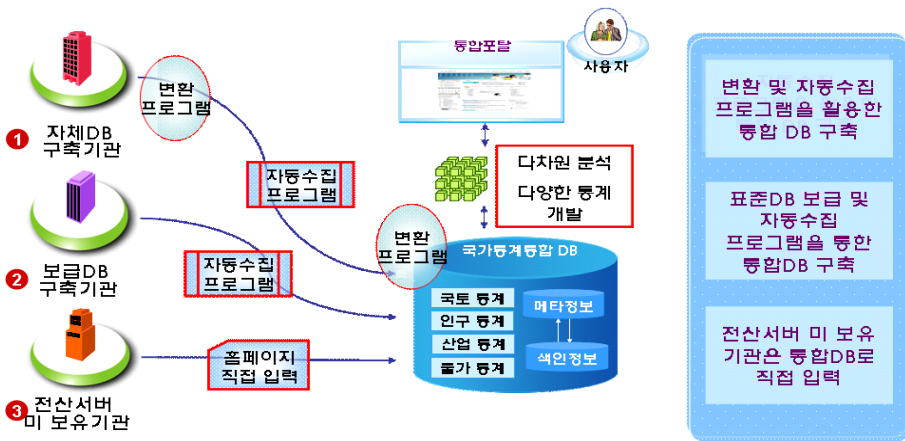
국가통계작성기관의 모든 통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축 및 검색 운영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저장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분류·항목코드를 효과적으로 저장·운용 가능하게 설계하였고 통계기관정보, 통계분류정보, 사용자정보 등 메타데이터를 통해 DB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국제 표준화 동향에 따른 통계개념을 수용하여 검색 및 분석을 효율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나. 국가통계 통합DB 설계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분산형 통계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300여개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전문가들과 함께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실태와 통계DB 구축현황 파악, 통계DB 통합 및 연계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5주 동안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DB 및 시스템간의 비표준화로 작성기관간 상호호환 및 자료의 공동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DB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90%이상의 기관이 DB통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19>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DB 자료를 자동수집 체계로 통합화하는 개념도이다. 통계작성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첫째, 통계DB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관, 둘째, 통계청에서 보급한 통계DB를 구축한 기관, 셋째, 통계DB 서비스를 위한 전산서버를 보유하지 않은 미구축 기관 등 3가지 형태로 나누어 통합DB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0> DB 통합화 방안 체계도



출처 : 2007년 통계청 업무 참고자료

자체DB 구축기관 및 통계청 보급 통계DB 구축기관에 대해서는 표준 통합DB로 변환하고 통계자료를 자동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통

합하도록 하였으며, 통계DB 미구축기관에 대해서는 DB구축 지원 및 통계시스템을 무상으로 보급·설치해 주고 이를 통해 자동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다. 유관 통계기관 통계자료의 DB 구축 및 통합

2006년에는 통계청, 한국은행,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 주요통계를 많이 생산하고, 통계 종수가 많은 기관을 선별하여 40개 기관 246종의 통계자료를 DB로 입력하거나 기존 DB로 되어 있는 것은 통합DB 형태로 변환 구축하여 통합을 완료하였다. 2006년에 통합DB로 구축한 기관 및 통계종수는 <표 19> 2006년 통합DB 구축 현황과 같다.

<표 19> 2006년 통합DB 구축 현황

기관 구분	소장기관	주요통계	구축 종수	인쇄물	DB	비고
				(면수)	(MB)	
중앙 행정기관	1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16	38,403		보급
	2 노동부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6		2,336	보급
	3 농림부	과실류가공현황조사보고	17	9,555		보급
	4 문화관광부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	7	2,563	12,767	자체
	5 보건복지부	국민구강실태조사	30	5,843	5,297	보급
	6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동향	8	8,389	38	자체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2		27,356	보급
	8 환경부	수질오염실태보고	9	16,360		보급
시도	9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5	1,191	1,327	보급
	10 경기도	경기도기본통계	7	9,514	2,243	보급
	11 경상남도	경상남도기본통계	5	4,484	922	보급
	12 경상북도	경상북도기본통계	4	2375	2,072	보급
	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기본통계	4	1,059	1,010	보급
	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기본통계	4	408	845	보급
	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기본통계	4	3,291	1,255	보급
	1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기본통계	5	19,577		보급
	17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6	2,239	55	자체
	1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기본통계	4	4,619	3,021	보급
	1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기본통계	4	5,339		보급
	20 제주도	제주도기본통계	3	4,668		보급
	21 전라남도	전라남도기본통계	3		859	보급

기관 구분	소장기관	주요통계	구축 종수	인쇄물	DB	비고
				(면수)	(MB)	
	22 전라북도	전라북도기본통계	4	1,961	917	보급
	23 충청남도	충청남도기본통계	4	6,397		보급
	24 충청북도	충청북도기본통계	4	5,419		보급
교육청	2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통계	1	5,175		보급
금융기관	26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1	1,245		보급
	27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14		1,171	자체
공상공단	2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	5,861		보급
	29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1	1,045		보급
	30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원인조사	1	322		보급
	31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장애인고용동향	1	528		보급
	32 한국환경자원공사	영농폐기물조사	1	297		보급
연구기관	33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중소기업정보화수준평가	1	1,292		보급
	3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1		15,000	자체
	35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한국의인적자원개발지표	1		1,441	보급
협회조합	36 시장경영지원센터	채널시장실태조사	1		266	보급
	37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기동향조사	1	102		보급
	38 중소기업협동중 앙회	중소제조업 경기국면지수	3	2,160	1,890	보급
	39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조사	1	38		보급
기타기관	40 한국생산성본부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1	207		보급
합계			246	171,926	82,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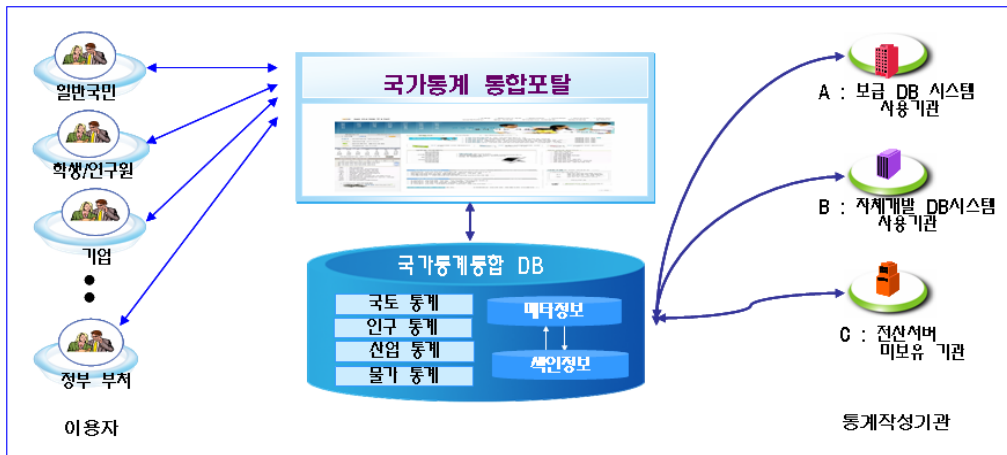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06

2007년에도 국가통계 통합DB 구축 2차 사업을 통해 45개 기관의 90여종 통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통합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나머지 기관의 승인통계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승인 받은 통계에 대해서는 기관 방문실사를 통한 세부현황을 조사하여 2008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라. 국가통계포털시스템 개발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통계이용자는 포털사이트에만 접속하면 원하는 통계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통합 DB에 구축된 일부 기관의 통계자료에 한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8년 전체 통계작성기관 통계자료의 통합DB 구축이 완료되면 전체 기관의 통계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1〉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념도



출처 : 통계청, 2008

〈그림 21〉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념도는 X-Internet, OLAP 등의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서비스시스템의 개념도이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2006년에 국가통계 포털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그림 22〉는 국가통계포털(KOSIS: www.kosis.kr)의 메인화면으로 통계자료의 주제별, 조사별, 기관별 검색, 통합색인검색, 빠른 통계검색, 주요통계지표 등 통계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2〉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출처 : KOSIS, 2008

〈그림 23〉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시스템의 통계표 조회화면



출처 : KOSIS, 2008

<그림 23>는 주제별, 조사별, 기관별 등 다양한 검색경로를 거쳐 실제 통계표를 검색해 본 화면이다. 통계표 조회화면에서는 분류, 항목을 서로 바꾸어 가며 통계표를 볼 수 있는 피벗기능, 특정 분류, 항목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기능, 조회 조건을 바꾸어 해당 조건에 맞는 자료만으로 통계표를 볼 수 있는 기능 등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통계자료를 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엑셀, 한글, MS워드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자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통합DB 구축 시 웹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 DB자료 변환 및 수집을 자동화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서비스에 공통 웹서비스 모듈을 개발하여 기관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 유통을 위한 웹서비스 기반의 연계표준을 제시하고 통합DB 구조의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표준을 유도하고 있다.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표준의 협의, 공개등급의 결정, 통계자료 통합관련 협의, 통계자료 서비스방안의 협의, 교육 및 홍보방안의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 및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다.

마. 시스템 구축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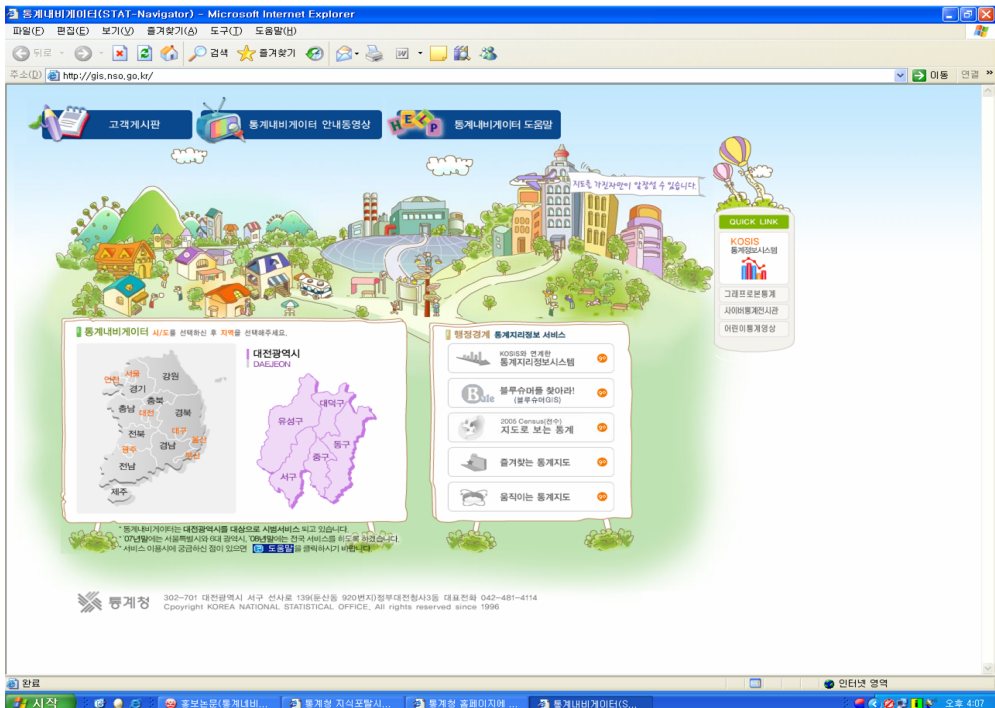
본 사업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DB 설계와 웹서비스 연계표준에 근거하여 국가통계 전체를 하나로 통합화된 DB로 구축·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국가통계 DB를 한 곳으로 통합함으로써 통계이용자는 원하는 통계를 One-Stop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웹서비스, X-Internet, OLAP툴 등 최신전문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통계콘텐츠 제공으로 통계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계관련 분류·항목 코드 표준화로 통계정보자료의 일치성 향상 및 통계표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며, 통계 DB, 운영관리, 응용시스템 등의 표준화 및 보급으로 통계업무 능률 향상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통계네비게이터12)

(1) 추진배경

통계 “네비게이터(navigator)” 서비스는 이용범위가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강제된 현재의 행정구역별 지리정보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지역과 범위를 정하여 근린 생활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서비스를 말한다.

<그림 24> 통계 내비게이터 서비스 메인 화면



12)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개념 통계 서비스 통계 내비게이터 서비스(s-NAVIGATOR)’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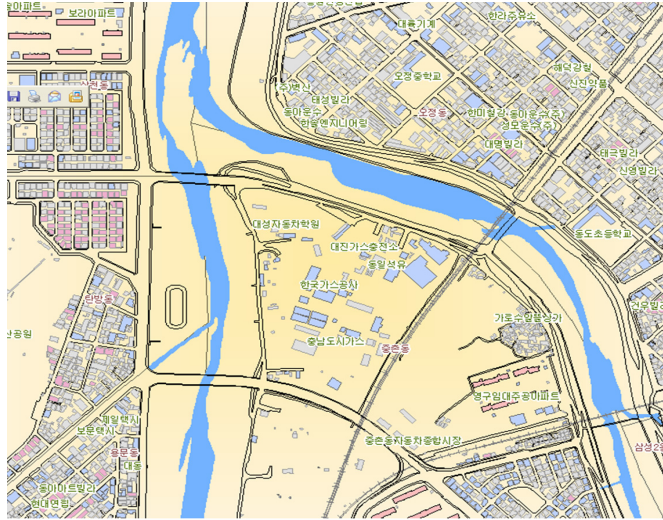
근린 생활권 통계를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함으로써 통계의 생활화를 통한 국가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NGIS(국가지리정보체계)활용 분야의 표준이 되는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행정정보 활용을 통한 지역통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표적 모델로 꼽히는 미국의 TIGER(Topologically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 Referencing System)시스템을 비롯하여 GIS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이다. 이에 비해 후발주자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구축한 포인트 기반의 통계 네비게이터 시스템은 다양한 여러 경계와 융합할 수 있고 정밀한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여 활용성면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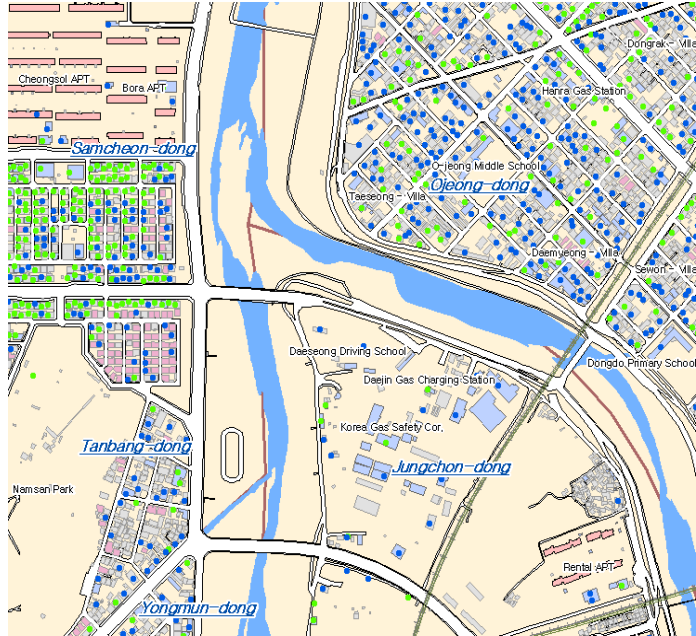
통계 네비게이터는 센서스지도, 거처 및 사업장 포인트 DB, 기초단위구 및 집계구와 이들을 묶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기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센서스지도란 인터넷을 통하여 통계 지리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치(디지털)지도를 말한다. 통계청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년 주기로 항공 측량하여 작성한 국가기본지도인 지형(위치) 중심의 수치 지형도 위에, 통계청과 지자체가 매년 현장 확인한 최신 지리정보를 부가하여 작성한 건물, 도로 중심의 활용지도이다.

〈그림 25〉 대전광역시 센서스지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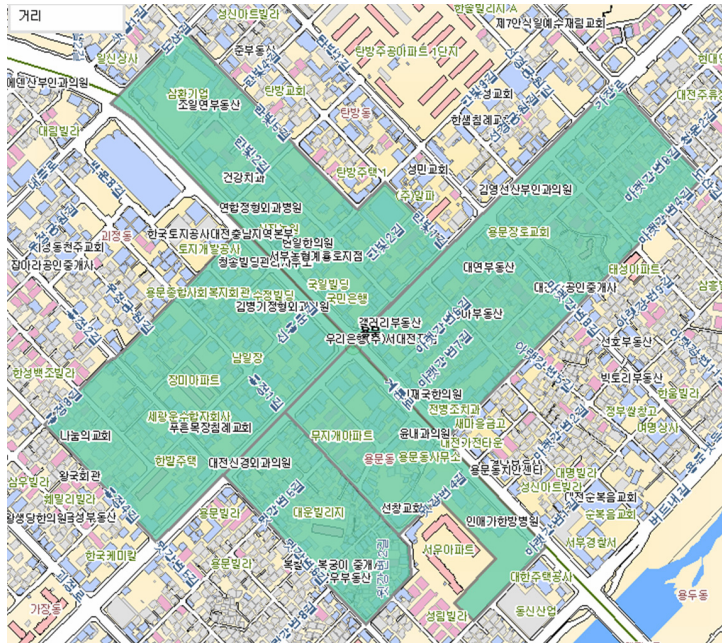
거처 및 사업장 포인트 DB란 센서스지도 바탕 위에 위치정보(Point)를 입력하고 속성정보인 통계와 연결하여 구축한 DB이다. 전국 모든 거처(1,350만 개)와 사업장(320만개)에 Point를 입력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자료와 연결한 DB를 구축하게 된다.

<그림 26> 입력된 포인트가 표출된 모습



기초단위구란 거쳐 및 사업장 포인트를 담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경계를 정하는 일이다. 도로, 하천 등 준항구적인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획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통계의 시계열 유지가 가능하여 소지역에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집계구란 통계 내비게이터의 최종 서비스 단위로 기초단위구를 2-3개씩 묶은 구역으로 평균 1k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집계구는 지형지물에 따라 기계적으로 획정된 기초단위구를 보완하게 되는 일정 규모를 유지토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교 지역간 동질성을 갖도록 한다.

<그림 27> 기초단위구 및 집계구 설정 모습



(3) 서비스 내용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되고 있는 통계 내비게이터의 내용은 2005년 인구주택 센서스 결과 26개 항목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소분류별 사업체수이다. 인구 및 가구 부문은 총인구, 남녀 성별 총인구, 특성연령별(1~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 및 남녀 성별 인구와 총가구수에 대한 센서스 통계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28> 인구 및 가구 부문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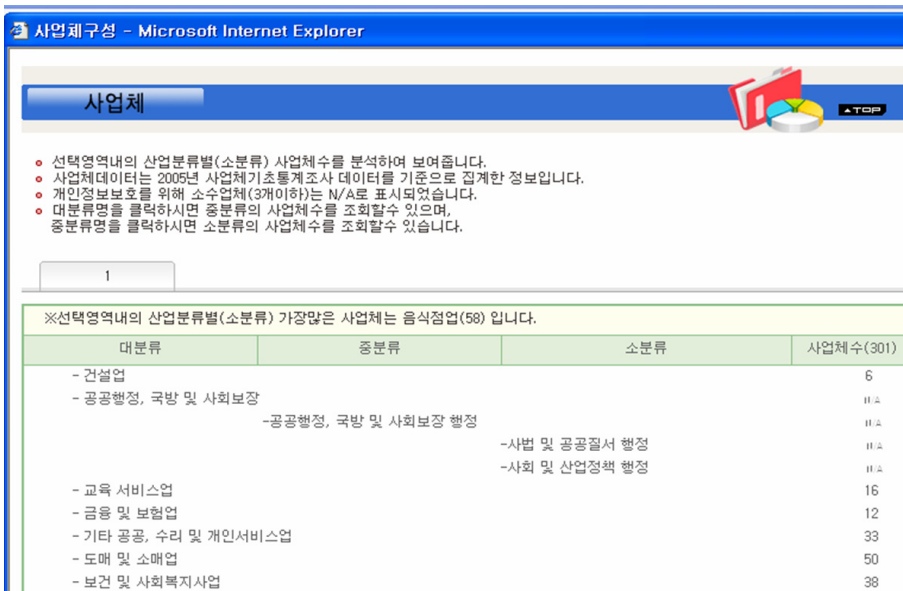


주택 부문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주택수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해서, 사업체 부문은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수 통계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29> 주택부문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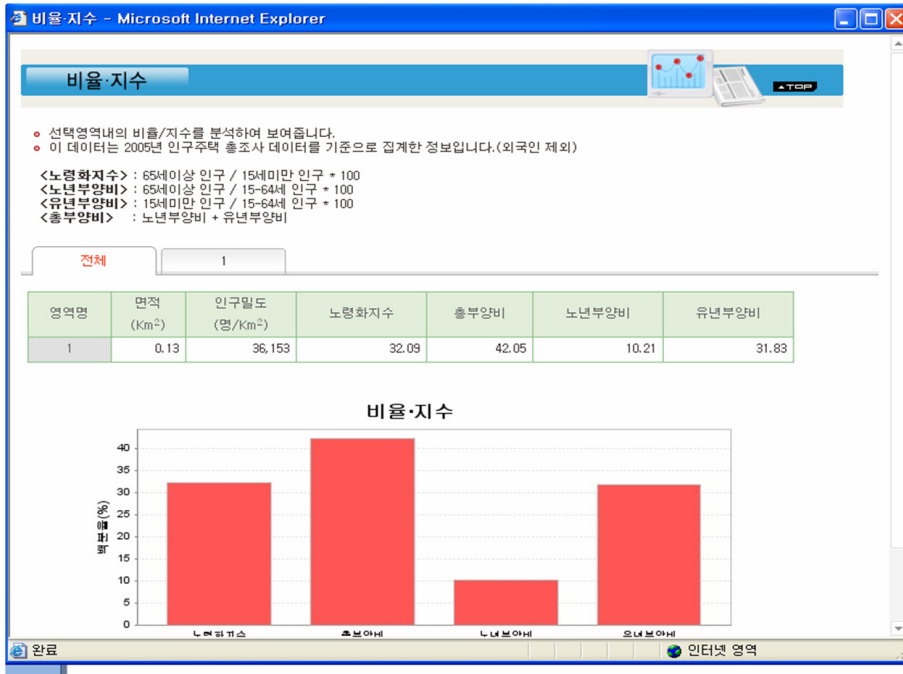


<그림 30> 사업체 부문 서비스 내용



이상의 통계 정보를 지수화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면적 및 인구밀도, 노령화지수, 부양비(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등의 자료는 통계를 요약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서비스다

<그림 31> 비율과 지수 서비스 내용



3) 인터넷 통계조사시스템 13)

(1) 추진배경

1인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및 젊은 층 등 면접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13) 인터넷 통계조사시스템, 통계청, 2008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또한 사생활 비밀보호를 이유로 면접조사를 기피하는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통계조사환경의 악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편, 2006년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수가 약 1,267만 가구, 인터넷 이용자수가 약 3,301만명, 인터넷 이용률이 72.8 %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의 IT기반 인프라는 충분히 확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통계조사환경의 악화와 IT기반 인프라의 확대는 자연히 웹 기반의 CASI시스템, 즉 인터넷조사시스템의 개발 확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인터넷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조사가 인터넷조사화되지는 않는다. 면접조사 후 조사원이 입력하는 CADI 방식이 맞느냐 응답자가 직접 입력하는 CASI 방식이 좋느냐에 따라, 또한 응답자의 입력 환경(PC, 네트워크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입력방식을 선택하거나 병행하게 된다. 현재 통계청의 웹 입력시스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0> 입력방법에 따른 웹 시스템 구분

운영환경	입력방법	통계조사명
WEB 입력시스템	지방사무소입력 (CADI)	농·림·어업총조사, 인구동태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소비자전망조사, 운수업통계조사, 전자상거래기업체 통계조사 등 총 23종
	사업체 및 가구 직접입력 (CASI)	인구·주택총조사, 전자가계부, 서비스업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동태조사, 전자상거래소평몰조사 등 총 6종

순수한 의미의 인터넷조사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웹 CASI 시스템은 6종 정도가 개발된 상태이다. 이 6종 시스템 모두 웹기반의 CADI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터넷CASI 방식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2) 시스템의 구성 및 적용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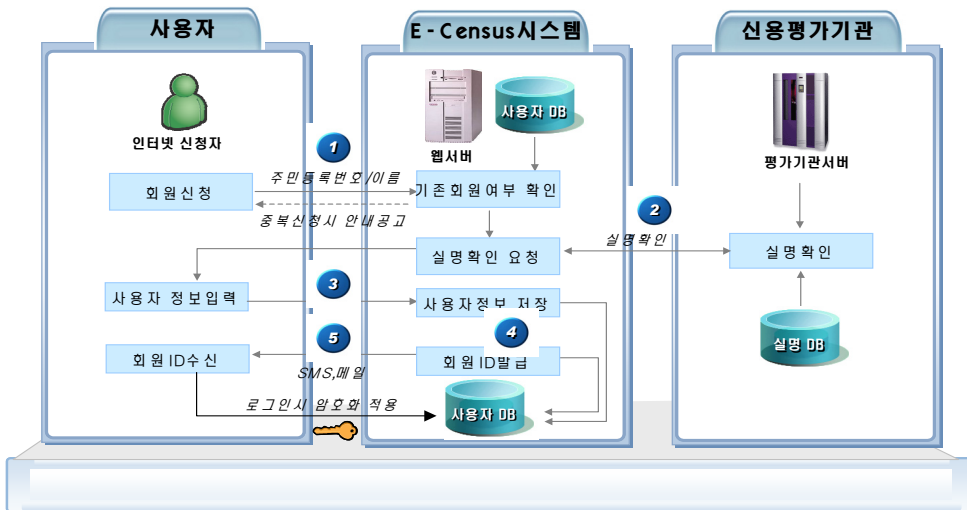
인터넷 조사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확인이나 보호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2005년 인터넷 인구주택총조사 (일명 E-Census)에서 적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아울

러,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가. 인증

인터넷 신청자의 사용자 확인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사용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실시하고, 암호화 모듈을 탑재한 자료전송 보안체계를 통해 철저한 정보보안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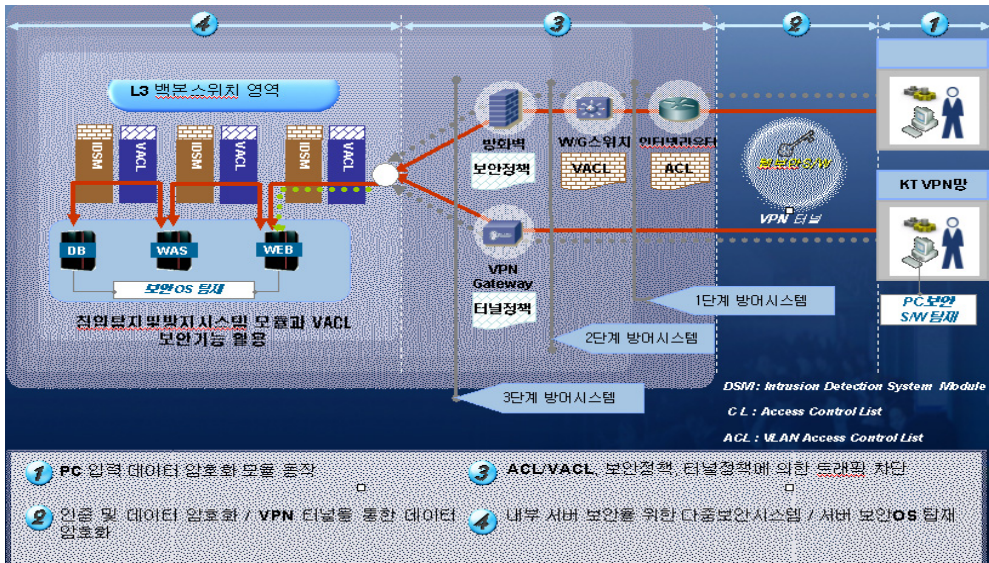
<그림 32> 이용자 인증 체계



나. 보안

E-census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고 인터넷을 통한 침입을 탐지/차단함으로써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존 보안시스템과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3> 보안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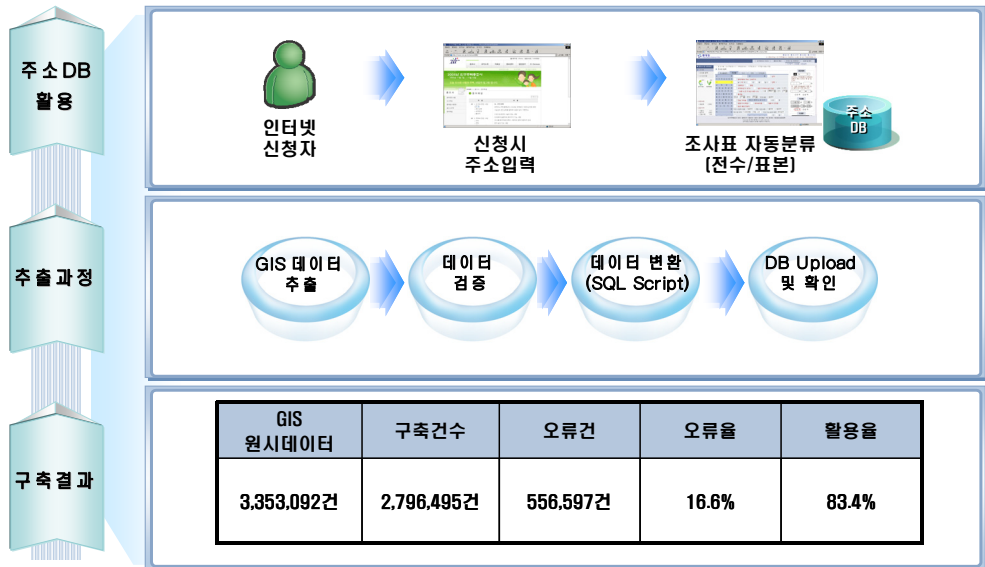


방화벽과 VPN, IDSM(침입탐지시스템)의 연속성 있는 보안정책 수립 및 적용이 가능하며, 내부 L3 백본스위치에 탑재된 IDSM에서 악의적 트래픽을 실시간 감시하도록 하며, IDSM의 시그니처(Signature)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공격패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기 설치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해 방화벽 및 VPN의 통합 로그 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IDSM과 인터넷라우터, W/G 스위치, L3 백본스위치가 침입차단 연동을 통해 악의적 트래픽 차단하도록 하였다. 적용되는 모든 보안대책은 통계청의 보안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다. 행정자료의 활용

E-Census에서는 GIS 데이터를 추출하여 주소DB를 구축하여 두고, 인터넷 신청시 입력된 거주지 주소정보와 주소DB를 비교하여 조사표 입력시 전수 조사표 대상가구인지 표본 조사표 대상 가구인지를 자동분류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그림 34> 주소DB 구축 및 활용 체계



(3) 인터넷 조사의 성과

인터넷 조사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기간 중 시스템의 장애없이 24시간 풀가동하여 언제든지 국민들이 인터넷 조사시스템에 접속가능하였고, 둘째 조사신청 및 입력에 대한 현황을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였으며, 셋째, 조사기간 중 시정 요구사항을 웹상에서 파악하여 즉시 인터넷 조사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넷째,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공지사항이나 업무지침 전달사항을 SMS시스템과 웹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전달하여 일관된 지침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처음 실시하는 인터넷 조사인만큼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도 지적되었다. 첫째, 주소DB의 불완전성과 실제 사용 주소와의 불일치 등으로 자동부여가 62.1%에 불과하여 입력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는 현재와 같은 업무절차에서는 주소DB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2001년 스위스에서 시행했거나 2006년 뉴질랜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구별 PIN번호 부여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표본조사의 경우 한 화면당 조사문항이 1개로 구성된 사례가 다수 있어 응답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서버 접속 횟수가 늘어나는 역기능이 발생한 점이다. 이는 조사내용 파악에는 1문항씩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화면 구성을 하였으나, 응답유도를 위해서는 화면구성을 응답자 친화적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서버의 부하경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응답자 PC에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로 사양이 낮거나 별도의 방화벽을 가진 일부 응답자의 PC가 갑자기 down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응답자가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인터넷 조사시스템 개발시 사양이 낮은 Window 98까지를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나, 충분한 검증기간을 갖지 못해 window 98이나 별도의 방화벽과 충돌되는 보안 모듈의 일부 기능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일회성 대규모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적어도 시행 1년전에 개발하여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를 통해 기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E-Census 실시 결과 조사완료 가구는 140,892가구로 당초 인터넷 조사 목표 32만 가구의 44% 정도가 참가하여 전국 추정가구 대비 0.88%의 참가율을 보였다. 시스템 개발과 전산환경 구축을 위해 투입한 노력과 예산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조사에의 참여도는 예상보다도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향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홍보 강화, 둘째, 보다 사용에 편리한 시스템 구축, 셋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조사구 번호가 매치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사구 번호를 24시간 내 수동부여하여 전수/표본을 구분한 후 입력토록 행정절차가 정해졌으나, 신청 후 24시간 초과후 입력하는 프로세스에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였다. 대기 시간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는 주소확인 전담자의 증원과 입력가능함을 즉시 통보하는 SMS기능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조사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문하여 면접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을 토로하였다. 조사원에 대한 읍면동 관리자의 철저한 관리 및 보다 용이하게 인터넷 조사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국가 GIS 구축 사업

정부는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가정보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NGIS)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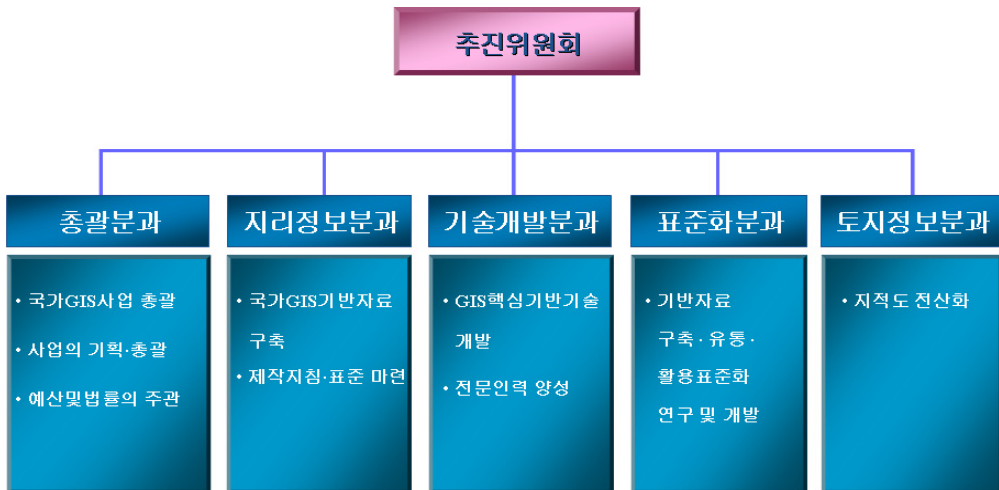
1995년부터 추진된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은 ‘21세기 고도화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GIS 기반 조성’을 목표로 기본공간정보DB 기반구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정부차원의 GIS 활용체계 개발지원, 공간정보 관리/유통 극대화, 관련제도 및 법규 정비 등의 6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3).

<표 21> 1차 국가GIS 구축 사업 추진내용

사업명 (기간)	주요내용	소관분과 (주관부처)
지형도 수치지도화사업 (1995~2000)	· 1:5,000과 1:25,000 수치지형도는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사업을 완료 · 1:1,000 수치지형도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제작 완료	지리정보분과 (국토지리정보원)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사업 (1998~2000)	· 도로망도, 토지이용현황도, 지형·지번도와 토지특성도의 주제도 전산화	지리정보분과 (국토지리정보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1995~2000)	·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에 대한 관로지도 전산화	지리정보분과 (국토지리정보원)
기존지적도 전산화사업 (1995~2000)	· 사업대상 748,000매 중 204,000매(27%) 전산화	토지정보분과 (행정자치부)
GIS 표준화사업 (1995~2000)	·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공간자료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유통과 관련된 표준 제정	표준화분과 (정보통신부)
GIS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1995~2000)	· GIS 시스템통합 기술, Mapping 기술, DB Tool 기술, GIS 기본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등 4개 분야 16개 세부기술개발과제 추진	기술개발분과 (과학기술부)
GIS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996~2000)	· 대학(원) 중심의 핵심인력양성과 GIS교육의 분산화	기술개발분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공공GIS 활용체계 개발사업 (1998~2000)	· 토지관리, 토양자원정보, 산림지리, 지하수, 지질정보 관리시스템 등 5개 분야 공공GIS활용체계 개발	총괄분과 (건설교통부)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 (1996~1997)	· 지하시설물관리체계개발 시범사업 추진(과천시)	총괄분과 (건설교통부)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1995~2000)	· GIS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47건의 연구과제 수행	총괄분과 (국토연구원)

※ 출처 :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3,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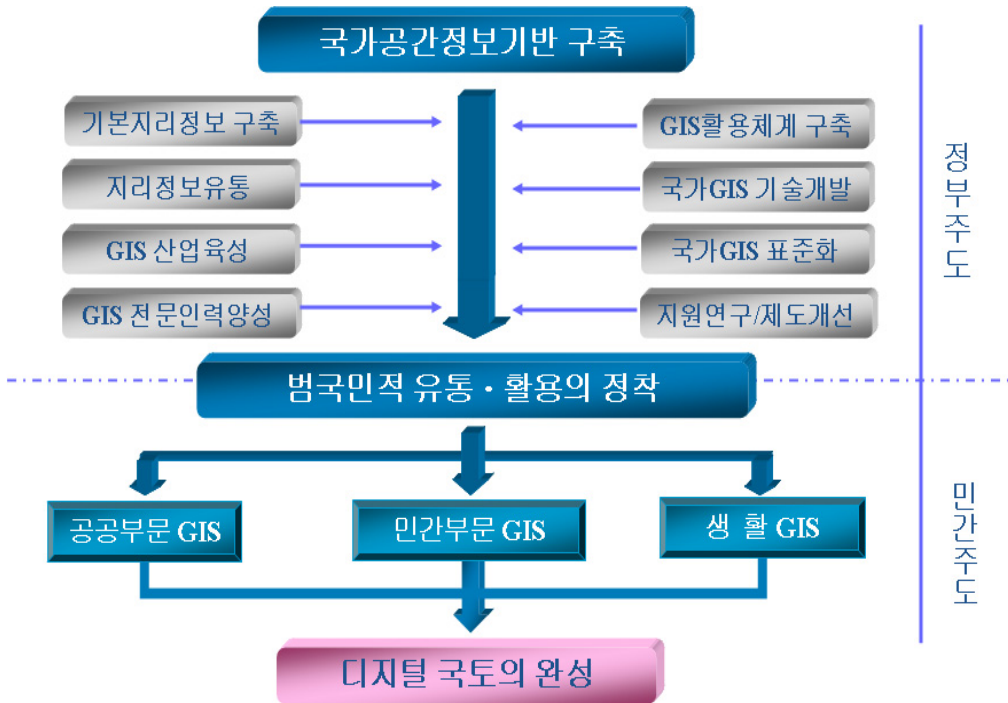
〈그림 35〉 제1차 국가GIS 구축 사업 추진체계



제1차 국가GIS 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공간통계정보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기존에는 생소했던 GIS에 대한 인식을 깊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제2차 국가GIS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었다.

2001년부터 추진된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여 디지털 국토의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반 확충 및 유통체계 완비,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 국가-민간-시스템-업무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국민 중심의 서비스 극대화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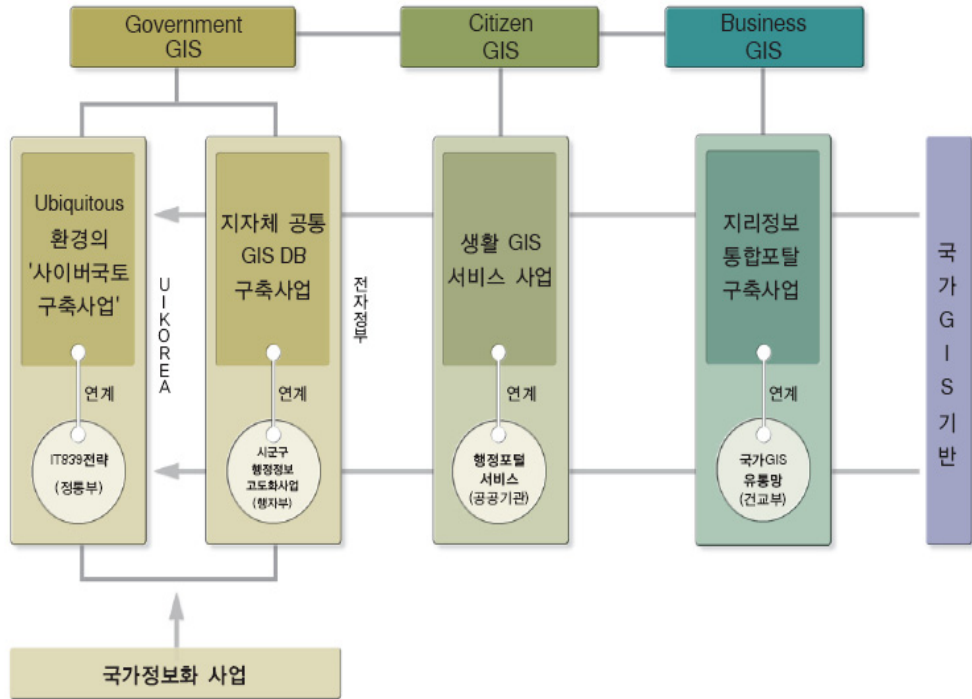
<그림 36> 제2차 국가GIS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



※ 출처 : 국가GIS 정책동향, 홍상기, 2008

2006년 이후부터 추진된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은 ‘유비쿼터스 국토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GIS기반의 확대 및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국가공간정보 구축, 국가GIS 활용가치 극대화, 국가정보화사업과의 협력적 구축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5). 이와 같이 3차례에 걸친 국가GIS 사업의 추진 결과, 그 동안 종이 문서의 형태로 관리되던 많은 지리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리정보 활용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37> 제3차 국가GIS 구축 사업의 협력적 사업추진 구상도



※ 출처 : 국가GIS 정책동향, 홍상기, 2008

(1) 세부 국가GIS 구축 사업

가. 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

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은 GIS 이용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통, 하천, 행정경계 등의 다양한 기본정보를 정부가 직접 DB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DB화하는데서 오는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해 향후 구축되는 시스템간의 연계성 및 상호 운용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의 위치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GIS와 관련된 각종 응용분야에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및 공동활용의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장기적 비전으로 기본지리정보 DB유지관리, 단기적 비전으로 기본지리정보의 항목별 구축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국토해양부, 구 건설교통부, 2001).

주요 사업으로 고품질 수치지도 및 기본지리정보구축, 기본지리정보 항목 설정 및 제작사양 개발,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및 기반조성, 무결점 수치지도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22> 기본지리정보구축 기본지리정보 분야별 항목

분야	항목	구축기관	선정사유
행정구역	행정구역	행정 자치부	행정자치부 고유 업무이며, 지적도면전산화 및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별도 비용 없이 추출가능하고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가능
교통	철도경계 철도중심	철도청	철도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선로평면도, 정차장평면도 등 철도시설기본도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DB구축 예정
	도로경계 도로중심	국토 지리 정보원	다양한 도로현황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이 가능하고 2003년 현재 전국 단위의 교통분야(도로) 기본지리정보를 구축 ※ 교통개발연구원과의 역할분담 및 업무협력 강화
해양 및 수자원	해안선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고유 업무로서 타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
	해저지형 해양경계		
	유역경계	수자원 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유역경계를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갱신·보완사업을 추진
	하천경계 하천중심 호수 등	국토 지리 정보원	하천, 저수지 등 자연지형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구축가능하고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가능 ※ 수자원공사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데이터확보가 곤란하므로 하천에 관한 기본지리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축하고 성과는 공동활용
지적	지적	행정 자치부	행정자치부 고유업무로서 타 기관에서 수행하기 곤란

※ 출처 :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3

동 사업의 추진으로 2003년도에는 교통분야 구축 성과물이 무상으로 감사원에 공급되었으며, 2004년에는 교통, 수자원분야 구축성과물이 무상으로 교통개발연구원, 문화재청,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급되었다. 또한,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각종 시설물 관리기관에 기본지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GIS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비용 및 시간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통합적인 데이터의 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수치지형도 및 국가기본도 수정·갱신 사업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자연적 또는 인공적 구조물들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제작된 지형도와 실제 구조물과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형도와 실제 구조물과의 불일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정책에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각종 재난 및 재해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상·지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범정부적 차원의 GIS사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수치지형도의 수정·갱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별로 구축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는 물론 데이터 표준에 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수치지형도의 호환 및 유통 등이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게 산재된 지하시설물 등 각종 도시시설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국토개발 계획수립과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에 필요한 디지털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치지형도 및 국가기본도 수정 및 갱신 사업이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000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과 1/5,000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을 들 수 있다. 먼저, 1/1,000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에서는 기존 제작된 1/1,000수치지형도에 대한 수정제작 및 도심지 확장에 따른 신규제작을 병행하였으며,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세계측지계에 대비하여 기존의 수치지형도를 세계측지계로 변화하였다.

1/5,000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매년 1개 권역씩 수정·갱신('03충청권, '04호남권, '05영남권, '06강원권, '07수도권)하였으며, 지형변화도에 따라 도심은 전면 수정, 산악지 등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이 또한 2003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세계측지계에 대비하여 세계측지계로 제작하였다(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3).

동 사업의 추진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1,000도엽과 1:5,000도엽이 각각 정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에 유·무상으로 공급되었으며, 민간에게는 모두 유상으로 공급되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1:1,000도엽과 1:5,000도엽이 정부 투자기관에게는 무상으로, 민간업체에는 유상으로 공급되었다(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3).

수치지형도 및 국가기본도의 수정·갱신은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지리정보의 품질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지리정보의 표준화와 양질의 지리정보 제공에 따라 국립지리정보원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또한 각종 GIS의 다양한 활용에 따라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범정부적인 제작에 따라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본지리정보 활용성 증대,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갱신된 수치지형도는 국가 GIS 활용·유통부문 22개 사업에 기본도로로 활용(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 토지피복지도, 자연환경GIS-DB구축(환경부 등)되고 있으며, 지자체 지적고시, 건설공사 설계를 위한 기초 도면으로 활용, 위치기반서비스, 자동주행시스템(CNS : Car Navigation System), 텔레매틱스, 건설공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구축되는 시스템 구축사업의 기본도면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 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 사업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의 공간영상정보의 기관별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표준화를 통한 유관기관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해 공간영상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u-City 및 UIS의 기반이 되는 종합적인 3차원의 국토공간영상정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용에 부응하여 모니터링에 의한 신속·정확한 국토변화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사용자 중심의 국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 수치표고자료 구축, 국토모니터링 구축, 영상지도 제작 등이 있다. 먼저,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에서는 1/5,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위해 전국을 5년 주기로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관리 및 서비스 등을 위한 DB를 구축하였으며, 수치표고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항공레이저 측량장비 및 기존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전국에 대한 수치표고자료를 구축하였다.

국토모니터링 구축에서는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토변화정보를 추출·가공하고 국토변화도를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지도 제작에서는 컬러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위치정보와 시각정보를 동시에 갖춘 1/5,000 영상지도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항공사진이 정부 및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에게는 유상으로 공급되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에게 항공사진과 더불어, 영상지도와 수치표고자료까지 무상으로 공급되었다. 2004년에 공공 및 민간에게 항공사진이 유상으로 공급되었고, 2005년에 항공사진, 영상지도가 유상으로 공급되었다.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사업에 다양한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3차원 디지털국토 실현 등의 기반이 되는 다양하고 정밀한 국토공간정보를 구축·제공하였다. 항공사진 및 정사영상 등의 영상정보와 수치표고자료 등의 지형정보를 구축하고, 실세계를 가상공간에서 완벽하게 재현함으로써 각종 개발계획수립 및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U-CITY 및 3차원 관련사업 등 각종 GIS활용시스템에 기반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수요조사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등 성과활용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성과의 연계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기관별 개별투자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GIS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으로 관련 산업 발전과 기술발전을 선도하였다. 항공레이저 측량 및 위성영상 등에 관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실용화 하였으며, 측량 및 GIS산업발전·시장확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또한 사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정보를 구축·제공하였다. 넷째, 일반인에 대한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국토의 40년 변천사를 기록한 항공사진을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하였고, 이로 인해 국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료교부를 위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라. 국토공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사업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국토공간정보(각종 수치지도, 주제도, 기본지리정보, 항공사진, 공공측량자료, GPS자료 등)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여 정부 및 지자체, 민간부문에 원활히 공급하고 신속하게 국토공간정보의 제작과 갱신을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토공간정보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각종 수치지도, 주제도, 항공사진, GPS 자료, 기본지리정보, DEM 등의 국토공간정보를 수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서비스할 수 있는 국토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국가공간정보관리(NSDD) 구축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공간 정보관리·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첨단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국토공간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 비전으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마련하여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갱신을 지원, 다양한 대국민 국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적 비전으로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관리를 위한 수치지도, 주제도, 항공사진, GPS자료 등 각종 대용량 국토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수용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정하였다.

국토공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은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 및 측량법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사업 범위에는 국토지리원의 경영전략과 목표, 각종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결과(ISP)를 기반으로 한 세부기능별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된 종합시스템이 포함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토정보관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도엽기반/객체기반 공간정보 관리 및 공급시스템 재구축(개발),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들 수 있다. 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토정보관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에서는 수치지도, 기본지리정보, 주제도, 항공사진(위성영상), GPS자료, 공공측량성과 등의 각종 국토 공간정보 수용을 통한 국토 공간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도엽기반/객체기반 공간정보 관리 및 공급시스템 재구축(개발) 사업에서는 종전 도엽기반 수치지도 관리시스템을 인터넷용 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였고, 수치지도Ver2.0 및 기본지리정보를 이용한 객체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기반의 객체정보 주문기능·

주문정보를 통한 객체생성 및 공급, 지형지물 변경 및 과거 지형지물 변경이력관리 기능을 구축하였다.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사업에서는 웹기반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접수/심사/승인 시스템 개발, 공공측량 사업검색시스템, 메타데이터 표준정의, 편집기를 개발하였다.

국토공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지리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구축된 국토공간정보를 타 사업 분야에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마련으로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국가공간정보 관리기술 및 서비스개발과 공간정보의 중복구축이 방지되었다. 셋째, 국토공간정보의 고도화되고 체계적인 저장 및 관리를 통해서 갱신을 용이하게 하고 지도제작과 품질관리 활동 등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도입과 업무구축이 사용 부서별로 실행되어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구축 및 서비스계획관리 및 종합적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정보화예산 확보 부족으로 당초 기획한 세부 정보시스템 구축이 제한적이게 되어 예산확충 추진이 필요하며, 각종 단위업무시스템이 설치, 운영되는 국토공간정보실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정보화계획 및 신규시스템 구축보다는 정보운영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사업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준비과정에서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 통계조사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지리정보에 관한 조사환경이 열악해지고 업종의 다양화와 변동이 많은 지역을 지도에 매번 수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기존의 단편적인 통계정보 서비스에서 벗어나 최신의 GIS기술을 이용하여 KOSIS DB와 행정구역DB의 연계로 시각적인 통계지도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은 통계조사의 누락·중복 방지, 합리적인 조사방문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조사용 지도제작, 조사원들의 업무가중 경감, 지자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 GIS DB와 KOSIS간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자주 찾는 인구밀도, 노인비율 등의 관심 통계 및 자료를 지역적 공간적 분석에 이용 가능하도록 GIS기술을 이용하여 지도형태로 서비스함으로써 통계이용자에게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지리정보시스템사업은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기본도 약 3,573개 읍면동과 조사구 요도 약 60,000조 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용지도 제작과, 건물, 시장, 지하상가 등 약 28,000개 건물내부 배치도를 연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사구 전개도 제작 및 통계지리정보서비스와 즐겨 찾는 통계지도 등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지리정보서비스(WEB) 구축의 성과물이 대국민서비스에 무상으로 공급되었다.

동 사업의 결과 크게 세 가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수치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통계조사용지도 제작 시 예산을 절감 하였다. 둘째, 수치지도 자료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지도의 최신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통계자료의 공간분석이 가능한 통계지도 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관적인 통계자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2) 기타 국가GIS 구축 사업

가.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사업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전국의 토지·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소유현황과 소유권 변동실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연계, 통합, 분석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체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자료는 부처별로 각각 구축되어 있어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종합적인 정보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고,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 보유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였다.

2003년 10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3년 11월에 관련 부처(행자부, 재정부, 건교부, 국세청) 회의에서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행자부에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전자정부 연차보고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2004년에 부동산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및 요구 분석을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업무재설계 방안(BPR)을 수립하고, 최근의 정보기술을 반영한 정보화전략 계획(ISP)을 제시하였다(전자정부 연차보고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부동산 관련 기관 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변환, 축적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중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의 송수신 체계를 구축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합한 자료의 오류사항(표준준수 여부, 필수항목 누락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분석의 깊이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개인별·세대별 부동산현황, 과세현황 등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생성·제공하여 수요기관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지원한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DW(Data Warehouse)를 구축하여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시·군·구 과세자료를 취합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과세자료의 취합을 위한 표준레이아웃을 정의하고, 자료의 추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또한, 지방세 과세 기초 자료의 오류정보 및 지적/건축정보와의 연계에서 부합되지 않는 정보를 추출 및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기초 자료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토지·건물·과세자료의 상호간 매핑을 통해 고유번호 및 소유자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시·군·구 업무담당자가 지속적인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 정비를 통해 실시간 오류자료의 현황 및 내역을 조회하여 원활한 데이터 정비작업을 지원한다. 부동산 통계 및 가격정보, 소유권이전 정보를 활용 지역별·소유구분별·물건종류별·지목별로 소유권 변동동향 분석 정보 등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얻어 볼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정보관리센터의 구축은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보유현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지원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공부와 과세자료간의 연계를 통해 정확한 세원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지방재정 지원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3> 부동산 정보관리 센터 구축에 따른 성과

<단위 : 백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부동산 통계자료 처리비용 절감	-	1,550	6,670	6,670
부동산 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	-	-	8,040
기초자료의 정확성에 따른 절감	-	5,400	5,400	5,400

※ 출처 :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 2007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의 정비 및 연계, 유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 종합적인 부동산정보의 생산 및 제공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정보는 공간통계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기초단위구, 전수집계구, 표본집계구 등 공간통계정보의 생성 방법에 따라 전국의 토지 및 건물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개인별 및 세대별 부동산 소요현황을 공간통계정보에 매핑하여 기업 및 학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인다.

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시군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인 관청방문, 민원행정서류 감축 등 대민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98~'03년까지 시군구 21개 업무를 정보화하였다.

본 사업은 시군구에서 운용되는 행정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의 대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통해 찾아가는 민원행정

의 기반을 수립하였다.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내적 동기 부여와 전자정부의 인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군·구 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국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표 24>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목표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표 24>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목표

단계	추진 목표
1단계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시·군·구 정보시스템 설치, LAN 및 통신망 구축 · 10개 업무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공동 활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등 10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사항 대국민 공개 서비스
2단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개 업무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 시·군·구간, 시·도 <-> 중앙부처 수평적·수직적 정보공동활용 · 신청, 고지, 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 인터넷 서비스
발전단계 (2003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과 행정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 재난/재해로부터 주요 정보 자산의 보호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고부가가치 행정 서비스 및 찾아가는 행정 구현 방안 수립

<표 25>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내용은 2003년에 완료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추진 내용이다.

<표 25>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내용

기간	경과 내용	세부 내용
1998.1 ~ 1998.5	1단계 업무 선행사업 추진	-
1998.9 ~ 1999.8	1단계 업무 개발	-
1999.12 ~ 2000.12	1단계 개발시스템 확산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등 전국개통 (2000.10)
2000.11 ~ 2001.5	2단계 업무 선행사업 추진	대 국민 여론조사(2001.3)
2001.11 ~ 2002.12	2단계 업무 개발	e-APEC 전시회(2002. 7)
2002. 7 ~ 2003.7	2단계 개발시스템 확산	시군구별·업무별 시스템 확산 및 운영 병행추진
2002.11	G4C연계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통	-
2003.9.15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시작	-
2003.9 ~ 2004년 하반기	현행 유지보수 및 발전적 유지보수 체계 운영	살아있는 시군구 시스템이 되도록 유지보수 지속 추진
2005 ~ 2007	단계별 시스템 개발추진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2003년 지역정보화추진시행 계획
 삼성SDS,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2003.9.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지하수, 상하수도, 축산업 등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정보들을 공간통계정보와 연계하여 지하수의 이용 및 개발 현황을 3D 이미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축의 종류 및 사육 규모에 관한 정보들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는 국가 통계를 구성하는 기초정보로써 공간통계정보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2. 해외 통계 관련 정보화

1) 미국

미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공간정보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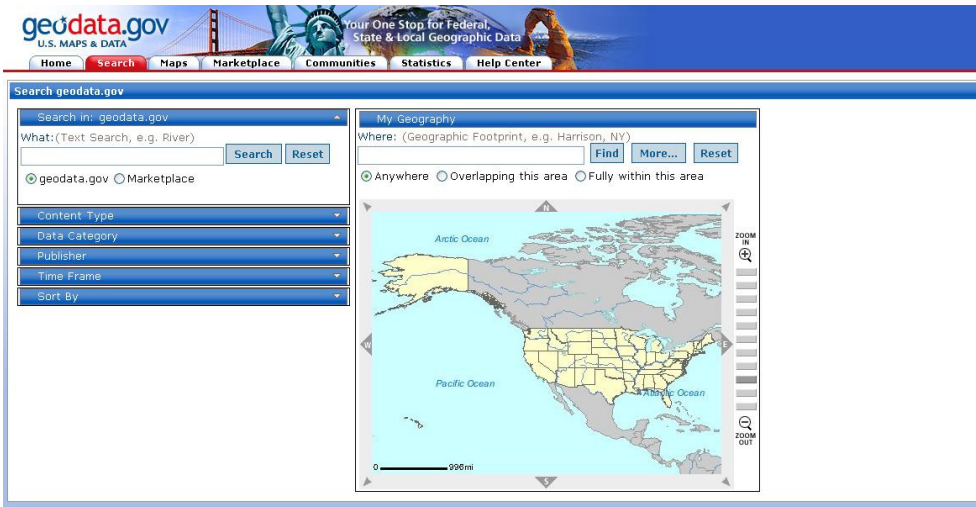
1990년 연방예산관리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회람 문서 A-16¹⁴⁾은 「국가수치지리정보자원(National Digital Spatial Information Resource, NDSIR)」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방기관들이 측량·지도 제작 및 지리정보 상호 이용을 위해 내무성 장관 하에 연방지리정보위원회(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FGDC)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1994년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지리공간데이터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정비구상」을 발표하고 NSDI 정비를 위한 기술의 표준화 및 클리어링 하우스 정비 등 정책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개정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국의 공간데이터정비의 효율화 및 상호 이용환경 정비를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공공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FGDC와의 밀접한 협력하에 GOS(Geospatial One-Stop)사업을 추진 중이며, GOS 포털사이트 '<http://geodata.gov>'를 개설하여 운용중이다. GOS사업에는 데이터정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제정사업, 데이터의 검색·활용 고도화를 위한 유통기구(Clearinghouse) 구축사업, 미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의 National Map, 통계청의 Master Address File/TIGER의 현대화작업, 국가통합토지시스템(National Integrated Lands System, NILS), 지역별 범죄분석지리정보시스템(Regional Crime Analys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RCAGIS) 등 연방차원에서 다수의 관련 사업이 수행 중이다.

14) Coordin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and Related Spatial Data Activities

<그림 38 > GOS의 검색화면



2) 캐나다

캐나다는 1960년대 CGIS(Canada GIS)를 구축하여 1970년대에 토지자원매핑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GIS를 민간에게까지 확대시켰으며, 이를 GIS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1990년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에서 접근 가능한 지리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995년 캐나다의 지리공학협회(Canadian Council on Geomatics, CCG)에서는 지리정보의 유통, 이용 촉진, 통합, 공유촉진을 위한 캐나다 공간정보기반(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CGDI)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6년 연방정부 협의체인 정부부처간협의회의(Inter-Agency Committee on Geomatics, IACG)에서는 지리정보의 이용에 관한 실무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에 CGDI 구축목표를 설정하였다.

2005년 6월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CGD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보건·공공안전·환경유지개발, 그리고 선주민에 대한 이슈 등 4가지 주요 논점에 대한 의사결정지원기능을 강조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GeoConnections

Program 2005-2010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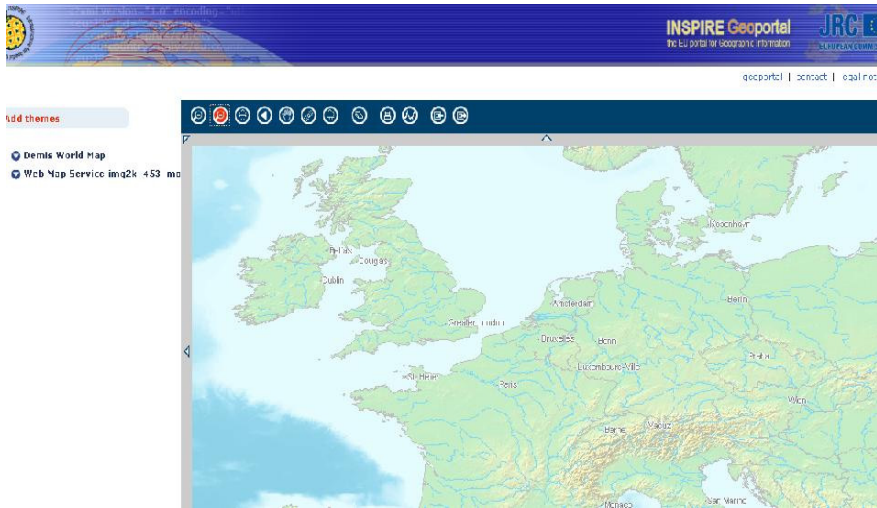
캐나다 국가GIS사업은 GeoConnections Program을 중심으로 5가지 주요 정책 하에, 7가지 프로그램에서 263개의 관련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5가지 주요 정책에는 자료공유, 기본지리정보 구축, 표준화, 협력체계, 기반환경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정책 하에 7개의 프로그램인 자료활용, 지도제작, 기본지리정보 구축, 지리정보혁신(GeoInnovations), 파트너쉽, 기술개발, 지속가능위원회 운용에 의해 구현되어 진다.

3) 유럽

범유럽 조직인 EGIS(European Conference o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는 1988년 미국의 San Antonio에서 개최된 제2회 GIS/LIS회의에 참석한 많은 유럽인들이 유럽공동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 학술적 발전의 기반을 형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게 해준 계기로 형성되었다. 제1회 EGIS를 1990년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한 이후 유럽 내 지리정보조직에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고, 나아가 지리정보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1993년에 범유럽 조직인 EUROGI(European Umbrella Organization for Geographic Information) 발족하였으며, 2004년에는 유럽 공간정보 통합이용기반(INSPIRE) 구축전략을 수립하였다.

주요사업으로 EGIS는 유럽전역의 공간데이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GOS와 유사한 사이트로 European Geo-Portal은 유럽연합의 공간정보기반인 INSPIRE 선도사업의 공간자료 이용에 대한 유럽의 인터넷 접속 포털이다. 이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유럽 Geo-Portal의 maps]와 같이 여러국가의 분산된 서버를 관리하는 통합유통체계이며, 선택된 주제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전송, 가시화, 공간정보 분석 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통합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자료검색 서비스, 기술적인 통합지원, 데이터 정책의 일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건설교통부, 2004)

〈그림 39〉 유럽 Geo-Portal의 maps



4) 일본

일본은 1995년 7월 1일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시 관계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상호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 없었던 결과, 조기의 피해상황 파악 및 지진 직후의 구조·복구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사후의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1995년 9월 관계성청의 밀접한 연계 하에 GIS의 효율적인 정비 및 상호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GIS관계성청연락회의」를 설치하였다.

일본의 국가GIS사업은 「GIS Action Program 2002-2005」를 기준으로 5가지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공간데이터의 표준화 및 정부의 출산 사용으로 행정효율화 사업, 지리정보의 전자화·유통 촉진을 위한 제도·가이드라인 정비 사업, 지리정보의 전자화 및 제공 사업, GIS의 본격적인 보급지원 사업, GIS를 활용한 행정의 효율화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실현 사업 등 5가지 정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 3 장 공간통계정보관리의 법제적 고찰

제1절 국내 공간통계정보 관련 법제 현황

통계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통계는 사회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주요통계는 국가적 필요성에 의한 생산이라는 것이 이외에도 민간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등 수요주체의 저변을 확대할 당위성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수집, 편제 및 활용하는 법적 근거로는 통계법을 필두로 하여, 각 사업내지 행정목적별 법률에 자료수집 및 작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 법률의 통계관련 핵심내용을 간략하나마 정리해보고 이러한 법률들의 상호관계 및 위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재로서의 공공통계를 수집·편제·활용하는 국가적 행위의 법적 근거는 헌법에 기초를 두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¹⁵⁾ 법치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법치행정의 원리는 헌법상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행정의 법률근거주의 혹은 법률적합주의 이념에 따라 제정된 각종 관련법들은 당연히 최상위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통계정보관리 행정 또한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구축·관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교육관련 통계는 헌법 제31조에서, 그리고 노동관련 통계는 제32조에서, 사회복지관련 통계는 제34조에서, 보건관련 통계는 제36조에서, 경제관련 통계지표는 제119조 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복잡 다양한 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는 국가정보의 인프라로서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은 필수적이다. 특히 사후 개선적 차원 또는 분석후 설명식의 대응보다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적 기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통계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통계들이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작성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산되어지며, 중요성 또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계에 대한 법적인 의미의 부여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적인 방향

15) 헌법상의 제원리인 문화국가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등에서 사회재에 해당하는 공공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국가행정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의 모색은 일부 담당기관을 제외하고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간통계에 관한 국내법체계의 법적인 검토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통계법

통계법은 총칙과 4개의 세부내용과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서는 통계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포함하고, 통계를 국가 등의 책무로 정의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4개의 세부내용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기반구축에 관한 부분으로 교육과 인력 예산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통계에서는 정기통계의 품질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통계의 작성과 보급 및 통계응답자의 의무와 보호에 관한 사항이 정의되어 있다. 특히 최근 통계법의 개정을 통해 통계작성에 관한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의무¹⁶⁾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¹⁷⁾

통계법은 제1조¹⁸⁾의 목적부분에서는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측면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계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언급하여, 정보로서의 관점, 지식으로서의 관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뢰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 활용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반 요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상의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활용의 측면과 시각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측면을 강조한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6)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의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여,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8)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3조 1항¹⁹⁾의 통계의 정의를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수량적 정보로 제한함으로써 지리적·공간적 특성을 갖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하다. 현재의 통계는 비공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공간통계와는 이론적으로 불합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통계법 정의된 통계로는 항목의 통계 외에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 분류 대상과 방법에 대한 포괄성으로 구체성 결여통계정보의 공간성을 인식하지 못한 텍스트 중심의 법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표준 분류 대상과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성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법 제22조²⁰⁾가 국제표준 분류를 이용하여 자료의 가치를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전향적이나 여전히 공간통계에 대한 분류체계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분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 통계법으로는 공간통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통계법 상에서 어느 규모의 집단 또는 대상을 중심으로 수량적 정보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주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시·군·구 통폐합과 같은 지속적인 행정구역의 개편과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자원”으로서의 통계의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계의 단위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통계치를 획득하는 단위를 사업장 단위로 할 것인지, 개인별이나 가구별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조문이 없어서 센서스 자료조사에 대한

19)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0) 제22조 (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통계법 하에서 짚어 본 공간통계정보관리의 문제를 그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통계정보 자료수집단계에서는 현재 통계청에서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기관의 협조가 미흡하며, 공간통계정보 구축단계의 경우 조사구나 기초단위구 설정 및 조사구, 기초단위구, 집계구, 도시화지역, 도시권설정 등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협조문제에 있어 지자체로부터의 안정적인 협조를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 또한 공간통계정보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에서 볼 때는 구축된 공간통계정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자료 협조체계에 근거가 미비하며, 공간통계정보 활용 및 유통단계에서는 관련 부처간의 중첩활용성 및 상호운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공간통계정보 유통에 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활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²¹⁾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통계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간통계정보의 제공, 활용 및 유통,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범용 활용이 가능한 통계지역체계를 구축하고, 동적인 콘텐츠 개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기존 공간정보관련 법제가 국가공간정보화사업의 본격 추진 이후의 디지털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2000년 1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은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GIS활용체계개발, 표준화, 유통, 인력양성 등 다양한 국가 GIS사업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가GIS정책의 기반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5조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과 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을 명문화하였다.²²⁾ 그리고 국토해양부 산하에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

21) 보고서 (2007) 106-110면

22)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²³⁾ 나아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동법 제3장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리정보DB의 구축과 관리기관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학계의 상호협력의무와 관리기관의 중복투자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었다.²⁴⁾ 동법의 제5장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과 유통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지리정보의 보급 등의 대국민서비스행정의 강화를 꾀하였다.²⁵⁾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동법 제2조의 1항²⁶⁾에 속성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으나, 법 전체에서 속성의 범위와 특성 생산주체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즉 지리정보의 핵심이 도형적 정보와 속성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항목에 지도에 딸린 속성 정보만으로 인식되어, 통계 텍스트 정보의 공간정보화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활용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간통계정보는 행정구역체계가 아닌 단위공간통계(통계지역체계)를 기반으로 공간통계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따라 생산·관리 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동법에 따르는 지리정보 범주 안에서 관리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3차 NGIS계획에 따르면 통계정보를 기본지리정보의 개념외연에 포섭시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중요한 기본지리정보개념의 기본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 그 구체적이 관리행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이외의 구체적인 별도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간통계정보는 시계열적 연속성을 지녀야 할 정보인 동시에 지속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한 정보이므로 도로와 수자원 정보와 같은 레이어 주제별 정보수준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통계의 도형적 경계는 지형지물 주제도로 정의될 수 없는 포괄적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공간통계정보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23)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8조.

24)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25)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국가공간기본법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해 온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국토공간에서 생산된 정보체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 아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대체할 법안(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이 제18대 국회에 상정되었다. 동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규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의 공간정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²⁷⁾ 제2조(정의)규정을 통하여 “공간정보” 개념의 법적 수용을 피하였고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정립수립도 시도하였다.²⁸⁾

제3조에서는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²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³⁰⁾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복투자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괄하여 예산신청을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을 일괄 편성 및 배정하도록 하였다.³¹⁾

만일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³²⁾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두고, 국토해양부에 분

27) 국가공간기본법안 제1조.

28) 국가공간기본법안 제2조.

29) 국가공간기본법안 제6조.

30) 국가공간기본법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31) 국가공간기본법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³³⁾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형·행정구역·지적 등을 기본 공간정보로 선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합DB로 관리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DB를 구축·관리하도록 하였다.³⁴⁾ 동법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향후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였다.

제1조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로서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구체적 목적에 관한 서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미래정보환경변화 대비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념의 천명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및 구체적인 목적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부각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다. 특히 제2조 제2호의 “기본공간정보”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 기초사항”이라는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하고 있는 것 또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제3차 NGIS사업에 따라 제안된 NGIS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통계”를 기본공간정보로 포함시키는 등(동개정안 제15조 8호) “포괄적인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경주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공간관련제정보를 포괄하는 입법을 무리하게 시도하기 보다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만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각 특성분야는 개별법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싶다.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정보수요자인 소비자를 면대면으로 접촉하는 선진국형 대국민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닦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3조의 경우 국민에게 공간정보활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임에도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고’ ‘어떻게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절차적인 내용 또한 결여’하고 있어 국민의 공간통계정보활용권의 근거규정이 되기에는 부족한 규정이다. 특히 제5조의 경우 국가공간정보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역할해야 할 동법을 명확한 근거없이 다른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처 각 기관의 수평적, 분권적 업무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각 분야별로 수집·구축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체적·효율적 활용·운용을 경색시킬 뿐이다. 따라서 동규정의 자구를 수정

32) 국가공간기본법안 제9조.

33) 국가공간기본법안 제10조.

34) 국가공간기본법안 제14조 및 제15조.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옳다. 예컨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을 적용한다와 같이 규정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야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제7조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동법 제10조 1호 및 2호)이므로 체계정합성의 원칙상 제7조 ②항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고치거나 아니면 ②항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나아가 제③항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는 등 일괄요청예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이는 자칫 타기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관여·간섭 규정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조항이라 본다. 제16조에 규정된 중복투자의 방지는 예산편성의 간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간 업무응원과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행정부내의 기능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14조의 경우 그 주목적이 기본공간정보를 통합DB로 하여 관리한다는 것인데 반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14조 ③항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통합DB로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과연 실질적으로 통합DB의 관리가 효율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합DB의 관리임무를 형식적으로 부여한 동 규정의 재검토를 요하고 중앙부처와 관리기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의 공간정보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역할을 설정하는 입법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4조 공간정보의 활용에 관한 규정은 매우 미흡하여 공간정보의 공동이용, 이용요건, 보급 및 확산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 공간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25조의 경우 어떤 공간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 예컨대, 최소한 “국민의 실생활의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기준이 적시되었어야 한다. 나아가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취급과 관리 및 이에 대한 제한적 접근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 또한 필요하며 이러한 규정 없이 비공개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원 접근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공간기본법안을 통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과학적 관리·운용 및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향상과 행정능률성 제고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이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및 국가통계작성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선진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간통계관련 법제화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각국의 공간통계관련 법률의 제정목적³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의 통계제도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로 각 기관별 업무의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유사 통계의 중복작성이나 통계기준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연방 대통령실 행정관리에산처의 통계정책담당관실에서 통계예산을 통제함으로써 중복조사에 의한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막고, 통계작성방법 등에 관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연방의 주요 통계활동 및 예산은 상무부의 센서스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농무부의 국립농업

35) 예컨대 공간통계정보 활용 및 서비스제공에 주된 목적이 있는지 혹은 국가의 공간통계정보구축 사업의 추진에 주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통계서비스,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통계센터 등의 4개 기관에 집중되고 있으며, 공간통계정보활용에 관한 미연방정부의 법적 근거로는 미 연방법 제13장 센서스법, 1994년 센서스주소록개선법 및 지리정보획득 및 접근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12906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행정명령 12906은 미국의 통계작성과 관련한 지리정보 구축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1994년 클린턴 행정부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최근 2003년에 개정된 바 있는데, “지리정보획득 및 접근조정: 국가공간정보기반”이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과 접근(정보의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공간정보기반, 지형공간정보, 국가지형공간정보 유통기구에 대한 정의와 유통기구의 전반적 역할 및 책임과 각 기관의 지형공간정보가 어떻게 유통기구에 첨가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형공간정보 인벤토리 개발, 메타데이터 문서작성, 메타데이터 및 지형공간정보제공, 유통기구의 이용, 추진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과 지리공간정보 공유촉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서스업무와 관련해서는 미연방법 제13조와 1994년 센서스 주소록개선법이 주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동 법은 주정부, 지방정부가 개인거소나 사업자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통계에 필수적인 주소목록(통계개별주소목록)의 검토, 개선,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개인주소파일개발과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통계정보의 제공시 연방법 제13조의 보안유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센서스 주소록개선법은 특히 세부적으로 상무장관은 주정부, 지방정부가 국가주소파일개발을 위해 제출해야 할 주소정보의 내용과 구조에 관련된 표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 등이 인구조사주소정보 목록접근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과 정보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집중형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핵심에 GSS (Governmental Statistical Service)가 있으며 이는 50개의 기관에 통계책임관으로 구성된 정책관리위원회³⁶⁾와 4개의 분과위원회³⁷⁾가 설치되어 이를 통해 통계관련활동을 조정한다.³⁸⁾ 영국의 통계처리 관련기관은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핵심기관이며, 통계청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영국 센서스법(Census Act)과 국가통계실행지침(The National Statistics Code of Practice)인 이 있다. 영국의 센서스 법률(Census Act)은 1920년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영국의 센서스 실시 및 통계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UK Census Act 1920, c. 41, UK Census(Amendment) Act 2000, c. 24).

영국의 센서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부여규정을 필두로 하여 센서스를 수행하기 위한 호적 본서 장관이 의무와 비용을 위한 규정, 센서스를 실행절차에 관한 규정, 센서스 조사 간격 사이의 통계 자료 준비에 관한 규정, 지역 센서스에 관련된 규정 및 상기 규정 위반과 개인 기밀 유출시 형벌 규정 등이다. 나아가 국가통계실행지침(The National Statistics Code of Practice)은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함으로써 정보 제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유용한 통계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ONS가 담당하고 있다³⁹⁾. 여기서는 통계자료 생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들에 관한 처리와 관리, 자료 개정, 이것의 통계적 통합 방법, 자료 접근과 기밀 보장 등에 관한 원리와 지침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을 이를 위한 별도의 데이터 접근 가이드(National Statistics : A Guide to data Access)를 제공하고 있다.⁴⁰⁾ 국가통계실행지침의 기본 원리는 적절성, 완전성, 질적 수준, 접근성,

36) 의장은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장이 맡는다.

37) 정보시스템, 자료배포, 경제통계, 사회통계 등의 4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38) 한국개발연구원, 2004, p.188.

39) National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s Code of Practice, 2004.

40) National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s: A Guide to Data Access", 2005.

기밀보장, 제공자와 사용자의 균형, 통합누적 및 혁신을 통한 강화, 효율성과 공정성 등으로 이를 통하여 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⁴¹⁾.

3. 캐나다

캐나다의 통계제도는 국가통계의 대부분을 중앙통계기관인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관장하는 완전 집중형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산업부(Industry Canada)의 산하기관으로 캐나다 통계법에 의해서 국가통계정보의 대부분을 조사, 수집, 분석, 요약 및 출간하도록 되어 있다.(신중식, 1999: p.51) 캐나다 통계청의 업무활동은 국제·국내경제통계(International and Domestic Economic Statistics), 사회경제통계(Socio-economic Statistics), 센서스 및 사회통계(Census and Social Statistics), 공공통계(Institutions Statistics), 기술적 하부조직(Technical Infrastructure), 조직관리서비스(Corporate Management Service)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앞의 4가지 활동은 통계청에서 결과물로 생산하는 통계정보의 계획,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것이다. 기술적 하부조직활동은 조사방법론, 설문지 디자인, 분류체계, 자료수집 및 정보분석 등 모든 통계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정통계의 생산 및 서비스, 연구분석, 마케팅 및 정보서비스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마지막의 조직관리 서비스 활동은 통계청의 행정기획, 인사관리, 재정, 및 프로그램 평가 및 내부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지원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주입법이 바로 캐나다 통계법(Statistics Act)인바, 동법에서 “캐나다 통계청은 국민들의 상업, 산업, 금융, 사회, 경제 및 일반 활동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축적·분석·귀납적 결론 도출, 그리고 발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계청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캐나다 통계청은 모든 수준의 정부부처, 기업체, 단체 및 개인 보존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소득세 기록포함)하며, 둘째, 응답자의 응답의무, 셋째, 통계청의 일관성 있는 기준의 제정 의무, 넷째, 연방 및 주 정부부처 통계활동 조정임무, 다섯째,

41) National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s Code of Practice", 2002.

개별정보의 비밀보호 의무, 여섯째, 통계법 규율정보의 면책특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어 캐나다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국가통계정보의 조사, 수집, 분석, 요약 및 출간, 둘째, 이를 위한 기타 정부부처와의 협력, 셋째, 통계법에 의해 규정된 인구센서스와 농업센서스의 수행, 넷째, 정부부처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중복회피를 위한 조정기능, 다섯째, 국가 및 지방관련 통계의 개발 및 통계의 통합을 위한 조정계획 수립 등이다.

4. 일본

일본은 국가의 행정기관들이 각각 소관행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이며 중앙통계기관인 총무성 통계국이 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통계기준부)을 수행하면서 國勢調査(인구센서스) 등 기초통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일본 중앙정부의 통계행정기구인 통계작성을 주 업무로 하는 중앙기구, 지방통계기구, 각 정부부처로써 일반 행정업무와 통계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계에 관련한 일본의 주요 법·제도는 통계법(1947), 통계보고조정법(1952),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통계조사관계문서의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2001) 등이다.

일본의 통계법은 194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통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통계의 진실성의 확보, 통계조사의 중복 제거, 통계체계의 정비 및 통계제도의 개선발달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지정통계⁴²⁾의 지정·승인·작성에 관한 사항(지정통계, 법 제2조),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공표에 관한 사항(법, 제18), 지정통계조사의 조사대상과 의무(법 제5조),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법 제19조), 통계조사대상자의 개별정보 보호의무(법 제13조) 등이다. 통계보고조정법(1952년)은 국민의 통계보고부담의 경감과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총무성 대신이 국가의 행정기관이 행하는 통계보고의 징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에 대한 사항, 즉 승인통계조사의 승인과 관련된 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

42)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국가의 기본정책결정에 필요한 통계로서 특히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통계를 말한다.

며, 승인의 기준은 당해 통계보고의 징집이 통계 기술적으로 볼 때 합리적일 것, 당해 통계가 이미 승인된 여타 통계와 중복이 없을 것 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통계조사관계문서의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2001년)은 행정정보공개법의 시행에 수반하여 행정기구가 보유하는 통계조사관계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통계조사의 조사표, 집계결과, 조사대상자 명부 등의 보관과 공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5.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선진각국들은 이러한 공간통계와 관련법제화를 기반으로 하여 특히 미국의 경우 지형지물 및 센서스의 지역경계를 활용한 새로운 통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센서스 지리정보(Census Geography)’라는 웹서비스를 통해 센서스 자료를 지리정보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총무성 통계국이 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활용을 위한 통계GIS플라자를 구축하여 국세조사 및 사업소, 배경지도 기반의 기업 통계조사 데이터 제공 등 지리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실용성 측면에서 공간통계정보활용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선진각국의 법제화의 추진배경 및 목표를 보면 대내적으로는 공간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의사결정 지원 등 고도화된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간통계정보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이미 기초적인 공간정보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범세계적인 정보활용이나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랄 수 있다. 또한 위 국가들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의 구축을 담당하는 정부의 부처와 전략계획을 추진하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 및 실무추진을 담당하는 실무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민간의 역할의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역할에 있어서 정부중심의 집중형인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의 역할강화는 민간부문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와 함께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공공과 민간의 추진영역을 뚜렷하게 설정하여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³⁾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에서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 추진전략수립시 참고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과제

1.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배경 및 필요성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국가통계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의 중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통계치가 예측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통계는 그 가공을 통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고도의 디지털사회의 입지를 굳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인터넷 공간상의 통계활용이 SGIS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공간통계정보는 기존의 수량적 통계가 가져다주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또 일거에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주요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기존의 법률 및 법률안만으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공간통계정보의 응용 및 새로운 가치창출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음을 앞서 이미 보았다. 따라서 공간과 관련한 각종 관련부처(국토해양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복지부 등) 뿐 아니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계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관련정보의 포괄적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화의 요청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마련을 통하여 공간통계정보라는 통일적 체계 속에서 정보관리가 효

43) 김태진, 박종택, 국가GIS 법·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GIS Association of Korea, Vol. 14, No. 2), July 2006, pp. 197-98.

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펴 본대로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으로는 토지이용(규제), 측량, 지적 등 국토해양부 업무 관련된 기본적인 지리정보로서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⁴⁴⁾ 비록 국가공간정보법안이 지리정보체계를 공간정보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안의 체계 속에서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수집, 생산, 가공하는 데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⁴⁵⁾ 이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관한 유관 부처(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및 유관 시스템간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통계정보화 하는 것이 시급하며 공간정보와 통계정보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은 공간통계정보관리의 법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즉 공간통계정보는 통합정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생산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 법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공간통계정보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노정되므로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기반추진이 절실한 것이다.

2.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규범적 의미

통계법상의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법 제3조 1.)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간성을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전제로 한 의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단순해석 적용하기에는 공간통계정보가 갖는 특수성이 매우 커서[표준분류대상(법 제22조)에서도 공간통계에 대한 분류는 포함되어 있지 못함] 만일 통계법을 통하여 규율하려고 한다면, 공간통계의 개념정의부터 시작해서 대폭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주체 선정·활용·유통·상용(商用)·유상서비스제공 등과 관련한 조항을 대폭 삽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44) 공간정보법이 표준체계를 구축한다고는 하지만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국가 전체적인 공간정보를 통계화하여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공간통계정보개념수립이 필수적 전제가 되리라 본다.

45) 국토공간기본법안 하에서는 핵심적인 공간정보와 행정통계정보 공급이 제한적이므로, 서비스용 콘텐츠가 부족하게 되며, 이러한 체계로서는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통계법, 국토지리정보법 등등 기타 법률의 해석을 통해 확대적용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⁴⁶⁾ 또한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유지·보수·활용·유통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Segment방식의 공간통계정보법제화가 요청된다. 특히 공간통계정보가 일반적인 정보와 구분되는 특성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객체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각각의 객체가 가지는 위치(좌표)정보를 기반으로 주변과의 관계인 위상관계로 설명된다.⁴⁷⁾ 따라서 공간통계정보의 구성요소상의 특징은 지리적 형상정보 + 속성정보(통계) + 위치정보이며 이러한 정보의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은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공간통계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영역에 대해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Segment방식이 적합하리라 본다.⁴⁸⁾

3.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이념의 실현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통계자료는 실제 생활에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고 나아가 체감시사실과 너무나 다른 통계지표를 믿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한다. 결국 통계자료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용성 체감지수는 한 없이 낮다는 것이다. 즉 실용적 가치가 없는 통계자료만이 넘친다

46) 예컨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vs 학교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와 같다.

47) 사공호상 외 3인 공저,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연구 (국토연구원, 2007), p.27.

48) 예: 개인정보의 경우 ①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의해 ② 금융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③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 및 ④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는 뜻이다.⁴⁹⁾ 여기서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공간통계정보의 특수성에 근거한 공간통계정보의 관리, 활용을 통하여 지리적 정보와 통계정보의 시각적 결합⁵⁰⁾을 통해 보다 간명하게 통계자료를 해독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공간통계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고도화 실현으로 궁극적인 대국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된다. 현 통계법이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생산자 혹은 정보제공자 중심의 법제⁵¹⁾라면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제공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통계관리의 법제화는 지식서비스산업화 시대의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다.⁵²⁾

2) 실효적·실질적 표준화의 구현

공간통계정보DB를 다양한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의 업무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통계정보DB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며 통계청은 센서스지도, 거처 및 사업장 포인트DB, 기초단위 구 및 집계구역, 행정구역 경계 등 SGIS인프라 구축시 타 부처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한편 공간통계정보DB를 생산·관리하고 유통하는 정부의 각 유관기관들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생산·관리·유통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감독·조정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⁵³⁾ 또한 분산형 통계제도

49) 2005년 12월 (주)마이스터컨설팅의 “통계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 파악의 한 내용, 통계청 정책자료집, 2007, p.20.

50) 예컨대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08년 버,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는 발버, 논벼, 고추 등 수확품종별 재배면적을 “시도별”로 작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여러 통계표 보다는 통계지리정보로 처리하면 더욱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5,7,9,11월 연 5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분포를 지리공간정보에 결합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만들면 여러 도표를 비교분석·고찰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리라 본다.

51) 개정 통계법의 핵심이 통계정보의 품질관리와 유관기관의 행정자료의 제공 및 범시행령에 규정된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시행령 제33조, 제34조 등) 시행에 있으므로 이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이의 활용 촉진에 관한 법제로 변경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52) 살아있는 통계, 변화하는 통계청(이하 “통계청 정책자료집”: 2007), p.256.

53) 2007 통계청 정책자료집 p. 266-267.

하에서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은 철저하게 각 부처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계청은 국가통계 승인과정을 통해서 각 부처가 개발·개선하는 통계가 기존 통계와 중복되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부처의 통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통계의 절대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⁵⁴⁾ 이러한 점은 공간통계 정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공간통계정보법제를 입안하여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생성된 공간통계정보DB를 통합하고 표준적인 DB구축방법론을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용활용가능한 공간통계지역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노정된다. 여기에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민간부분의 공간통계정보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⁵⁵⁾

3) 지역통계 발전계획을 통한 지방자치이념의 구현

지역금융, 지역산업, 지역잠재 인프라 등에 관한 통계작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니 동지역에 소재하는 중앙기관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기본통계 중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나타내주는 통계인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보여주는 가계조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보여주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범죄발생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지역주민의 질병상태를 보여주는 ‘사망원인통계’·‘국민건강 및 영양조사’·‘환자조사’ 및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부동산, 임대, 정보처리, 연구개발, 비즈니스, 보건, 오락,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업활동지수 등의 전국통계를 지역까지 확대하여 작성하면서 지리정보시스템과 결합함으로써 지역별 통계의 발전에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공조내지 협력 혹은 분업관계의 구축을 위

54) 2007 통계청 정책자료집 p.33-34.

55) 통계정보작성의 분권형 국가(우리나라·일본·대만·영국·미국)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한 통계의 정비/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실시와 기반정비/조사결과와 이용확대/국제협력 추진이라고 하는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에 따라 해당국의 통계청 등 주무부처에 통계작성·보급·유통 인력 양성 등 관련기능을 집중시켜 분산형 통계를 점진적으로 집중형 통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한 특별법적 근거마련이 요청된다.

개정 통계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요구권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과의 협력적 공조 하에 통계작성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통계작성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통계의 작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지방통계청을 포함한 중앙기관의 지역본부와의 공조 내지 협력 또는 분업의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중앙과 지방간 마디 없는 행정의 구현

공간통계정보관리법제화를 통하여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수량적·평면적 통계정보를 고품질의 3D 공간통계정보로 전환·관리하는 기반을 제공하고⁵⁶⁾ 이어 다양한 공간통계정보의 조성·관리·제공행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통계행정의 대민간 연계성을 높이며 통합·표준화된 공간통계정보DB의 구축·활용을 통하여 정부 각 부처 간의 공간통계정보의 중첩활용성 혹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동법제화를 통하여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적 서비스제공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행정의 생산성 및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제도입을 통하여 공간통계정보의 기반조성·생산·관리·유통·활용체계의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러한 안정적·효율적·과학적인 국가통계행정의 수행을 통하여 국민생활편의를 증대시키며 국민경제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56)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NGIS법)에 따라 국가 GIS의 효과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사업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정보는 여러 종류의 지리정보를 도형적 또는 공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중첩시킬 수 있는 지리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NGIS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¹⁾에 그 정의의 규정이 있다. 더욱이 제3차 NGIS사업계획은 통계정보를 기본지리정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기본지리정보 항목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공간정보로서의 통계정보(공간통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기본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주어진 일은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 법제를 통하여 명백히 하여 법치행정·투명행정의 이념을 공간통계관리행정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제4절 입법체계 분석

1. 공간통계정보법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이며 법령의 흠결시 보완하는 원리가 되고, 하위 법령의 입법 및 개정시 한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공간통계정보법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고 나아가 헌법의 구체화된 법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명제이다.

공간통계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국가정책 수립의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정보 격차로부터 실질적인 평등권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헌법상 원리인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가 공간통계정보의 지적재산 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공간통계정보법은 헌법의 하위법령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며 헌법의 수권범위 내 '헌법실현'을 위해 입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적 원리 실현과 공간통계정보

1) 국민의 권리 실현

개인이 정보 활용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실현에 관련된 정보에 용이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처분

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한다.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위와 같이 개인의 정보주체로서의 지위를 효율적·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개인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투입하여 참여하고, 이로써 대의제적 의사결정을 통제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⁵⁷⁾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개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현하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점에서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법치국가의 실현에 기여하기도 한다.⁵⁸⁾ 오늘날 국가의 각종 복지실현을 위한 조치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취해지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직권에 의하여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보호를 행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는 신청에 의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예이다.⁵⁹⁾

그런데,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 혹은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법률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직권에 의한 보호를 충실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신청주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 개인이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기여하는 공간통계정보의 공유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⁶⁰⁾. 특히, 복지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취득의 기회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더 간편한 절차에 따른 포괄적인 정보제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사회적 약자의 정보보호를 통한 권리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위와 같이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헌법의 구조적 원리를 실현하

57) 민주주의적 관련성.

58) 법치국가적 관련성.

5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60) 복지국가적 관련성.

고, 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 평등권 제고

공간통계정보가 공동으로 활용되면 개인의 평등권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제고될 수 있다.

첫째, 상대적인 차원에서 공간통계정보가 여러 행정 사안에서 표준화되어 수집되고 통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사안에 따라 별개의 공간통계정보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안에 따른 그리고 개인에 따른 차별취급이 방지될 수 있다.

둘째,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절대적 차원에서의 평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충분히 수집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공간통계정보가 공동으로 활용됨으로써 하나의 행정기관에 접근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통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그 결과 집행의 흠결을 방지하여 입법 목적을 평등하게 현실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존중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및 이용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의 정보의 주체로서의 위치에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인격을 예단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및 공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은 자신의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국가 기관이 어떠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이용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른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정보기능은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의하여 보호된다⁶¹⁾.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하여 특히, 사생활 및 인격적 관련성이 밀접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집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다음의 두 가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의 단면 중, 사회적 관련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사생활 및 인격적 관련성이 큰 정보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⁶²⁾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은 공동 이용될 수 없다.

둘째, 일정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정보수집 자체가 개인에게 인격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 정보의 수집은 금지된다. 이 경우 국가의 정보에의 접근 자체가 개인에게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이때 공간통계정보는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의 인격상을 알거나 혹은 추단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이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반적인 국가의 정보기능에 비해서 특히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자기결정권은 민감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가 포괄적으로 노출되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물질적·정신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1) 한국전산원. 2005.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전략연구」.

6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4) 국가경제 향상 제고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경제주의에 부분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⁶³⁾. 이것은 과거 근대화 정책 시기의 정부주도적인 경제개발에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이 과거에 경험했던 경제개발 시기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면,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국가, 시장, 그리고 국민이 포괄적으로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 향상의 중요한 기제라 할 수 있다. 국가는 공간통계정보를 구축·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진보된 정책 의사결정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시장은 정보 활용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효율적·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익을 투입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의 경우에는 공간통계정보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3. 관련 법률의 분석

1) 관련 법률 분석의 목적

공간통계정보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법령들과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공간통계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이라도 하더라도 상호 충돌되는 부분은 사전에 조율해야 하며, 서로 협조해야 할 부분과 상위 법령으로 준수해야 할 규범들이 대한 위상이 정립되어야 법조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통계법을 비롯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 기본법, 지적법 측량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 자원관리법, 저작권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을 검토할 것이다.

63)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4. 법이론적 분석에 따른 공간통계정보법의 입법체계 분석

법률 제정에 있어 입법체계 분석은 신설되는 법률의 기존 법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타법과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입법의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행정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통계 정보법의 입법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법의 위치를 정립하고 관리 체계에 관해 법적 근거가 될 상위법을 파악하고 구체화를 위한 하위규범을 체계화하여 법안의 필요성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통계정보는 국가 인프라로서 전자정부 추진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정보 공동 활용의 대상이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정보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통계법은 물론이고 ‘측량법/지적법’, ‘수로업무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으로부터 생산된 정보의 통합이 가능하며, 활용 단계에서도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건축법/도로법’, ‘전자정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법률의 입법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표26>⁶⁴⁾

타법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법률 위상 정립이 필요한데 통계에 관해서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64) 통계청(2007), 145면.

<표 26> 국내 공간통계정보 관련법과의 관계

법률	목적 및 성격	본 법과의 관계
통계법	일반 통계관련 근거법	모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 등에관한법률	지리정보 생산 근거법	상호보완관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대상 활용법	활용-대상관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정보통신, 응용분야 활성화	별개의 법률 -위치정보 공통점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역정보화, 기관정보화 촉진	배경이 되는 법
지적법	지적측량 등 생산 근거법	정보생산적 측면 공통점 존재
측량법	지리정보 생산 근거법	상호보완관계
전자정부법	정보통신 업무활용법	전자정부의 도구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정보통신 정보활용법	활용시 참고할 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지식정보 향상관련 법	지식관련 참고법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보호법	자료활용관점 참고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 관련 규제제한 법	활용-대상관계

제 4 장 입법 추진 전략

제1절 법률안의 방향

1.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성격

공간통계정보법(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간통계정보법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앞서 추진방향에서 명시하였듯이 산재한 공간통계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통계정보법(안)은 통계정보 생산주체가 지속적으로 공간통계정보를 생산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공간통계정보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통계법을 기본적 위상으로 전제하고 그 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실시법적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

정리하면, 공간통계정보법(안)은 구체적 정책집행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규정하여 정책법적 성격을 지향하고, 공간통계정보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특성을 가능한 상세히 반영하여 기술법적 성격을 지향하며 통계법을 기본법적 위상으로 전제하고 그 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법적 성격을 지향한다. 이로써 공간통계정보법(안)은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이 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간통계정보법(안)의 목적

공간통계정보 생산, 운영, 보급 및 활용은 국가, 시장 나아가 국민이 포괄적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 향상의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국가는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진보된 정책 의사결정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은 정보 활용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효율적·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익을 투입하여 참여가능 할 것이다. 국민의 경우 공간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통계정보는 국가정책 수립의 효율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국민경제활동에의 활용 증진 등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즉, 공간통계정보는 국가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를 실현하고, 다른 법률에서 추구하는 국가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앞서 명시한 기술법적 측면에서의 공간통계정보는 통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계관리 관점에서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즉, 기존의 행정경계 기반의 통계정보를 보다 세분화된 단위의 경계를 이용하여 정보의 가시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지식정보를 생산, 운영, 보급 및 활용에 총체적인 법률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법률안의 쟁점

1) 공간통계정보의 개념 정립

공간통계정보라는 용어는 기존 법률에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에 해당한다. 게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지리학의 발전적 모습의 일환으로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안이 2008년 12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률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면, 통계 중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것에 주목, 공간정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간에 관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이후 관련 ‘정보자원’ 과 ‘정보시스템’ 에 관한 규율을 이 법률안의 핵심적 범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간통계정보, 정보자원과 정보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통계정보에 해당하므로 기존 통계법은 물론이고, 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지적법, 측량법, 수로측량법을 비롯하여 정보의 활용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전자정부법 등과 상호 관계가 문제되고 법률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조화로운 법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 정립하고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공간통계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기술 기준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분류체계는 통계를 담는 공간의 다양한 그릇을 의미하며 생산과 이용 모두에 있어서 진정한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공간통계 정보시스템적 이용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간통계 정보서비스의 성패는 자료의 생산부터 이용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기술기준에서는 통계작성의 방식, 형태, 분류체계, 분석방법, 유통방법, 적용기술 등에 관하여 세밀한 기준을 제시토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표준화의 일반적 책무는 범정부적으로 부여하여 기존 정책과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4) 타부처와의 소통 협력 기반 마련

공간통계정보는 정보의 생성과 활용 양면에서 모두 유관 행정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과 현장성, 실무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 지자체 등이 충분히 의견 제시하

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생성된 공간통계정보를 모든 참여기관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정보의 보호와 정책품질에 관한 책임

이제까지 통계 정보는 신뢰도 높은 정보의 생성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반면 공간통계정보법안은 빠른 정보 갱신과 활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 창의적인 통계정책의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동시에 통계정보의 품질에 관하여는 통상의 업무상 주의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을 완화하여 적극적 정책추진을 옹호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2절 입법 환경의 성숙

1. 헌법적 당위성

1) 지식정보사회 헌법적 요청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함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공간통계정보의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범적인 근거는 헌법적 요청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정보복지증진권

우리 헌법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⁶⁵⁾ 기본권으로 성격을 지닌 권리는 국가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복지증진 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을 통하여 공간통계정보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 알권리의 보장

알권리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은 이미 기본권목록에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국민은 공간통계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국민의 접근권의 보장과 동 정보의 유통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본권 최대보호의무를 지닌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4)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의 실현

이와 같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통하여 개인은 공간통계의 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삶과 복지가 증진되어 행복추구권 또한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보호규정을 통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활용증진을 통한 국민의 정보복지의 상향적 평등실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책무를 띤다.

5)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의무

우리 헌법이 비록 농경사회시대에 성안된 것이어서 아직 정보자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20조 제2항의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의무 규정으로부터 공간통계정보라는 중요한 정보자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를 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중요한 정보자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보호 및 균형개발과 그 보급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웹 2.0 시대에 있어서 양방향간의 소통구조를 지닌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은

65)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문화국가원리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사명이며 따라서 공간통계정보체계를 실시간적·쌍방 소통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규범적 근거마련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헌법상의 제규정으로부터 공간통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활용토록 하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실무적 당위성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통계와 공간의 정보(시스템)적 결합은 21세기형 지식창출의 필수적 요청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 행정체계와 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최우선 과제이다. 법치 행정 국가에서 정책이 현실화되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공간통계정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렵다. 시스템의 부재가 발생하면 공간통계정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어 진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공간통계정보의 일부를 사용한 ‘통계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통계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의 근거법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2) 중앙기관 지자체 간의 행정협력 근거 마련

조사구와 기초 단위구 설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 기관은 물론이고 최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요청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최근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 수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구청 내에 설치되어있던 통계과마저도 폐지되는 추세라는 점이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

공간통계정보의 개념과 법률 목적을 고려할 때 유관 기관의 행정협력이 없다면 그 의의는 대폭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지속적 통계 수집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정보자원간의 연계를 위한 행정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 관련 정보자원간의 연계

공간 통계 정보 시스템이 기대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좋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양질의 지식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민관에서 수집 관리 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간통계정보가 호환되어 수집 가공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통계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자원간의 연계가 중요함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센서스, 산업통계 등 주요통계정보와 공간정보 연계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호환 가능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활용이 필요하고 하나의 통일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는바 공간통계정보 분야에서 사용할 단일한 단위공간통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⁶⁶⁾

4) 안정적 예산의 확보

공간통계정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며 현재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만을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다. 또한 구축한 DB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는 예산이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실현이

66) 법률에 의해서 동일 단면에서 정리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선별하고 표준화된 통계 분류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연동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규범적 강제를 위한 표준 결정에 있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과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 둘 필요가 크다.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은 매해 예산정치 소송돌이 속에서 그 지속성을 위협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매우 어렵다.

법적인 근거를 가진 사업은 예산의 확보와 재정의 안정성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바 공간통계정보의 발전적 관리를 위해서도 근거 법률의 마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성과

2007년 통계법의 개정으로 통계청은 정보사회의 공공정보제공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위상에 비해 통계청 업무에 관한 집행법적 근거는 추상적이거나 체계성 미흡하다. 현행 통계법으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는바, 공간정보기반의 서비스 시스템을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행정절차와 체계 관련 정보의 보호 등 구체적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계정보서비스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21세기형인데 행정체제와 제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19세기형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제는 통계청과 현장 및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체계로 발전할 법적 기반 형성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 내부적으로도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입법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상당 부분 이루어 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사업체 기초통계 GIS DB를 구축하고 2006년에는 대전에서 통계내비게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PR 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수년전부터 준비해 왔다. 2007년 들어서는 공간통계지식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통계정보 근거법제 초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등 공간통계정보법안을 입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연구와 의견 수렴을 하였고, 2008년에는 본격적으로 공간통계정보법 제정추진 공론화를 위한 학술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⁶⁷⁾

제3절 관련 법률과의 조화 모색

1. 관련 법률의 검토

1) 직접관련법률

공간통계정보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제로는 “통계법”, 현행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와 “국가공간기본법안” 등이 있다. 이들과 공간통계정보법(안)과 더불어 모두 넓은 의미에서 공간통계정보를 다루고 있다. 때문에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이들과의 조화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상호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통계법은 공간통계정보법(안)의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바 공간통계정보법(안)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고,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과 국가공간기본법안과는 이념적으로 유사한 영역이 중첩되나 규율 대상이 다른 법률을 담고 있기에 상충하는 법률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로 위상 정립이 가능한 관계라 할 수 있다.

2) 간접관련법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정보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공간통계정보관리법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물론이고 전자정부법,⁶⁷⁾ 등의 기본이념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으로부터 생산된 정보의 통합 활용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공간통계정보의 활용 단계에서도 ‘국

67) 2008년 10월에는 한국행정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공간통계정보법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공간통계정보정책의 재조명’을 주제로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68) 국가통계정보는 국가 인프라로서 전자정부 추진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정보 공동 활용의 대상이다. 정보화촉진법 제5조 제3항 및 전자정부법 제44조의 2 참조.

토기본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을 통하여 유관부처는 메타정보로서의 속성을 가진 공간통계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각종 행정 분야에서 synergy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공간통계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연관된 법률들은 메타정보로서의 공간통계정보의 공동 활용성 증진을 꾀할 수 있는 각종 규범적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부처들간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조와 협력·업무지원 및 응원체계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법률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최근 공간통계정보 관련 입법 추진 상황

정부는 2004년 이후 매년 약 50%의 성장을 지속하여 그 규모가 2007년 약 ·1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현재의 성장추세가 지속된다면 2012년 11조원 규모로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현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지형·지적·수로측량을 일원화하기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입법추진을 위해서는 모법으로 설정된 통계법과의 위상 정립 뿐 아니라, 사전 준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의욕적으로 입법 추진중인 GIS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3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그림 40>국가공간정보 관련법 체계도⁶⁹⁾



69) 국회 공간통계산업진흥법 검토보고서(2008), 36면.

2. 국토 해양부 추진 3법과의 위상 정립

1) 측량통합법과의 관계

(1) 법률안 추진 개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아래 공간정보 관련 2개의 법률과 달리 정부의 제출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본 법안은 공간정보 기본법, 산업진흥법의 기본이 되는 '정보의 수집원'을 관리하는 법률안이다.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 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표 27> 현행 측량제도

구 분	주무부처	범 위
측지측량 (측량법, 1961 제정)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舊) 건교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u>연안해역의 측량과</u>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
지적측량 (지적법, 1950 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제도과 (舊) 행자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에 <u>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u>
수로측량 (수로업무법, 1961 제정)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舊) 해수부)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地磁氣)·중력·지형·지질 등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하며, <u>연안의 자연환경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측량</u> 을 포함

(2)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내용

제정안이 통합법을 통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현행 측량제도는 측지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으로 3원화되어 각각 개별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어 측량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생산된 정보와 기술의 호환과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종전에는 재래식 측량 장비의 사용으로 육지와 해상간에 서로 다른 측량 기준을 정하여 사용해 왔으나, 신장비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일된 측량기준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이 가능해지는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통합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정안을 통한 측량체계의 일원화로 중복측량을 배제하고 육지와 해양을 연계한 국가공간정보의 조기구축으로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국내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⁷⁰⁾

〈표 28〉 기존 3개 법률과 통합법의 목적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로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에 이 용하게 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로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 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0) 주영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6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J0E8J1W0Z2G7A1S9E4K6F2Q4A1G7Y7

(3) 공간통계정보법(안)과의 관계

제정안이 3개 법률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측량기준점의 통일 등 일부 제도의 변화 외에는 현행 3개 법률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여 실체적인 규율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다.

공간통계정보법(안)과는 상충되는 영역이 부각되지 않는바, 입법과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과의 관계

(1) 법률안 추진 개요

현행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은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지리정보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 등 부처간 상호 협력·조정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이러한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공간정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간정보 관련 예산의 일괄 신청 및 관련 사업의 조정권 등 강력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정보목록의 대국민 공개 등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안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지리정보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 등 부처간 상호 협력·조정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간정보에 관한 입법이 별도로 추진

된 것이다.

2008.8.18. 권택기 의원 등 29인 제안.⁷¹⁾ (의안번호 1800646)

2008.8.29. 국토해양위원회 회부

2008. 11.20. 위원회 상정

2008.11.25.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2)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의원 발의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 중이며 2008.11.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본 법안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법제의 근간이 될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계하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안된 것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공간정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간정보 관련 예산의 일괄 신청 및 관련 사업의 조정권 등 강력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정보목록의 대국민 공개 등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3) 공간통계정보법(안)과의 관계

국가공간관련3법 중 체계 유사도에 있어 공간통계정보법(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이다. 특히 ‘공간’이라는 용어가 주는 혼동으로 인해 양법의 상충 가능성이 높게 제기될 우려가 있다. 공간통계라는 용어는 공간정보에 비해 법률적 차원에서는 통계청에서 먼저 사용했으나 입법 발의에서 국

71) 강성천 강승규 구분철 권영진 권택기 김성태 김용태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종희 배은희 백성운 손범규 송광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원희룡 유일호 윤상현 이경재 이정선 이춘식 이혜훈 주광덕 주성영 진수희

가공간정보기본법이 앞서게 됨으로 인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 입법 여부에 관계없이 입법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간통계정보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의 공간정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국민의 공간정보 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유지·관리 및 공개하여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p> <p>②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p>	

<p>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p> <p>2. “공간통계정보자원”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 자원 및 정보기술 등 일체의 자원을 말한다.</p> <p>3.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p> <p>4. “단위통계공간”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 관리를 위한 최소단위 지역의 지상 및 지하의 공간으로서 통계청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해양·대기 등 시간 및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p> <p>2. “기본공간정보”란 다른 공간정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p> <p>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p> <p>4. “국가공간정보기반”란 국가가 국토정책 수립, 행정과 공간정보 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체계, 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국가안</p>		

<p>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공간통계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u>다른 법에 우선하여</u>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과의 관계는 공간통계정보법률(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음. ● 통계법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고 하여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제3조에서 적용 범위 제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입법 추진과정에서 본 조문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임.)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은 중첩 상충되는 법률과의 정리가 미비된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다른법에 우선 적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바, 입법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p>제2장 공간통계정보에</p>		

<p>관한 정책수립 등</p> <p>제5조(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공간통계정보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 공간통계정보의 정보기반으로의 발전 3. 공간통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4. 민간참여 및 시장의 활성화 		
<p>제6조(공간통계정보관리 기본계획)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매년 갱신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p> <p>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6조(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u>5년마다</u>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4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5년마다, 공간통계정보법률(안)은 3년을 기본단위로 매년 갱신. (주체는 정부로 동일) ● 포함될 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10가지, 공간통계정보법률(안)은 방향5가지 설정 후 11가지 제시 ● 수립 방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중앙행정기관 부문별 작성 ->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 -> 위원회 심의 확정(령에

<p>1.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p> <p>2.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p> <p>3.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및 변경 등 관리의 방법과 절차</p> <p>4. 분야별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체계</p> <p>5. 공간통계정보자의 확보 및 배분</p> <p>6.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p> <p>7. 투자의 활성화 등 민간참여</p> <p>8.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p> <p>9. 전문인력의 수급대책</p> <p>10. 공간통계정보정책의 분석 및 평가</p> <p>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관리</p> <p>3.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연구·개발</p> <p>4.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p> <p>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p> <p>6.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 및 유통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p> <p>7.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국가적 표준의 관리(산업표준, 절차표준, 자료표준, 유통표준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p> <p>8.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p> <p>9. 위성원격탐사와 위성측위에 관한 시책</p> <p>10. 그 밖에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사항</p> <p>③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p>	<p>의한 예외 근거 마련 : 제3항) / 공간통계정보법률(안)- 위원회 심의 -> 국무총리 확정</p>
---	---	---

	<p>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간통계정보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u>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u>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장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엔 예산 관련 조항이 추가적으로 있는 바 유의할 부분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p>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3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일괄 편성 및 배정하여야 한다.</p> <p>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와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p>	<p>소요되는 예산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복투자여부를 검토하여 일괄하여 예산신청을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을 일괄 편성 및 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p> <p>✓ 예산관련 문제와 같이 중요하고 민간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 요청 / 배정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관계 부처의 반발을 가져 올 것으로 보임.</p>
-------------------------------	---	--

	<p>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시행계획의 조정)</p> <p>① 제8조에 따라 관리기관 간에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u>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의 심의</p>	
--	---	--

	<p>를 거쳐 시행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총괄기획·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8조(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 ①공간통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평가 및 조정 4.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p>	<p>제10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 관련 정책,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u>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의결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제7조제3항에 따른 일괄요청 예산 4.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소속은 동일함. 위원장도 국무총리 동일. ● 최근 정부 소속 위원회의 정비 방침이 국무총리급 위원회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의 국무총리급 위원회도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복안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복안으로 상정할 수 있음.

<p>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통계청장으로 한다.</p> <p>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위원회의 운영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p> <p>7. 위성원격탐사와 위성측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변경</p> <p>8.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③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30인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국토해양부장관</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7인 이상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	--	--

<p>제9조(연차보고) 정부는</p>	<p>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p> <p>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 2. 기본공간정보(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 분과위원회 3. 표준화분과위원회 4. 기술분과위원회 5. 산업육성 및 유통 분과위원회 6. 인력양성 분과위원회 7.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위원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과위원회 <p>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국가공간정보체계</p>	<p>● 양 법이 다루고자 하</p>
----------------------	---	----------------------

<p>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현황 4. 기본공간정보 및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 구축현황 5.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6. 공간정보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p>	<p>는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연차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보고서의 작성주체(정부) 시기(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처(국회) 등은 동일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제4항에서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위임근거를 두는 것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함. ● 제3항 연차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해계모니를 놓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작성주체는 정부이나 자료의 수집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가지려는 조항임. 그러나 공간통계정보법률(안)에서도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됨.
---	--	---

	<p>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나 통계청장이 간사로 예정되어 있음(안 제8조 제3항)</p>
<p>제3장 공간통계정보의 관리</p> <p>제10조(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①통계청장은 단위통계공간을 기초로 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 분류체계를 작성 또는 변경할</p>		

<p>수 있다.</p> <p>③통계청장은 분류 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최적의 분류체계가 작성·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p> <p>④분류체계의 작성과 의견조회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작성의 방식 2. 자료의 형태 3. 분류체계 4. 자료의 분석방법 5. 보급 및 유통의 방법 6. 적용기술 	<p>제20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 연구 및 개발 2.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 도입 3. 공간정보 관련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관련 시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p>	<p>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므로 양법의 각 조문 취지는 각 해당 분야에서 동일 목적을 가지고 있음.</p> <p>즉 통계분야와 지리분야에서 모두 표준화가 필요하므로 각 조문은 상충되는 것은 아님.</p> <p>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의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국회 검토보고서의 지적은 다음과 같음.</p> <p>[제정안의 내용이 국토해양부장관의 표준제정</p>

<p>7.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p>	<p>위하여 제10조제7항제3호의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표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21조(표준 준수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법과 표준과 관련된 다른 법률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p>	<p>권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한국산업표준과의 중복이 우려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일원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공간정보 분야에서 한국산업표준이 32종이 제정·운용중에 있으므로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p>
<p>제12조(인력양성)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연구·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국제기술협력 및 교류 4. 전문인력 양성 및 	<p>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은 병렬적으로 진흥될 필요가 있음.</p> <p>시범 사업의 경우, 법적인 근거 없이도 실시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이며,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 이를 모방할 필요는 없을 것임.</p>

	<p>교육계획</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2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정보체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공간정보체계 전문 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공간정보목록의 작성 <p>제13조(시범사업) 정부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p>	
--	--	--

	<p>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3조(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공간통계정보가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처리 및 취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14조(공간통계정보의 수집 및 생산) ①통계작성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통계작성기관은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p>	<p>제14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거나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형·해양·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공간정보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의 ‘주요 공간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입법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큼. ●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공간정보’의 개념이 수정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p>다.</p> <p>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한 공간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국 단위의 공간통계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p> <p>④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통계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통계정보 생산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하고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통합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p> <p>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그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본공간정보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공간정보데이터</p>	<p>관계부처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때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법률상 공간정보의 목록 작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는 관리 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계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계청 소관으로 업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공간통계정보법(안)과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음.
--	--	---

	<p>베이스의 구축·관리)</p> <p>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생산하는 공간 정보를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공간 정보 표준 또는 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p>	
--	---	--

	<p>조할 수 있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p>	
<p>제15조(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통계정보공동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공간통계정보공동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관리, 도시계획, 지적관리, 자원개발, 연안관리, 해양개발, 환경보전, 농림, 건설관리, 수자원관리, 교통체계, 물류,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이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4조는 기존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 등에 관한 法律에 유사한 규정이 이미 있었음. ● 협력하여 구축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법적으로 근거지우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문임. ● 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4조 제3항의 관리기관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조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p>제16조(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가 산업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p>		

<p>보급·확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가공 및 활용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공간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정부는 공간통계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⑤공간통계정보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선정취소, 그 제공과 이용 또는 활용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공간통계정보의 공개)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공개와 국민의</p>	<p>제25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p>	<p>구축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 관련 조문을 두고 있음.</p>

<p>이용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 하거나 이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의 공개 및 민간위탁 또는 협력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 및 보유하는 방식과 공개등급·양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위원회가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 <p>③전담기관의 지정을</p>		

<p>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전담기관의 자격이나 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공간통계정보시스템</p> <p>제19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의 전 과정 관리의 전자화 2. 공간통계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3. 이용자 중심의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운용 4. 공간통계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p>③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요건과 운영계획 및 이용요건 등을 포함한</p>		

<p>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공간통계정보센터) ①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산하에 공간통계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 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 공간통계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 4.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통계청장이 지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통계청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p>	<p>제26조(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u>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u>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지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국토해양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형태로 발의되어 원안대로 입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6조도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문으로 각 부처에서 현재 관리중인 정보를 하나의 센터로 일원화 시키자는 취지는 공감될 수 있으나 자료 요구권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미 국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으며, 수정이 불가피해 보임. <p>안 제27조제2항은 공간정보의 과세자료 활용을</p>

<p>위탁할 수 있다.</p>	<p>하여야 한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가공 등)</p> <p>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합리적 이용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간정보를 가공·분석 및 활용할 수 있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지</p>	<p>목적으로 주민등록정보,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이들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p> <p>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요청권이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가 의문이고,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p>
------------------	---	--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제21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 ①통계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접근 권한관리 및 사용기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통계청장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p> <p>④공동이용의 방법이</p>		

<p>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이용요건 등) ①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p>		
<p>제5장 보칙</p> <p>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법인(국가가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권한의 위임·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벌칙) 이 법에 의하여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	<p>제33조(벌칙)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화 체계를 훼손하거나 관리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간정보를 제공 받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된 데이터를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기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 벌칙 규칙에 있어 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비밀 누설행위에 대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존 GIS 법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임.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특성상 공간통계정보법(안)의 해당 조문은 타당성이 있음.

	<p>2.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부칙 1.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입법 추진 과정에서 복안으로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임.</p>

(4) 입법 추진과 대응 논리

“공간”이라는 용어가 주는 동질감으로 인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과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상충 법률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경쟁 구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입법 추진 전략에 있어 양 법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설령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이 먼저 입법되더라도 양자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오히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에서 공간정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리” 관련 정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차원적이었던 지리 정보가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이 공간정보의 기본 개념이다. 제정안에서도 ‘“공간정보”란 지상·지하·해양·대기 등 시간 및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2조 1호)고 하였는바, 개념을 모호하게 하여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범용적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안 그대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리에 대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 공간통계정보란 기본적으로 “통계”이다. 특정 공간에서의 통계 정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공간통계정보의 개념이다. IT기술의 발전으로 통계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다채롭게 수집 가능하게 되었고 실시간에 가깝게 수집 관리 가공되어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수량적 데이터를 통계로 인식하던 시대를 벗어나 이와 같은 통계행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통계의 시스템적 관리가 요청되었다. 공간통계정보법률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리 기반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과는 그 대상을 달리한다.

공간통계정보법안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정의 규정을 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 진다.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결국 양 법률은 차별화된 법률이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법 모두 입법되더라도 공간통계정보법안을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하여 조화로운 위상 정립이 가능한 법이라고 하겠다.

3)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과의 관계

(1) 법률안 추진 개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은 송광호의원 등 10인의 제안으로 2008년 9월 3일 발의되어 10월 18일 공청회를 거쳤으며,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11월 20일 상정되어 제278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 11월 25일 상정되어, 12월 12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된 상태이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2)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내용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예산 관련 시스템 및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공간정보산업의 다음해 공공의 공간정보산업관련 수요를 예측하여 공개하고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안 제5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신속하게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제정한 공간정보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편집·제정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공간정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코자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간정보투자회사를 설립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하.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 투자회사 등을 설치토록 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토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3) 공간통계정보법(안)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는 공간 정보 산업 진흥에 관련된 조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다. 나아가 민간 산업 육성을 법률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민간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계정보의 제공,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을 뿐이다.

즉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과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법 추진 과정에서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 민간 산업 육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공간통계정보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 공간통계정보의 정보기반으로의 발전
3. 공간통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4. 민간참여 및 시장의 활성화

제6조(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매년 갱신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
3.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및 변경 등 관리의 방법과 절차
4. 분야별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체계
5. 공간통계정보자원의 확보 및 배분

6.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투자의 활성화 등 민간참여
8.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9. 전문인력의 수급대책
10.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가 산업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간통계정보의 공개)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하거나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공간통계정보의 공개 및 민간위탁 또는 협력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법 추진과 대응 논리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은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민간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 위탁 등의 내용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다르고 상충하는 조항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 입법 추진의 장애가 되는 법률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의 입법 추진은 공간통계정보의 유통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통계법과의 위상 정립

1) 2007년 통계법 전부 개정의 의의

통계법은 2007년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통계청의 위상 강화와 통계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일조한 바 있다.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가. 2006. 3. 30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4. 17)에, 2006. 8. 25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9.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06. 9. 25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2. 22)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체도를 도입하여 통계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 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나.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다.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바.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 제외)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안 제37조).

전부 개정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통계 품질 진단 제도가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통계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통계청장이 통계사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재 수단이 마련되었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력 있게 통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자발적 협조와 정보 제공에 의존하는 통계 정보의 마련이 점점 정확도와 현실성 양측에서 모두 어려움을 커져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7년 통계법의 전부 개정은 커다란 의미를 가짐에 틀림이 없다.

2) 통계법과 공간통계정보법(안)의 관계

특정 영역의 구체적인 행정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오늘날 법치 행정의 추세이며,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조문 외에 구체화된 법조문이 필요하다. 즉 시스템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률 조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계법을 모법으로 하는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

기존 통계법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로 넓은 의미의 정보 수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량적 데이터를 통계의 대상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공간통계에 대한 포괄 범위가 명확치 못한 것 사실이다. 물론 다소 무리하게 넓은 의미에서는 공간 통계 역시 통계법상의 통계에 포섭되는 개념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계법은 기본법으로서 큰 틀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간통계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며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별도의 개별 법률이 아닌 통계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장을 마련하자는 논의 역시 현행 통계법의 구조상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계법 내에 삽입하는 것은 체계 적합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통계정보법(안)은 기존 통계법을 모범으로 공간 통계 관리와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법률로 마련 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은 관계에서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기존 통계법을 준용하고,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통계법을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간통계정보법안	통계법	비고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의 발전도모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p> <p>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통계법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음.</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관한</p>	<p>제3조 (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통계”란 통계작성기</p>	<p>통계 중 공간통계정보는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p>

<p>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p> <p>2. “공간통계정보자원”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 자원 및 정보기술 등 일체의 자원을 말한다.</p> <p>3.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p> <p>4. “단위통계공간”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 관리를 위한 최소단위 지역의 지상 및 지하의 공간으로서 통계청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p>	<p>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p>		

<p>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공간통계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공간통계정보법 제4조에서 ‘다만,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통계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p>
<p>제2장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등 제5조(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공간통계정보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 공간통계정보의 정보기반으로의 발전 3. 공간통계정보의 	<p>제2조 (기본이념) 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통계는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p>	<p>통계법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계승하고, 제4조의 국가 등의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법 제5조~제7조에서 구현함.</p>

<p>안전한 관리</p> <p>4. 민간참여 및 시장의 활성화</p>		
<p>제6조(공간통계정보관리 기본계획)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매년 갱신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p> <p>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 3.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및 변경 등 관리의 방법과 절차 4. 분야별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체계 5. 공간통계정보자원의 확보 및 배분 6.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p>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한다.</p> <p>제4조 (국가 등의 책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7. 투자의 활성화 등 민간참여</p> <p>8.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p> <p>9. 전문인력의 수급 대책</p> <p>10. 공간통계정보정책의 분석 및 평가</p> <p>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p>		

<p>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 ①공간통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평가 및 조정 4.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효율적 운</p>		

<p>영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통계청장으로 한다.</p> <p>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위원회의 운영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연차보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장 공간통계정보의 관리</p> <p>제10조(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①통계청장은</p>		

<p>단위통계공간을 기초로 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 분류체계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③통계청장은 분류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최적의 분류체계가 작성·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p> <p>④분류체계의 작성과 의견조회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통</p>	<p>제22조 (표준분류)</p> <p>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p>	<p>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의 표준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통계법 제22조에 대응하는 규정임.</p> <p>공간통계정보법률은 통</p>

<p>계정보관리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관리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작성의 방식 2. 자료의 형태 3. 분류체계 4. 자료의 분석방법 5. 보급 및 유통의 방법 6. 적용기술 7.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p>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계법을 모범으로 하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구체화 보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p>
<p>제12조(인력양성)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전</p>	<p>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p> <p>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p>	<p>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것을 규정한 통계법 제7조와는 달리, 공간통계정보법률에서는 보다 구체화하여 정부가 공간통계정보관리 전문인력의 수</p>

<p>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p>	<p>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p>	<p>급에 관한 시책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음.</p>
<p>제13조(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공간통계정보가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처리 및 취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33조 (비밀의 보호)</p> <p>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에서 나아가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취급시 주의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의 전환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현실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p>
<p>제14조(공간통계정보의 수집 및 생산) ① 통계작성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작성기관은</p>		

<p>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한 공간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국 단위의 공간통계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p> <p>④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통계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통계정보 생산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통계정보공동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공동</p>		

<p>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가 산업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가공 및 활용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공간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정부는 공간통계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⑤공간통계정보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선정취소, 그 제공과 이용 또는 활용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공간통계정보의</p>	<p>제27조 (통계의 공표)</p>	<p>통계법 제27조의 의하면</p>

<p>공개) ①통계청장은 공간 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하거나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의 공개 및 민간위탁 또는 협력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p> <p>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p>	<p>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는 것이 원칙임.</p> <p>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음.</p> <p>단 그 정보의 방대함과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 보호 등에 있어 미치는 과급효를 고려하여 선별적 공개 방식을 택하고 있음.</p>
--	---	---

	<p>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위원회가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 <p>③전담기관의 지정을</p>		

<p>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전담기관의 자격이나 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공간통계정보시스템</p> <p>제19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의 전 과정 관리의 전자화 2. 공간통계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3. 이용자 중심의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운용 4. 공간통계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p>③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요건과 운영계획 및 이용요건 등을 포함한</p>	<p>제28조 (통계의 보급)</p> <p>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제27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p>	<p>통계법 제28조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은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부과하고 있다.</p> <p>공간통계정보법률 제19조는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통계정보의 전 과정 관리를 전자화하고 간행물 발간보다 짧은 주기적 현행화라도 도모할 수 있는 공간통</p>

<p>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p> <p>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p>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p>	<p>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법정화하고 있음.</p> <p>본 시스템은 통계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통계가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 보급 및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널리 보급 이용되어야 한다는 통계법의 기본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매체가 될 것임.</p>
--	--	--

	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제20조(공간통계정보센터) ①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산하에 공간통계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 공간통계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 4.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통계청장이 지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통계청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1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관리적·기술</p>		

<p>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 ①통계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접근 권한관리 및 사용기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통계청장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p> <p>④공동이용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이용요건 등)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p>		

<p>보시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p>		
<p>제5장 보칙</p> <p>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법인(국가가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권한의 위임·위탁의</p>		

<p>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p> <p>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를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39조 (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p> <p>2. 통계의 작성을 목적</p>	<p>통계법에서는 뇌물죄 관련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p> <p>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숙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가지고 있다.</p> <p>공간통계정보법에서는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형법에서 비밀 누설죄는 신분범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p>
---	---	---

	<p>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p>	<p>만이 처벌 대상이 되도록 신분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본 조항에서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의 범정형과 그 형벌의 무게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p>
<p>부칙 1.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3) 통계법 관련 규범의 미래 지향적 목표 제시

현실적으로 이미 공간통계정보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통계청 내부에서 마련되어 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계법에서 이 시스템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고 공간통계정보 시스템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계법의 새로운 장으로 마련하기에는 인구 센서스, 산업통계 등과의 균형상 체계 적합성이 떨어지고, 각각의 내용들을 모두 통계법에 담기에는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단일 법률로서 담을 수 없는 상세한 내용들을 적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계법은 현행과 같이 방향과 커다란 틀을 제시해 주는 구조를 유지하고,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위 법률로 개별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규범의 체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향후에는 통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위 구체화 법률들로 공간통계정보법, 인구센서스법 등 분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법률의 구조와 재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공간통계정보법(안)은 관련되는 직간접 법률과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보완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통계정보법은 관련 분야의 입법 및 정책과 완전한 조화가 가능한 분야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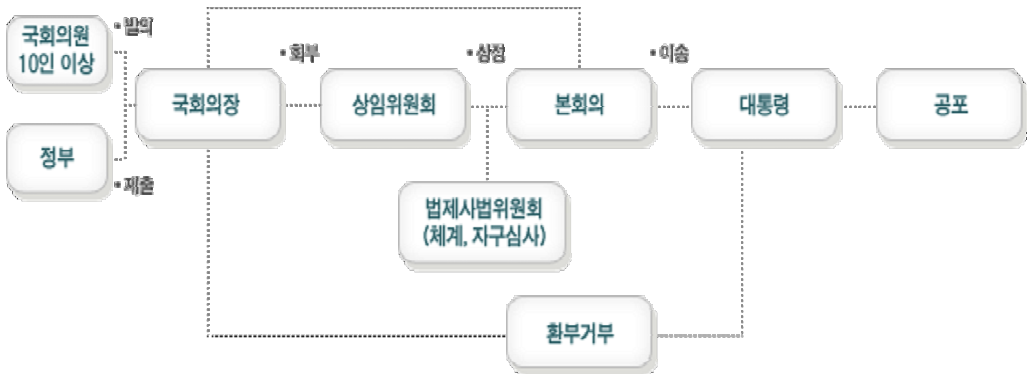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4절 입법 방식의 선택

1. 입법 절차의 개요와 특징

1) 입법 절차의 개요

<그림 41> 입법 절차



① 제안⁷²⁾

제안권자 : 국회의원, 정부

국회의원 : 10인 이상의 찬성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정 부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

②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③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④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됨.

⑤ 전원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⑥ 본회의 심의·의결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⑦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⑧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⑨ 공포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제8항의 내용과 같이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2) 우리나라 입법 절차의 특징 : 이원적인 법률안 제안

우리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작용의 국회전속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52조가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함으로써 입법과정에 투입의 길을 또 다른 국가권력에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제헌헌법 이래로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각각 국회의원과 정부로 나누어놓는 이원적 형태를 제도화하고 있다.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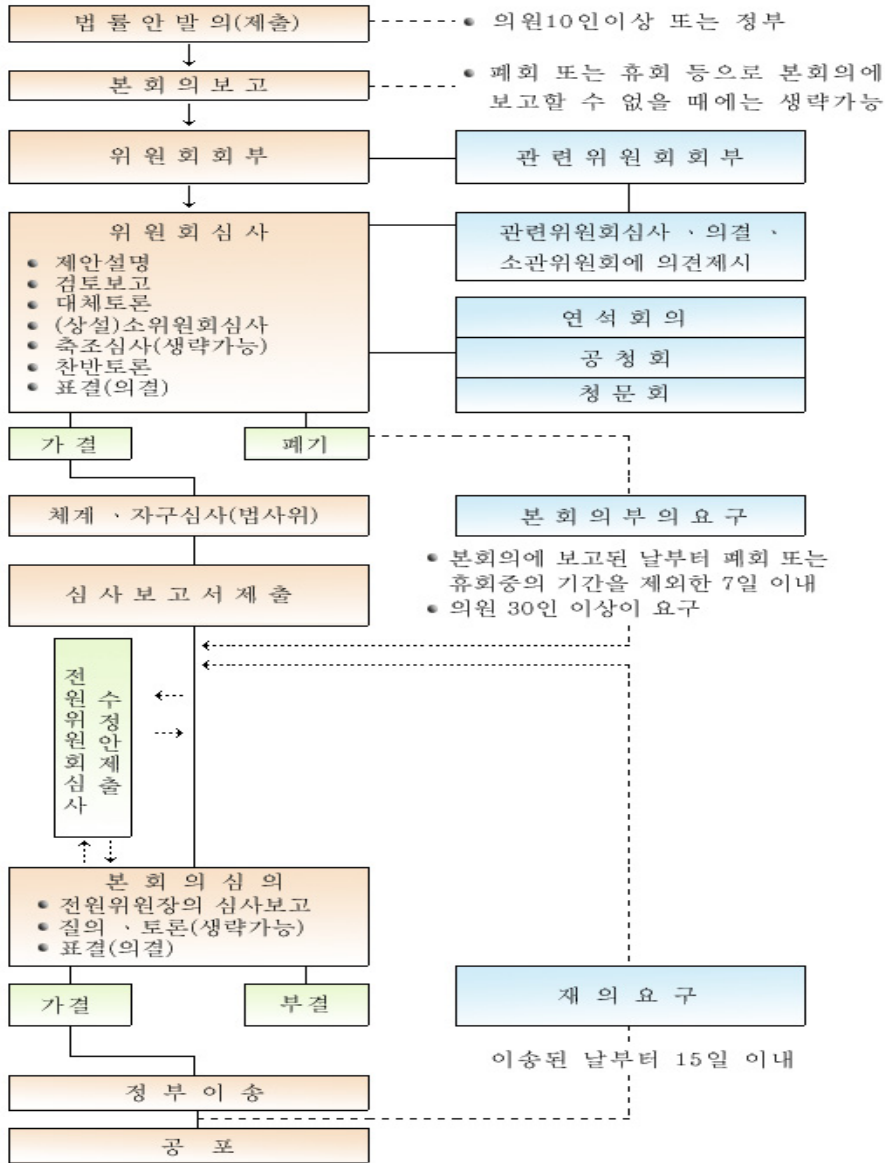
이원적인 법률안제안 형태는 결국 오랫동안 의원의 질적 미비와 자질 전문성이 문제시되어 왔고, 입법보조인력 및 입법준비제도가 미비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입법안의 정부의존이 시작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⁷⁴⁾

72) 발의는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이고 제출은 정부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내는 경우이다.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함께 묶어 가리킬 때 쓴다.

73) 이처럼 우리 헌법은 대부분 국가에서와 달리 이원적 법률안제안제도를 두게 되어 있는 바, 그 기원은 임시헌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1조 제10항은 임시의정원의 직권가운데 ‘법률안을 제출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헌법제15조 제9항에서는 임시대통령의 직권으로서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위원의 동의를 요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제헌헌법이래 오늘에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법률안 제안의 이원적 구조는 이처럼 임시정부헌법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74) 다만 50년이 지난 현재에 달라진 의회환경에 비추어 이같은 두 갈래의 입법안의 제안방식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는 이제 바야흐로 입법론적으로 검토될 시점에 와있다.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공법연구 제14권 제3호. 3면.

〈그림 42〉 입법의 세부절차



<해의 사례 비교>

1. 대통령제국가

미국은 입법과정에서의 투입은 전적으로 의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매년 1월 ‘일반교서’의 형식으로 입법권고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의원정부제

의원정부제 국가인 **프랑스**는 3·4공화국 당시의 혼란과 비효율에 대한 반성으로서 정부에 입법안제출권을 주는 동시에 의원발의입법과정의 경우에도 그 입법대상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특이하게도 프랑스헌법 제38조는 의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여 정부로의 입법권위임을 법률명령(ordinance)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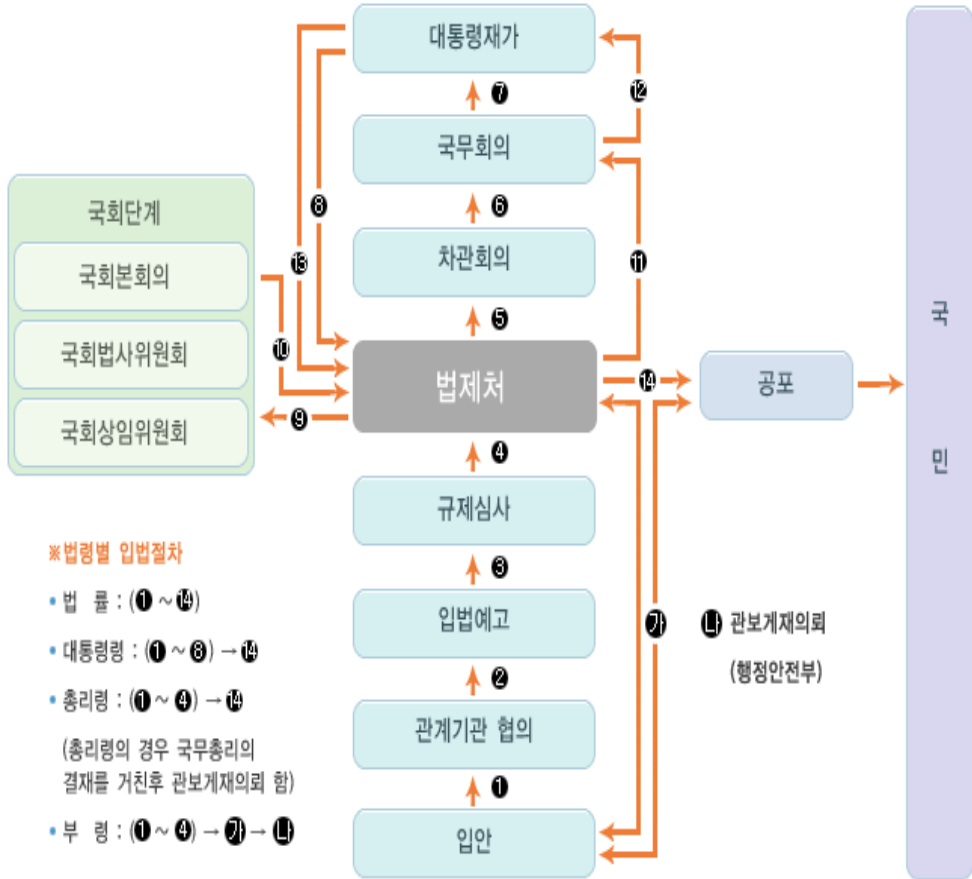
3. 의원내각제 국가

영국의 경우는 의원만이 입법발의를 할 수 있으나 의원내각제 본질상 의원이 각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구분은 별의미가 없다. 즉, 각료인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은 실질적으로 정부제출법률안이 될 것이고, 일반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의원발의법률안으로 분류가 될 뿐이다. 또한 두 법률안 심의 또는 심사 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 있어서도 헌법적으로는 의원만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나, 내각법 제5조에 의해서 정부제출법률안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일본 또한 의원, 위원회, 정부가 고르게 입법안제출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경우에는 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 전에내각의 법제국과 재무성의 법제국에 의한 심사를 받는다.

독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원내각제 국가이기는 하나 그 연방국가성의 결과 연방참의원 및 연방의원하원과 함께 연방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주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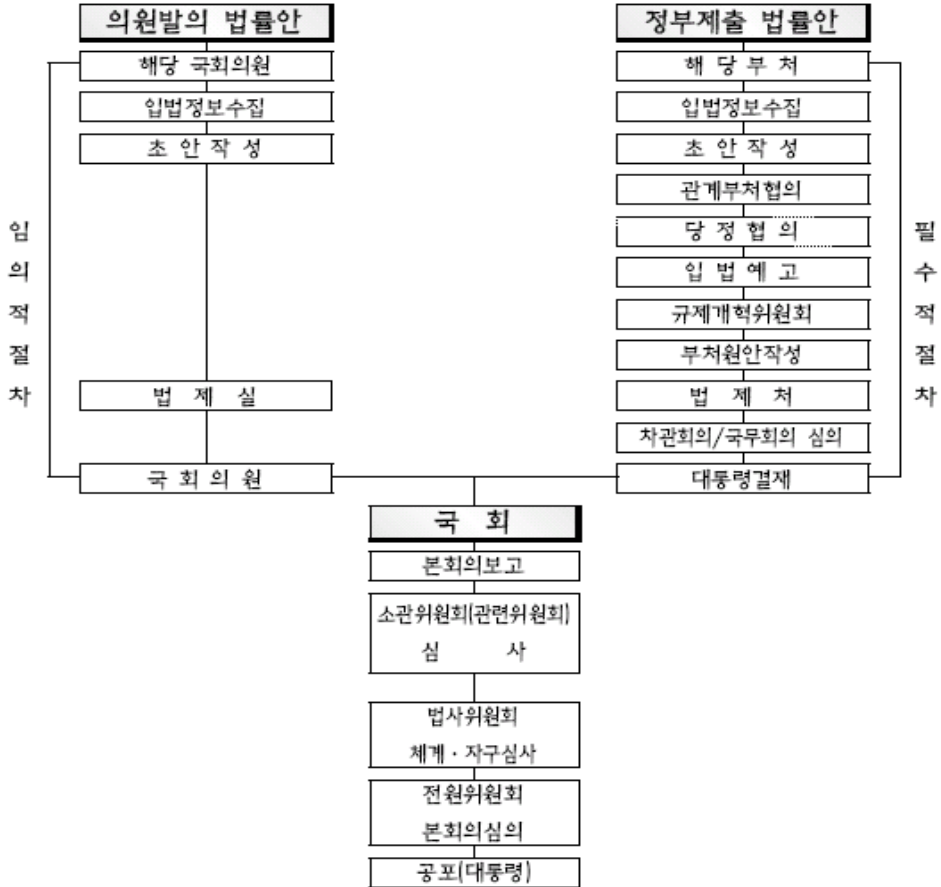
<그림 43>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절차 비교표



2. 의원발의 · 정부제출의 선택

1) 절차의 비교

<그림 44> 의원 발의, 정부 발의 법안 처리 절차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미국과 달리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의원이 발의한 경우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입법이 된 이후에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양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입법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의원 발의의 장단점

(1) 신속한 진행

의원 발의를 택하게 되면 정부제출에 비해 매우 빠르게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경유하는 일련의 필수적 절차가 의원 발의시에는 필요치 않거나 임의적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입법의 경우,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절차의 진행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데 의원 발의가 이루어지면 공론화가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즉 의원발의의 경우에는 정부제출 법률안과는 달리 의원상호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론과 역주민의 이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과 접촉이 있는 까닭에 신속한 입법수요에의 대처가 용이하다는 점도 그 장점으로 들 수 있겠다.

(2) 민주주의 요청에 부합

국민 참여의 확대 내지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다양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회 중심의 입법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정부의 관여도를 줄여야 할 지양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요컨대 의회중심인 입법과정의 투입과 산출은 오늘날의 국가사회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용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요청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3) 개선 가능성과 문제점

의원 입법은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근본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17대 국회의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 실로 무분별한 수준의 형식적 의정활동경쟁과 난무하는 평가발표의 공개에 국회의원들이 불모로 잡혀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저질 입법안발의 경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⁷⁵⁾ 지역민원적 성격의 입법안 발의, 충분한 검토 없는 그리고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 의

국입법의 무분별한 배끼기 등도 이에 덧붙여진 폐단이라 할 수 있겠다.

(4) 정부 제출의 절차 회피 수단으로서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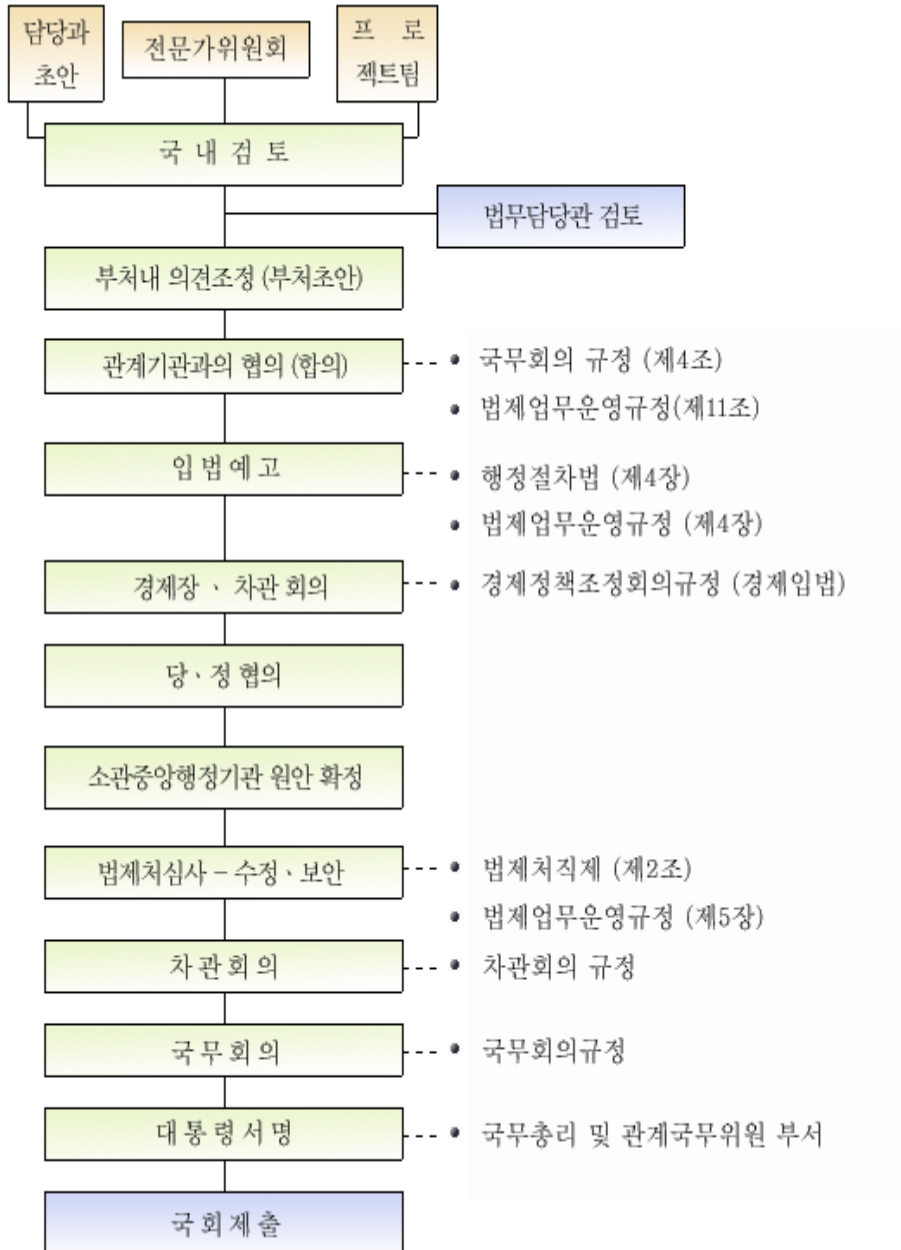
입법안 제안과정에 있어서 순수 의원입법안 발의와 함께 정부제출이 갖는 복잡한 과정을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정부 청원적 성격의 입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우리와 같은 의원적 법률안제안 제도에 있어서는 법률안제안의 방식은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 또는 전술로서 어느 한쪽의 절차를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그 복잡성이 더해질 수 있다. 즉, 정부와 국회의원 사이에서 또는 여당과 야당 간에 이른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일종의 ‘차명발의(借名發議)’ 또는 ‘대명발의(貸名發議)’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야 공동발의’를 하는 등 법률안발의의 실질에 있어서 는 다양한 정치적 계산이 그 뒤에 깔려 있을 수 있다.

3) 정부 제출 입법의 장단점

정부 제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필수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률안이 수정되는 등 보다 발전적 형태의 법안이 도출 가능하고 관련 부처간의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 검증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입법 추진 방안은 원칙적으로 정부 제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많은 시간을 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권한 설정이나 부처간 협력, 법안의 활용 및 운용을 위한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발의가 이루어지고 발의가 된 이후에는 법안의 통과가능성이 높다.

75) 권영설, 전계논문 5면.

<그림 45> 정부입법 처리 절차



또한 집행 기관인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 향후 하위 법령의 운용 방안까지 미리 고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대통령과 부령으로 정부가 하위 법령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법률 체계 마련이 편리하다. 하지만 입법 추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은 동시에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3. 소결

1) 절차적 간편성과 가결율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절차에 있어 절차적 간편성은 의원발의가 매우 높다. 부처 간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정부제출과는 달리 의원발의는 중간 과정 생략하고 바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의 가결율은 정부제출의 경우가 의원발의 보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입법부인 국회가 ‘통법부’라는 오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시절이 꽤 오래 지속된 바 있다. 법안을 사실상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는 단지 거수기의 역할로 통법만 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87년 이후로 의원 발의의 수는 정부 제출 법안 건수를 압도하고 있으며, 가결된 법률안의 건수를 보더라도 정부제출보다 의원발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발의가 압도적인 것은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며 또한 함양미달의 법안들도 많이 제출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정부입법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법안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이 사전 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의 가결율이 높다고 판단된다.

제17대 국회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의원발의가 6,387건으로 정부 제출 1,102건의 6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결된 건수를 보면 의원발의가 1,350건으로 발의 건수 대비 21.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정부 제출은 563건이 가결되어 무려 51.0%의 가결율을 보여주고 있다. 절차면에서 의원발의가 보다 절차적 간편성이 높은 반면, 가결율은 정부제출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9〉 제17대 국회 처리의안 통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	원안	수정			
의원발의	6,387	6,387	1,350	823	527	6	4,945	86
정부제출	1,102	1,102	563	131	432	0	536	3
총계	7,489	7,489	1,913	954	959	6	5,481	89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2008-11-29 접속]

2)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

헌법적 관점에서 입법 추진은 의원 발의 형식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정부제출의 전통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통계청이 추진하는 법률안은 정부 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제출을 위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입법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제출이면서 법안제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비하여 의원발의의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부부처간의 예산 협의과정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 절차의 곤란성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여러 단계의 절차가 의원발의입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생략 또는 절약될 수 있는 까닭에 실제로 많은 경우에, 사실상 정부 제출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의원 발의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어떠한 입법 절차를 택할 것인지는 장단점과 헌법적 의의를 고민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관련 입법안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및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속한 공론화를 원한다면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는 필수적 과정이며 통계, 정보, 행정, 지리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 자세로 거치는 것이 입법 전략 및 향후 업무에도 유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1. 연구의 목표와 진행 개요

IT기술의 발전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통계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계와 공간의 정보적 결합은 21세기형 지식창출의 필수적 요청이며 공간통계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통계행정에서 공간 통계의 생산과 관리 활용을 위한 행정체계와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최우선 과제로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입법을 위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입법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2.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성격

먼저 국내외 통계 관련 서비스를 비롯하여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해외 사례와 입법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통계업무의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현행 관련법들의 분석을 통해 공간통계정보법안이 지향해야 할 성격과 목적을 도출하였는바, 공간통계정보법(안)은 구체적 정책집행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규정하여 정책법적 성격을 지향하고, 공간통계정보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특성을 가능한 상세히 반영하여 기술법적 성격을 지향하며 통계법을 기본법적 위상으로 전제하고 그 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법적 성격을 지향한다. 이로써 공간통계정보법(안)은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쟁점

법률안의 조문 작업에서는 공간통계정보의 개념 정립, 법률의 위상 정립, 공간통계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방안, 타부처와의 소통 협력 기반 마련, 정보의 보호와 정책품질에 관한 책임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간통계정보는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였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동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 정립하였다. 분류체계는 통계를 담는 공간의 다양한 그릇을 의미하며 생산과 이용 모두에 있어서 진정한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바, 중앙기관, 지자체 등이 충분히 의견 제시하고 반영토록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전제로 통계청에서 단위통계공간을 기초로 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작성 공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표준화의 일반적 책무는 범정부적으로 부여하여 기존 정책과의 조화를 보장하고 공간통계 정보시스템적 이용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기술기준에서는 통계작성의 방식, 형태, 분류체계, 분석방법, 유통방법, 적용기술 등에 관하여 세밀한 기준을 제시토록 명시하여 자료의 생산부터 이용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정립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간통계정보서비스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권리보장을 명시하도록 하며 통계정보의 품질에 관한 책임논란을 완화하여 적극적 정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4. 입법 환경의 성숙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정보복지증진, 권알권리의 보장,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의 실현,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의무 이행 등 지식정보사회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적 당위성을 확보한 법안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이미 통계청에서 부분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중인 공간통계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으며, 양질의 공간통계정보가 생산 관리 유통될 수 있기 위한 기본 전제인 중앙기관 지자체 간의 행정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자원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규범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통계청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수년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사업체 기초통계 GIS DB를 구축하고 대전에서 통계내비게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PR 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2007년 들어서는 공간통계지식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통계정보 근거법제 초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등 공간통계정보법안을 입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연구와 의견 수렴을 하였고, 2008년에는 본격적으로 공간통계정보법 제정 추진 공론화를 위한 학술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입법 추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 입법 환경이 충분히 성숙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5. 입법 방식의 전략적 선택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로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각각 국회의원과 정부로 나누어놓는 이원적 형태를 제도화하고 있다. 의원 발의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고 국민 참여의 확대 내지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정부 제출에 비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 제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필수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률안이 수정되는 등 보다 발전적 형태의 법안이 도출 가능하고 관련 부처간의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 검증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에서 보다 높은 가결율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입법 추진 방식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 관련 입법안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및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신속한 공론화를 위하여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는 필수적이며 통계, 정보, 행정, 지리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 자세로 거치는 것이 입법 전략 및 향후 업무에도 유리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욱, 공간통계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현황, 발표자료, 2008.
- 강홍렬 최선희,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6-05, 2005.
- 건설교통부, 2000-2007 주요업무계획, 2000.
-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확대 구축방안 연구, 2002.
-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 2004.
-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6.
-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관련 규정집, 2006.
- 건설교통부, 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 2007.
- 건설교통부, GIS 기반 소지역 통계집계 공표구역 확정 및 관리방안 연구,
2007.
- 건설교통부, GIS 기반 소지역통계집계 공표구역 확정 및 관리방안 연구,
2007.
- 건설교통부, 제2회 국가GIS 관계부처 워크샵, 2007.
- 건설교통부, 지리정보 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7.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2002.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2003.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2005.
- 국토연구원, 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1999.
- 국토연구원,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연구, 2005.
- 국토연구원, 국토정보관련법제 발전 방안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2006.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지리정보구축 연구 및 시범사업, 2001.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지리정보 구축 추진저력 연구, 2002.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지리정보 묘화기반 표준연구, 2005.
- 국토지리정보원, 2단계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전략 수립연구, 2005.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연구, 2005.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축연구, 2004.
- 국토해양부, 2007년도 국가GIS 지원연구, 2008.
- 김경중. 1987. “통계행정의 발전방향.“ 응용통계연구 1권1호.
- 김동욱, “지역통계행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7(1), 1999.
- 김태진, 지방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과정적 평가연구, 한국GIS학회논문집, 2001.
- 김태진, 박종택, 국가GIS 법·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GIS Association of Korea, Vol. 14, No. 2, July 2006.
- 대우정보컨소시엄,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PR 사업 보고서, 2006.

박화수, “통계행정의 사이버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인터넷 통계조사의 적용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0권 1호, 2007,

법제처, 통계법 개정이유, 법률 제 8387호, 2007.

신종식, 전자정부를 위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안정용 이은정, “우리나라 국가통계 및 인력에 관한 고찰“

유홍립, 김경태, “우리나라 통계행정 60년: 제도적 변천과 주요 활동”, 한국조직학회보 제5권 제2호, 2008.

이재형,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2005.

조현태, 위성영상을 이용한 국가기본지리정보데이터 활용 방안,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종후, “통계정보시스템(KOSIS) 이용실태와 개선책“, 응용통계연구 제 10권1호, 1997.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RP 사업최종보고서, 2006.

통계청, 공간통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입방안 연구, 2007.

통계청, 통계행정편람, 2008.

한국개발연구원,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2004-10, 2004.

한국개발연구원,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2004.

한국전산원, GIS 국제 표준화 동향분석 및 국내표준/기술도입방안 연구, 200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 연차보고서, 2006.

Alison J. Head. Desing Wise: A Guide for Evaluating the Interface Design of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Today Inc.,1991.

Antenucci, John C et. Geographic Inforamtion Systems: A Guide to the Technology: Van Nostrand Reinhold, NY, US.

Aronoff 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 Management Perspective, WDR, Ontario, Canada, 1989.

Berhardsen, 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Viak IT/Norwegian Mapping Authority, Arendal, Norway.

Chrisman, N. Explor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John Wiley and Sons, NY. US. 1997.

Ian Masser, All shapes and sizes: the first generation of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s, Int. J.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1999, Vol. 13, No.1.

Korte, G.B. GIS Book. 3rd ed., Onword press, Sata Fe, NM, US, 1994.

Krugman, Paul, and Wells, Robin. 2006. Economics. Worth Publishers.

OMB, Geospatial One-Stop,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apital Asset Plan and Business Case(Exhibit 300), OMB, Washington D.C., US. 2003.

Onsurd, H. J. and Pinto, J. K. Evaluating Correlates of GIS Adoption Success and the Decision Process of GIS Acquisition,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Information System, Vol.5, No.1, 1993.

O'Reilly, Tim. "What is Web 2.0: Design Patterns and Business Models for the Next Generation of Software" (<http://www.oreillynet.com/lpt/a/6228>)

공간통계 정보법안 해설서

2008.12.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간통계정보관리 근거법제의 입법추진방
안 연구”의 법안 해설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 현 영

참 여 진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광운대학교)	권현영
공동연구원(명지대학교)	정운수
공동연구원(서울산업대학교)	김기환
공동연구원(광운대학교)	이상경
공동연구원(연세대학교)	이삼열
공동연구원(NIA)	고윤석
공동연구원(홍익대학교)	최진원
연구보조원(광운대학교)	김경렬
연구보조원(광운대학교)	박광수
연구보조원(광운대학교)	이정민

통계청

통계지리정보과장	정창호
전산사무관	강계화

목 차

I. 공간통계정보법(안) 내용 및 해설	1
1. 공간통계법의 목적	3
2. 정의	8
3. 적용범위	14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18
5.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21
6.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26
7.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32
8.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	37
9. 공간통계정책협의회	41
10. 연차보고	46
11.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48
12. 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	51
13. 인력양성	54
14.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58
15.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및 생산	62
16.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66
17. 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69
18. 공간통계정보의 공개	74
19. 전담기관의 지정	79
20.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83
21. 공간통계정보센터	85
22.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	88
23.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	90
24.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이용요건 등	93
25. 권한의 위임·위탁	95
26.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제고	99
27. 벌칙	103
II. 공간통계정보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107
1. 공간통계정보법(안)	109
2. 공간통계정보법(안) 시행령(안)	117
2. 공간통계정보법(안) 시행규칙(안)	124

Ⅲ. 공간통계정보법(안) 의 입법추진 전략	129
제1절 법률안의 방향	131
1. 공간통계정보 법(안)의 성격	131
2. 공간통계정보 법(안)의 목적	131
3. 법률안의 쟁점	132
제2절 입법 환경의 성숙	133
1. 헌법적 당위성	133
2. 실무적 당위성	135
3.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성과	136
제3절 관련 법률과의 조화 모색	137
1. 관련 법률의 검토	137
2. 국토 해양부 추진 3법과의 위상 정립	139
3. 통계법과의 위상 정립	174
4. 소결	195
제4절 입법 방식의 선택	195
1. 입법 절차의 개요와 특징	195
2. 의원발의 정부제출의 선택	202
3. 소결	204
[부록]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안),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209

I. 공간통계정보법(안) 내용 및 해설

1 공간통계법의 목적

【조문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

- 본 법의 목적을 정하여 법률 해석과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조항에서 밝히는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 발전을 도모
 -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통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지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측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통계법은 제1조의 목적부분에서는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측면을 목표로 하고 있음. 통계를 정보·지식으로서의 관점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수량적 데이터라는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의 생산 부분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음. 즉 정보의 접근성 활용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반 요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통계법이 기본법적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일일이 할 수 없는 것에도 기인함.

IT기술의 발전상을 반영하여 통계 처리의 체계화를 도모하여 국가 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정보의 접근성 활용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함. 본 법에서 -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 발전을 도모, -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의 3가지 목적을 제시하였는바, 통계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 법률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동법 제2조의 1항에 속성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음. 통계법보다는 이용자 친화적이며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공간통계정보법과는 지향점에 있어 유사점이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으나, 규정 대상과 절차, 방식에 있어 상이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 결국 양 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위상 정립이 되어야 할 것임.

법 전체에서 속성의 범위와 특성 생산주체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지리정보의 핵심이 도형적 정보와 속성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정보는 관리기관의 항목에 지도에 부수된 속성정보만으로 인식되어 통계 텍스트 정보의 공간정보화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활용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 될 수 있음. 또한 공간통계정보는 가변적인 행정구역체계보다는 단위공간통계(통계지역체계)를 기반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공간통계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따라 생산·관리 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동법에 따르는 지리정보 범주 안에서 관리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됨.

【입법례】

○ **국가공간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의 공간정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리정보획득 및 접근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12906**

Executive Order 12906

Published in the April 13, 1994, edition of the Federal Register,
Volume 59, Number 71, pp. 17671-17674.

**COORDINATING GEOGRAPHIC DATA ACQUISITION AND
ACCESS: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To develop a coordinated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to support public and private sector
applications of geospatial data in such areas as
transportation, community development, agriculture,

emergency respons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composed of 14 agencies that produce and use geographic data, was charged with coordinating the federal government's development of the NSDI.

Section 1. Definitions

(a)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means the technology, policies, standards, and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acquire, process, store, distribute, and improve utilization of geospatial data.

(b) "Geospatial data" means information that identifies the geographic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natural or constructed features and boundaries on the earth. This information may be derived from, among other things, remote sensing, mapping, and surveying technologies. Statistical data may be included in this defini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collecting agency.

(c) The "National Geospatial Data Clearinghouse" means a distributed network of geospatial data producers, managers, and users linked electronically

- o 미국의 통계제도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로 각 기관별 업무의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유사 통계의 중복 작성이나 통계기준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의 연방 대통령실 행정관리에산처의 통계정책담당관실에서 통계예산을 통제함으로써 중복조사에 의한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막고, 통계작성방법 등에 관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행정명령 12906은 미국의 통계작성과 관련한 지리정보구축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1994년 클린턴 행정부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최근 2003년에 개정된 바 있는데, "지리정보 획득 및 접근조정: 국가공간정보기반"이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공간

정보기반의 구축과 접근(정보의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규임. 세부적으로는 국가공간정보기반, 지형공간정보, 국가지형공간정보 유통기구에 대한 정의와 유통기구의 전반적 역할 및 책임과 각 기관의 지형공간정보가 어떻게 유통기구에 첨가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형공간정보 인벤토리 개발 메타데이터 문서 작성, 메타데이터 및 지형공간정보제공, 유통기구의 이용, 추진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러한 합리적인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과 지리공간정보 공유추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문해설】

법률 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법규의 해석을 비롯한 관련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명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본 법률의 목적과 실현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였음. 2조 이하의 법조문들은 본 조항의 법 목적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법과의 위상 정립과 조화로운 해석에 있어서도 본 조항을 참작해야 함.

<수단>

지식정보사회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서 그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목적>

1.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의 발전을 도모
 2.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3.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본 조항에서 밝히는 법률의 목적을 보면, 기존 통계법이 행정적 입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의 생산에 주안점을 둔 것에 비해, 본 법률은 통계정보의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담고 있음.
 -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통계정보의 구축과 관리 활용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임. 통계 정보의 수집 방안, 품질 관리 뿐만 아니라 체계적 관리와 활용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행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법률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통계 행정의 변화와 이상 실현에 있어 법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근거법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정의

【조문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공간통계정보자원”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 자원 및 정보기술 등 일체의 자원을 말한다.

3.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단위통계공간”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 관리를 위한 최소단위 지역의 지상 및 지하의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취지】

- 법률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의 정의는 언어의 사회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공간통계정보’는 기존 법률에서 정의된 적이 없는 용어이므로 본 조항을 통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법률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해양·대기 등 시간 및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란 다른 공간정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공간

정보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국가공간정보기반”란 국가가 국토정책수립, 행정과 공간정보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체계, 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7.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국가공간정보기반과 활용체계를 말한다.

9.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형도·지적도·해도 등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10.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공간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취득·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에 유일하게 부여하는 공간정보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해양·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이를 다른 정보 또는 기술과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의 획득·처리·활용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유비쿼터스 도시(u-city) 등 첨단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관련사업

-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솔루션, 서비스 등을 말한다.
-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 **통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x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통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계 및 통계 자료의 의미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간통계정보의 개념이 포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즉 통계법상 통계는 ‘수량적 정보’로 정의되어 있는 바 ‘공간통계정보’와는 취지가 다르나 넓은 의미에서 통계법상 통계의 포함될 수 여지는 있음.
- 공간과 통계정보가 결합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기 위해 공간통계정보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근거 지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념은 IT기술과 결합된 보다 구체화된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입법례】

-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4.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조문해설】

- 법률 용어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공간통계정보’는 현행 법(안)에서 최초로 현시되는 용어이므로 본 조항에서 정의 규정을 두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헌법적 요청에도 대응하는 것임.
- 제1호의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광 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하는 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부분에 의미의 핵심이 있음.
 - IT기술과 결합하여 시스템화 되었다는 점이 기존 통계법에서 정의한 수량적 통계와 구분되는 표지라고 할 수 있음.
 - 통계정보를 담아내는 새로운 틀로서 공간을 설정하고 공간 위에 입체적으로 유용한 통계정보를 탑재하여 한층 수준 높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정된 개념임
- 제2호의 공간통계정보‘자원’과 제3호의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제1호의 공간통계정보의 정의를 반영한 조항임. 특히 기존 법률에서는 통계의 시스템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바 본 법률에서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본 조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의는 제4호의 단위통계공간임. 단위통계공간은 공간통계정보 관리를 위한 최소단위 지역의 지상 및 지하의 공간으로서 공간통계의 생산과 관리, 활용에 있어 동일한 최소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도출된 것임.
 - “단위공간통계”는 기존 조사구, 집계구나 행정 경계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공간통계정보 관리를 위한 최소단위’로 상정한 것임.
 - 단위통계공간의 의미는 최소단위를 설정하여 표준화에 유용하도록 하는데 있음. ‘하나의’ 최소단위를 활용함으로써 통계청이나 국토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호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본 단위공간통계는 지상과 지하의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보 호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단위 설정과 분류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심의 확정되어야 함. 즉 단위공간통계의 개념이 특정 기관의 우

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함.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틀로서의 최소 단위는 다른 정보(특히 GIS)와 결합하여 제공될 때 각 정보의 특성이 가지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타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 본 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법 제8조의 공간통계정보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통일된 최소단위공간의 설정은 공통분모가 되는 밑바탕이 되어 다른 정보와의 연계 및 표준화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적용범위

【조문 내용】

제3조(적용범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공간통계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지】

-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전담자에 의하여 최소한의 인원에 의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함. 공간개념이 결합되어 보다 유용성이 증폭된 공간통계정보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관리상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 조문을 삽입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공간정보산업 기본법안 제22조(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제6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통계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만 한정하여 생산 유통할 수 없다고 정하여 여타 기밀을 요하거나 특수하게 관리되어야 할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다른 공간 정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거나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는 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공백이 예상된다.
 - 통계법 제24조는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야한다고 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위와 같은 내용 통해 특수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내용을 담고 있어 세밀하게 내용을 분류하여 행정정보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들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동적으로 각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음.

【입법례】

-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

획·조정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리정보의 공개)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문해설】

○ 국가 안정 보장과 관련된 정보와 국가 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공간통계 정보에 대해서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본 법률의 적용 대상 통계정보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여 해당 정보의 부적절한 유통으로 인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수집, 작성 등에 관한 분담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중복을 방지, 효율화를 꾀함.

- 우리나라는 헌법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국민 생활의 필수조건인 기본권도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은 한계로 작용함.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위해 활용되는 통계 정보 및 각종 정보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및 자료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규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임.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 내용】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취지】

- 통계법과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체계를 규정하고 여타 법률들과의 관계에서 공간통계정보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규정하여, 법률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함. 이로써 법규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며 법률간 위상을 정립하여 효율적 정보 수집 및 생산 등의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하여는 통계법 적용(일반법으로서 통계법의 기본적 역할을 제시)
 - 공간통계정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특별법의 지위에서 공간통계법(안)을 적용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통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에서는 단순히 해당 법률의 규율내용이 규율대상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의 적용 법률임을 천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공간통계정보 법안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통계정보의 규율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통계법에 따른다고 하여 통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 하면서 특별하게 공간통계정보의 생산, 처리, 수집 등에 관하여는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그 실용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입법례】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해설】

- 본 법률은 공간통계정보법(안)의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법률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음.
- 공간통계정보법(안)은 통계법과 더불어 통계관련 법령으로서 지식사회로의 발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통계정보의 수집 및 분석 생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본 조문은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위상에 있어 통계법을 보완하여 통계법의 역할과 위상을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보조하려는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음. 즉, 법률(안)은 통계법을 모법으로 하여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특별 분야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통계정보와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고 특별하게 규율하는 공간통계정보를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특수성에 적합하게 규율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간통계정보법(안)을 적용하도록 함. 이로써 각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규율 자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 외의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법률안이 우선 적용되도록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였음.
- 즉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 정립하였음.

5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조문 내용】

제5조(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공간통계정보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 공간통계정보의 정보기반으로의 발전
3. 통계의 정확성 및 유용성의 제고
4. 공간통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5. 민간참여 및 시장의 활성화

【취지】

- 본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분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본 조항은 이 중 정책 수립에 관한 것임.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정보 기반으로의 활용을 위해 공간통계정보 정책을 세워야 하는바, 이 때 민간 참여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적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통계의 정확성과 유용성 제고, 안전한 관리도 함께 고려하도록 5가지 기본 원칙을 범정하였음.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6조(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4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3.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연구·개발
 4.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 및 유통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7.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국가적 표준의 관리(산업표준, 절차표준, 자료표준, 유통표준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
 8.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9. 위성원격탐사와 위성측위에 관한 시책
 10. 그 밖에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사항

③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8조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④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 ⑤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으며 정책 수립과 기본 원칙에 대한 방향 제시는 누락되어 있음.
- 통계법은 통계 품질의 제고를 위해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제8조), 정기 수시 품질 진단(제9조, 제10조), 자체통계품질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법안은 기본 원칙의 하나로 3. 통계의 정확성 및 유용성의 제고를 명시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활용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성 제고에 대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함.
- 법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본 법안은 통계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통계법상의 품질진단 조항은 공간통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도 적용됨.

【입법례】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해설】

-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으로 정하여 공간통계정보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문에서는 5가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공간통계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추구해야 하며, 정확성과 동시에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시 노력해야 함.

-
- IT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통계행정의 변화인바 정보사회에 있어서 통계정보의 역할 제고하고 나아가 정보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전자(digital)화된 정보의 역기능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간통계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정책 수립시 반영해야 함.
 - 민간 참여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간통계정보 체계의 마련 및 운용을 통해 정보화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제의 보탬이 되도록 함.

6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조문 내용】

제6조(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매년 갱신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
3.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및 변경 등 관리의 방법과 절차
4. 분야별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체계
5. 공간통계정보자원의 확보 및 배분
6.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투자의 활성화 등 민간참여
8.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9. 전문인력의 수급대책
10.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본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분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본 조항은 이 중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것임
- 기본 계획의 심의 확정 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법조문을 통해 명확하게 적시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6조(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4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연구·개발
 4.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 및 유통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7.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국가적 표준의 관리(산업표준, 절차표준, 자료표준, 유통표준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
 8.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9. 위성원격탐사와 위성측위에 관한 시책
 10. 그 밖에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5년마다, 본 법안은 3년을 기본단위로 매년 갱신.
 - 주체는 정부로 동일함.
 - 포함될 내용에 있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10가지, 본 법안은 제5조에서 원칙과 방향을 5가지 설정 한 후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11가지를 제시(법안 제6조)
 - 수립 방법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중앙행정기관 부문별 작성 ->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 -> 위원회 심의 확정(령에 의한 예외 근거 마련 : 제3항)

【입법례】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

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 중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
-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난 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해설】

-
- 정부가 제5조 기본 원칙에 따라 수립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법제화 함.
 - 현실과 수집되는 통계정보와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고 정보의 가치가 높은 상태로 제공하고, 더욱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원칙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본계획에는 공간통계정보의 핵심내용들에 관하여 법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음.
 - 제3항에서 기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0가지 사항을 법정하였음. 인적 구성이 바뀌더라도 법률의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시 반드시 심의해야 할 주제들을 범문으로 확정해 두었음.

7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조문 내용】

- 제7조(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정부가 제5조에서 수립한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는 기본 계획을 제6조에 따라 수립하면,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본 조문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시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 기한과 변경, 수정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3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일괄 편성 및 배정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와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조정) ① 제8조에 따라 관리기관 간에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총괄기획·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장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에 예산 관련 조항이 추가적으로 있는바 유의할 부분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복투자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괄하여 예산신청을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을 일괄 편성 및 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 시행 계획의 제출을 받고 각 행정부처간의 협의를 권고, 조정함. 공간통계정보법률(안)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도 위원회에 귀속됨.
-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공간통계정보법률(안) 제9조에서 공간통계정책협의회를 두어 기관간의 조율 역할을 일부 담당하도록 하였음.

【입법례】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 중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난 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하였음.
- 시행 계획이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고 각 행정부처의 소관 업무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매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여(제2항), 필요시 위원장이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각 행정부처의 장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각 행정부처의 소관 업무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특성 및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어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행정부처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갖도록 하여 정책협의회와는 별도로 각 부처간 입장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8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

【조문 내용】

제8조(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 ①공간통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평가 및 조정
4.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통계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취지】

- 본 조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및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서의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문임
- 이를 통해 공간통계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10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 관련 정책,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의결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제7조제3항에 따른 일괄요청 예산
 4.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사항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성원격탐사와 위성측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변경
 8.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7인 이상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
 2. 기본공간정보(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 분과위원회
 3. 표준화분과위원회
 4. 기술분과위원회
 5. 산업육성 및 유통분과위원회
 6. 인력양성 분과위원회
 7.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위원회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과위원회

⑧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 공간정보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두고 있음
- 공간통계정보 역시 관련 주요 계획, 정책의 평가 및 조정,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있음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전담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간통계정보법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입법례】

-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6조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촉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자원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해설】

- 위원회조직은 업무 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의견의 불일치나 마찰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조직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전문지식과 경험 배경 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의사결정 구조임
-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중단기 계획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대표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조직이 필요하며, 본 조항은 합리적 집단 의사결정구조로서의 위원회조직의 구성, 운영 및 회의진행 방식 등에 관한 근거를 제공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의견 조율과 업무 분담 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위원회는 법 제6조와 제7조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확정하고 정책을 평가 조정하며 제2조 4호의 단위공간통계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함.

9 공간통계정책협의회

【조문 내용】

제9조(공간통계정책협의회) ① 공간통계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통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간통계정보의 표준화 및 기술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2. 공간통계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한 실무 협력
3. 공간통계정보자원의 교류
4. 그 밖에 공간통계정보정책에 관한 건의

② 협의회는 공간통계정보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에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협의회에 공간통계정책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본 조문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세부 공간통계정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협의체적 조직으로서의 공간통계정책협의회의 기능, 구성, 하위조직 등에 관한 근거 조문임.
- 정책의 효율성과 현장성, 실무성 등을 담보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 중심의 정책추진의 근거를 확보함.
-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과 정보를 생산하는 부분,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이 실제 정보 활용에서 중요시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담 체계가 유기적으로 논의 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통계법 시행령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

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15일”을 “10일”로 본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23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 산업계와 학계 등을 포함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통계법 제28조는 통계작성을 위해 작성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계작성기관의 협의 요청에 대해 통계청이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 절차상 일방적이고 제한적 협의구조를 제시하고 있음
 - 국가정보기본법안 제23조는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활용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협력체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 공간통계정보법안 제9조는 공간통계정책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정보의 표준화 및 기술기준, 연계 및 통합, 자원의 교류 등 광범위한 사항에 관해 공간통계정보정책의 관장기관의 부서장들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됨

【입법례】

-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 훈령 제220호) 제1조(목적) 정부의 주요 인권 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

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요한 국가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정부대책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의장은 사안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계된 소관 부처 소속 위원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의장은 협의·조정된 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④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실무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회는 인권에 관한 특정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그 이행의 연구를 위하여 특정분야와 관련된 부처의 소속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회의에서 지정한 특정 주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운영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특정주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49조(정보화책임관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과 필요한 정보 등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문서감축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여러 기관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사업의 관라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향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회는 의장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해설】

- 정책협회의는 정책결정의 다음 단계인 정책집행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들의 상호협력 및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 조직 구조임
- 협의체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집단이 상설화된 구조에서 상호간의 의사교환, 갈등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주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본 조항은 협의체 조직의 상설화를 통해 공간통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10 연차보고

【조문 내용】

제10조(연차보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상세히 기록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간통계정보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전기통신기본법 제6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4조 (연차보고등)** ①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5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조와 보급 능력이 국가나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행위를 담은 공공기록은 그 가치 면에서 기업 등의 민간의 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연차보고서의 작성으로 통해 이를 보존하고 활용토록 함.
- 연차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정부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기 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11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조문 내용】

- 제11조(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①통계청장은 단위통계공간을 기초로 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 ②통계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 분류체계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통계청장은 분류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최적의 분류체계가 작성·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④분류체계의 작성과 의견조회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분류체계란 공간통계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의 양식으로, 정보의 관리와 보급 및 이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체계가 필요함.
- 분류체계는 통계를 담는 공간의 다양한 그릇을 의미하며 생산과 이용 모두에 있어서 진정한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에 관하여 통계에 관한 가장 세밀한 분류 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는 통계청장에게 분류체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함.
- 효율적인 분류체계 설정을 위해서는 시스템 전문가 등 실무자 및 실제로 활용하는 인력의 의견 및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의사수렴을 위한 절차적 방안을 마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절차)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표준분류항목표

제36조 (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사유 및 내용) ①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 국내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 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 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 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37조 (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
- 공간통계정보법률안과 유사한 관련법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정으로서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공간이라는 기반 위에 다양한 통계정보를 입체적으로 결합시켜 공간통계정보를 구축하고 형성된 공간통계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수요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요인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조문해설】

-
- 공간통계정보의 최소단위인 '단위통계공간'은 활용 목적에 맞춘 별도의 분류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이용 활성화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야 함.
 - 개인 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관리와 보급 및 이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임.

-
- 기존 통계법 하에서도 조사구, 집계구의 분류 개념이 있는바, 참고가 됨.
 - 분류체계의 개념자체는 추상적이거나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사용될 때에는 사용빈도 및 유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 최적의 분류체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실제 통계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 통계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모두가 만족스러운 분류체계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함.

12 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

【조문 내용】

제12조(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의 방식
2. 자료의 형태
3. 분류체계
4. 자료의 분석방법
5. 보급 및 유통의 방법
6. 적용기술
7.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취지】

- 기본적인 통계정보와 더불어 각종 행정기관에서 작성되는 통계정보와 연동되기 위해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활용으로 위해서도 필요하며 통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서도 표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표준화의 일반적 책무는 범정부적으로 부여하여 기존 정책과의 조화를 보장함.
- 공간통계정보시스템적 이용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제도를 도입하였음.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①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지리정보체계관련 표준의 개발 및 보급
 2. 지리정보체계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도입
 3.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등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거나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채택한 제품을 제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19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고 상호 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 또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② 공간정보 공유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관련 표준 또는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또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의 표준 또는 기술적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의 공간정보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 연구 및 개발
2.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 도입
3. 공간정보 관련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관련 시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10조제7항제3호의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표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표준 준수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법과 표준과 관련된 다른 법률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 표준화에 대한 조문들은 정보화 관련 법령들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음. 컨버전스 경향을 반영하여 정보를 표준화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 국제 표준규격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도 노력할 필요성은 재론이 필요치 없을 것임.

-
- 기존 법령들은 표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언급이 없는 반면에, 공간통계정보법안의 경우 공간통계정보관리 기술에 관하여 자료의 작성 방식, 분류체계, 자료의 분석 방법, 관리 등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공동활용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문해설】

-
- 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의 표준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정부가 주체로 나서 공간통계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할 것을 법정함.
 - 공간통계정보서비스의 성패는 자료의 생산부터 이용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정립여부에 의존함.
 - 관계행정기관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인적 구성을 가진 법 제8조의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담보됨.
 - 각 행정부처의 장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제2항)
 - 기술기준에서는 통계작성의 방식, 형태, 분류체계, 분석방법, 유통방법, 적용기술 등에 관하여 세밀한 기준을 제시토록 명시하였음. 즉 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는 여러 가지 행정정보와의 연계와 결합을 통한 활용이 중요한 요소인 공간통계정보의 특성상, 공동이용과 호환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부분들이 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사항을 법조문에 규정하고 있음.(제3항)
-

13 인력양성

【조문 내용】

제13조(인력양성)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관리에 따르는 여러 전문분야의 인력 양성과 투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각종 정보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필요한 인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경제 활성화 등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관련 중·장기 전문인력의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산업계·학계 등의 협동교육과정 개설
 4. 교육기관에서의 지리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 **통계법 제8조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6조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의 기획, 조사, 처리, 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2.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4.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5.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
- 기타 법령들이 정보를 표준화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 국제 표준규격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도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표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언급이 없는 반면에, 공간통계정보법안의 경우 공간통계정보관리 기술에 관하여 자료의 작성 방식, 분류체계, 자료의 분석 방법, 관리 등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공동활용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례】

-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
-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강사료와 수당
 -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6조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안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사이버안전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
 - 2. 사이버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자
 -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 5.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영양·위생관리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조문해설】

-
- 제1조 목적에서 밝혔듯이 본 법은 공간통계정보는 국가적 정보의 기반으로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간통계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법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숙련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큰 재론의 여지가 없음. 나아가 IT 산업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공간통계정보의 인력 양성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와 이를 통한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공간통계정보의 경우 정보화시대 활용가능성이 매우 커다란 소재로서 관련 인력의 수급이 매우 긍정적으로 요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정부 활성화 및 국민의 정보 활용성을 높여 수요자의 만족의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수급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통계정보 뿐만 아니라 기반이 되는 공간 정보와 각 정보의 유기적 결합과 손쉬운 정보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관계중앙행정기관 들은 분야별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14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 내용】

제14조(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공간통계정보가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처리 및 취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취지】

- 정보화 시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적 규정을 마련함.
- 공간통계정보서비스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권리보장을 명시, 다만 통계정보의 품질에 관한 책임 논란을 완화하여 적극적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
- 여타 법률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비한 보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 본 법률에서는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에게 처리 취급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공간통계정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중시키고 있음.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들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상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상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보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간통계정보법안상의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는 공간정보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노출을 사전적으로 억지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념적 가치를 공간통계정보라는 특수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위치정보의 보호는 특히 지리적 관점에서 특정한 소재의 파악 및 현황의 문제로 정보의 내용적 보호라기보다는 정보대상주체의 동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입법례】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29조(공간정보 등의 보호)**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과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

제32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해설】

-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공간통계정보 관리자에게 공간통계정보의 처리 및 취급시의 주의의무를 부과함.
-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추정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
-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권리침해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함. 즉 공간통계정보 관리자에게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간통계정보를 다루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환기함.
- 법 제12조의 분류체계 설정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과실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경우에는 제14조와 연계되어 책임을 질 수 있음.

15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및 생산

【조문 내용】

제15조(공간통계정보의 수집 및 생산) ①통계작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은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한 공간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국 단위의 공간통계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④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통계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통계정보 생산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취지】

- 통계작성기관이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분류체계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운영성을 높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공간통계정보 생산을 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를 규정하고, 통계청장에게 전국 단위의 공간통계정보 생산 의무를 부과하여 수집된 정보가 공간을 매개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수요자 친화적인 통합된 형태의 공간통계정보가 생산되도록 유도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

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14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거나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형·해양·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하고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통합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그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본공간정보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법 제25조의 국토공간정보센터(이하 “국토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공간정보센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에 수정이필요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공간정보센터에 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및 수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이나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조사하는 내용은 없어 얻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거나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공간통계정보 법안에서는 기존의 통계정보를 공간에 장착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정보수집을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하였음.

○ 또한 통계청장에 의한 관리지침 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축적된 통계정보의 생산 및 수집, 관리에 이르는 각종 전문성을 공간통계정보의 수집과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통계정보의 생산에 대하여 통계청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다른 행정기관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였음.

【입법례】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과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를 기본지리정보로 선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고시된 기본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와 그 구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11조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하면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간통계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정확성 및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통계청장은 이와 같이 작성된 공간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국 단위의 공간통계정보를 생산하여야 하며, 통계작성기관에게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간통계정보법률안에서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 공간통계정보의 생산을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제5항)

16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조문 내용】

제16조(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정확한 생산을 위한 표준업무지침의 개발협력
2. 공간통계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한 행정지원
3. 공간통계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 교류
4.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통계청장은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통계정보 공동활용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본 법은 공간통계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활용 유통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규범적 목표를 삼고 있는바, 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제17조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참여를 포함한 보급 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8조에서는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의 공개를 법정하면서 국민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운영 및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조는 생성된 공간통계정보의 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위한 통계청장의 지침제정 역할에 관한 근거 조문임.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24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관리, 도시계획, 지적관리, 자원개발, 연안관리, 해양개발, 환경보전, 농림, 건설관리, 수자원관리, 교통체계, 물류,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이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24조는 공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동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함.
- 공간통계정보법안 제16조는 생산을 위한 표준업무지침 수립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교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생성된 공간통계정보가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함.

【입법례】

-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추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 ②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 ④행정기관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은 당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구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기상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요청 대상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정부투자기관, 대학 및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 등으로 정함.

(3)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 정부투자기관, 대학 및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 등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조문해설】

-
-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생산한 정보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 또한 정보의 생성과정에서의 표준화, 유통과정에서의 기관간 기술교류, 그밖에 공동활용을 위한 필요한 시책 및 주관기관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 정보의 공동 활용은 자연적으로는 업무 영역의 분리, 기관이기주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침해문제, 기관의 업무부담의 가중문제 등으로 인해 기관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법으로 시책 강구의 의무를 부과하였음
 - 나아가 공동활용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본 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 공간통계정보의 정확한 생산을 위한 표준업무지침의 개발협력 2. 공간통계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한 행정응원 3. 공간통계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 교류 4.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통계정보 공동활용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7 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조문 내용】

- 제17조(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가 산업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가공 및 활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공간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정부는 공간통계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공간통계정보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선정취소, 그 제공과 이용 또는 활용의 요건, 방법, 절차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본 법은 공간통계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규범적 목표를 삼고 있는바, 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제17조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참여를 포함한 보급 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8조에서는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의 공개를 법정하면서 국민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운영 및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식정보시대, 공간통계의 경제적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공간통계를 활용한 BM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준비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 기대 효과가 상당한 상황임.
- 본 조는 구축한 공간통계정보가 실질적으로 산업에 이바지 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집 작성에 그치지 않고 보급 확산하기 위한 근거 조문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민간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공간통계정보에 대해서는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으며, 각 공공기관에 위임된 상세화 의무를 본 조문을 통해 실행함. (해당 법률을 구체화하는 조문으로 구성)

【입법례】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법 제25조의 국토공간정보센터(이하 “국토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공간정보센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에 수정이필요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공간정보센터에 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및 수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유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에 대한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결제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시스템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112조 (사업)** ①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전파법시행령 제88조(협회의 사업)**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3조 (지역발전정책국)** ① 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통계의 관리 및 정보 제공

【조문해설】

○ 예컨대 ‘구글 어스’의 성공은 공간통계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산업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기존 통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방증함.

- 본 조항에서는 공간통계정보가 생산에 머물지 않고, 확산 보급되어 실제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이를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 통계청장은 보급 확산을 위해 민간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2항).
- 공간통계정보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공간통계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항) 이 때 정부는 관리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문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구체화하여 입법하였음(제4항)

18 공간통계정보의 공개

【조문 내용】

제18조(공간통계정보의 공개)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하거나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공간통계정보의 공개 및 민간위탁 또는 협력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본 법은 공간통계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규범적 목표를 삼고 있는바, 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활용 것을 규정하고, 제17조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참여를 포함한 보급 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8조에서는 국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의 공개를 법정하면서 국민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운영 및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간통계정보 중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 ①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중략)..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고 하여 공공기관 보유 공간통계정보의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나아가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하여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본 조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 된 것임.

○ 통계법에서는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는 제한된 상황에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통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통계정보는 학술 연구를 위한 경우외에도 전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정보임.

이에 본 조문에서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서 통계청장의 판단으로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공간통계정보법안 제4조 단서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있어서의 익명화, 개인정보 보호 등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본 조항은 통계법의 특별법으로서 기존 법령의 구체화이며 상충되는 바가 없음.

【입법례】

-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① 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통계의 종류 및 내용
 - 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 ② 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③ 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 또는 통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증명서 또는 통계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 2.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
-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②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을 제외한 다)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국세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임명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지명한 자 4명
 - 2. 국세청장이 법률·통계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위촉한 5명(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정한다.
- ④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할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심의 등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국세통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법 제85조의6제3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이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112조 (사업)** ①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 교육·지원사업
 -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전파법시행령 제88조(협회의 사업)**
 -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
-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3조 (지역발전정책국) ① 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통계의 관리 및 정보 제공

【조문해설】

-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별도 조문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본 조문은 공간통계정보에 있어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것임.
- 제1항에서는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공간통계정보인 경우, 국민의 신청 없이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제2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의무화한 공간통계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 경제 활성화, 관련 기술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19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 내용】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위원회가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

③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자격이나 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본 조는 공간통계정보의 제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근거 조문임.
-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통계청에 모든 업무가 집중될 경우 발생하는 과부하와 인력 부족, 교육과 숙련도 제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을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관리)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그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본공간정보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또는 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제35조(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업무 전담인력 10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비영리법인일 것
4.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③ 국토해양부장은 지원기관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공간정보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3. 공간정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공간정보관련 품질인증
-

-
- 7. 공간정보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 8. 공간정보산업의 분쟁 조정
 -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14조, 제15조는 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사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제35조는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의 요건 및 수행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공간통계정보법안 제19조는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필요성과 함께 기관지정의 취소 요건을 열거하고 있음.

【입법례】

-
- 지방세법 제195조의3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①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잡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수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해설】

-
- 공간통계정보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를 위해서 통계청의 기본적인 조직으로 수행할 수도 있겠으나,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와 더불어 공간통계정보관리라는 새로운 업무의 관장으로 인한 업무의 과다로 부정적 결과 발생을 방지하고 통계청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하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효율성면에 있어서도 전담기관을 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 디지털화된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관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함.

- 전담기관에 부정당한 사유를 발생케 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비하였으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가 매우 중요한 통계정보의 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함.

20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조문 내용】

제20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전 과정 관리의 전자화
2. 공간통계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3. 이용자 중심의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운용
4. 공간통계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③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요건과 운영계획 및 이용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공간통계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간통계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공간통계정보법(안)의 목적 실현을 위해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핵심적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현재 서비스 중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근거를 규정함은 물론,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시스템의 보호에 관한 사항, 시스템과 서비스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실질적 정보시스템법으로서의 효용제고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대통령훈령 제200호 2007.12.6

-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2008.3.4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17호 2008.6.12
 - 위성항법보정시스템전국망구축및운영에관한규정 국무총리령 제409호 2000.12.7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조문해설】

-
- 공간통계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통계청장의 의무 사항으로 법정함으로써 운영 주체와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음.
 - 2008년 11월 현재, 통계 네비게이션이 운영중이나, 법률적 근거와 구체화된 규범적 통제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바, 향후 공간통계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
 - 공간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중복조사, 부처별 단위시스템 구축, 기관간 정보공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 낭비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저하됨
 - 따라서, 범정부적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공간통계정보의 생애주기(데이터 집적, 가공, 활용, 보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 함.

21 공간통계정보센터

【조문 내용】

제21조(공간통계정보센터) ①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산하에 공간통계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 공간통계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
4.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통계청장이 지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계청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간통계정보센터를 구축함.
-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공간통계정보 서비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반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 공간통계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실물적 기반을 마련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6조(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안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
- 유사한 내용이지만 국가 공간정보기본법안에서는 센터의 설치에 관하여는 법률안에 담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
 -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는 센터의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을 법률안에 담아 강력하게 센터의 역할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공간통계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조문해설】

-
- 공간통계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간통계정보센터를 통계청 산하 기관으로 설치하고 공간통계정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여 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공간통계정보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물적

기반이라는 위상으로 제고.

-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조문으로 명확히 필수적 요소를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필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

【조문 내용】

제22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는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해킹 등 외부의 침입에 관리적 기술적으로 대비가 필요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9조(공간정보 등의 보호)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과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

-
- 공간통계정보법안의 경우 공간통계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인 시스템의 안정과 보안을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재인 DB의 안정적 공급과 보안에만 집중하여 소재를 구동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방기하는 공백이 예상된다.

【입법례】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 ①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 공간통계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등의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물적 기반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2중 3중으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모함.

23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

【조문 내용】

제23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 ①통계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접근권한관리 및 사용기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통계청장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공동이용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를 통계청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기관이나 다른 기관 등 특히, 국토부의 GIS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유용한 통계정보가 여타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어 국민생활이 보다 윤택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0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의 공간정보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 연구 및 개발
2.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 도입
3. 공간정보 관련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관련 시책과 지속적 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10조제7항제3호의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표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③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이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

여야 한다.

-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안 제12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규격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공동이용에 필요한 규격 등을 국제표준으로 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규격의 고시, 국제표준화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간통계정보의 경우 필수적으로 통계정보와 공간 정보와의 결합, 기타 다양한 행정 정보나 통계청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되는 통계정보와 결합하여 구성되게 되므로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안이나,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안의 경우 정보의 표준화에 집중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정보를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의 공동이용과 더불어 유용한 정보의 결합과 가공이 가능 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상황이다.

【입법례】

-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①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관련 표준의 개발 및 보급
 2. 지리정보체계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도입
 3.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등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거나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채택한 제품을 제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문해설】

-
- 공간통계정보의 특성이 다양한 정보의 결합과 가공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라고 하였을 때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목적과도 연계됨.

이를 통해 사업이나 정보의 중복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통계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반드시 허락하여야 함
- 통계청장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쟁의 이전에 ADR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음.

24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이용요건 등

【조문 내용】

제24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이용요건 등)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법안 제20조)은 원칙적으로 넓은 범위로 개방되도록 할 것임. 그러나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의 부정확한 용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되, 요건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고, 게시 방법을 법정하였음.

【입법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규정안
 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
-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21조(시험의 공고) ⑤ 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시험의 공고) ⑤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법안 제20조)은 이용자 중심의 공간통계정보시스템으로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운용을 저해하거나 효율적 관리, 이용에 장애가 되는 행위, 사회적 부작용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 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2항에서는 이용 요건의 부지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시 요건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는바, 구체적인 방법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고 법정하였음. 공공기관의 공지 수단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최근 개정 법령들의 경향임(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등 참조)

25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내용】

-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법인(국가가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권한의 위임·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나아가 민간에게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행정 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실효성 제고)
 - 절차의 간소화(효율 달성)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통계법 제37조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 또는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

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전수 및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5. 제31조의 통계자료의 제공
- **인구주택총조사시행규칙 제18조 (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2. 조사서류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3.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4. 조사표의 입력·내용검토 및 보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14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거나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형·해양·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하고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통합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그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본공간정보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간통계정보법안은 통계법이나, 인구주택총조사 시행규칙 등과 유사하게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일부를 전문성과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법인이나 개인에게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하여 위임이나 위탁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법령에 녹아내고 있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의 경우 특별히 사무, 업무의 위임이나 위탁의 표제를

만들어 규정을 마련해 놓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정하고 있어 업무의 범위나, 수입, 수탁 기관의 범위 등도 불명확 점이 존재함.

【입법례】

-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리원 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자
 - 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문해설】

- 이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은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권한의 일부를 보다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업무의 효율적 전문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을 포함한 법인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듯이 해당 기관의 권한을 일부 소속 기관에 위임하고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든가, 민간에 맡길 경우 경쟁관계의 선효과로 말미암아 실용성이 담보되는 등의 경우를 모색할 수 있어 일부 업무에 대해서 법인이나 개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기관 중심의 행정처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발 다가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위임 위탁 규정은 날로 서비스의 품질이나 범위가 향상되고 확대 되며 계속해서 관리 시스템도 발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기관의 노력을 모든 것에 투여함으로써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고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26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제고

【조문 내용】

제26조(공간통계정보의 품질제고) ①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해당 공간통계정보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통계정보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 업무 상 주의의무를 다 하고 당해 공간통계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에 관한 책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제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간통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정보라는 속성상 그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이에 공간통계정보의 품질과 관련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함.
- 통계정보의 품질에 관하여는 통상의 업무상 주의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을 완화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통계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보장. 최선을 노력을 다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통계 오류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일부 법적인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줌.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통계법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 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

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공간통계정보법안상의 품질제고는 근본적으로 통계법상의 품질제고와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모범으로 작용하게 될 통계법의 내용을 공간통계정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품질제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것
 - 나아가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제고에 필요한 이용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통계행정의 객체인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제로 이용자의 협력과 협조를 통한 민주적인 공간통계정보관리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

【입법례】

-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제10조(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가공공간정보, 공간정보 관련 서비스·솔루션·기기 등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토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해설】

- 신뢰성 있는 공간통계의 생산이 활용의 전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여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간통계정보관리자에게 관리적 기술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 함.
- 공간통계정보의 특성상 최선을 다하고도 공간통계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자로서는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위축되기 쉬운 바, 주의의무를 다하고 책임내용에 관한 사전고지를 한 경우 공간통계정보 이용자에 대한 책임감면이 인정되게 함.
-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제고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공간통계정보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계청장이 다하도록 함.

27 벌칙

【조문 내용】

제27조(벌칙) 이 법에 의하여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취지】

- 공간통계정보에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바, 관리하는 자의 관리 책임이 무거움. 이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형사벌을 과하도록 규정함.

【현행 관련 법규의 조문】

- 통계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를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현행 통계법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계법 공간통계업무를 관리하는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를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을 형법상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등 뇌물 관련 규정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본 조문은 뇌물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임.
- 현행 형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다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이 일부 가능함. 본 조항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하여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에게 업무상 비밀 누설을 금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임.

【입법례】

- 관세법 제327조의3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①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2. 국가기관이 조세징수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해설】

○ 공간통계정보는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민사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음.

○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신분범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만이 처벌 대상이 됨. 그러나 본 조항에서는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음. 이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의 법정형과 그 형벌의 무게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Ⅱ. 공간통계정보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공간통계정보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공간통계정보자원”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 재원 및 정보기술 등 일체의 자원을 말한다.
3.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단위통계공간”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 관리를 위한 최소단위 지역의 지상 및 지하의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공간통계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등

제5조(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공간통계정보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 공간통계정보의 정보기반으로의 발전
3. 통계의 정확성 및 유용성의 제고

4. 공간통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5. 민간참여 및 시장의 활성화

제6조(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매년 갱신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
 3.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및 변경 등 관리의 방법과 절차
 4. 분야별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체계
 5. 공간통계정보자원의 확보 및 배분
 6.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투자의 활성화 등 민간참여
 8.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9. 전문인력의 수급대책
 10.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 ①공간통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평가 및 조정
 4.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통계청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자격 및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위원회의 운영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간통계정책협의회) ① 공간통계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통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간통계정보의 표준화 및 기술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2. 공간통계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한 실무 협력
 3. 공간통계정보자원의 교류
 4. 그 밖에 공간통계정보정책에 관한 건의
- ② 협의회는 공간통계정보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에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④ 협의회에 공간통계정책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차보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간통계정보의 관리

제11조(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① 통계청장은 단위통계공간을 기초로 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 분류체계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분류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최적의 분류체계가 작성·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④ 분류체계의 작성과 의견조회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 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통계작성의 방식
 - 2. 자료의 형태
 - 3. 분류체계
 - 4. 자료의 분석방법
 - 5. 보급 및 유통의 방법
 - 6. 적용기술
 - 7.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제13조(인력양성) 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공간통계정보가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처리 및 취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

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공간통계정보의 수집 및 생산) ①통계작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통계작성기관은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한 공간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국 단위의 공간통계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 ④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통계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통계정보 생산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공간통계정보의 정확한 생산을 위한 표준업무지침의 개발협력
 - 2. 공간통계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한 행정응원
 - 3. 공간통계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 교류
 - 4.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② 통계청장은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통계정보 공동활용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가 산업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가공 및 활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공간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공간통계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공간통계정보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선정취소, 그 제공과 이용 또는 활용의 요건, 방법, 절차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간통계정보의 공개)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하거나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공간통계정보의 공개 및 민간위탁 또는 협력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3.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위원회가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
- ③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자격이나 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제20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1. 공간통계정보의 전 과정 관리의 전자화
 - 2. 공간통계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 3. 이용자 중심의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운용
 - 4. 공간통계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 ③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요건과 운영계획 및 이용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간통계정보센터) ①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

청 산하에 공간통계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 공간통계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
4.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통계청장이 지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계청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 ①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 ① 통계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접근권한관리 및 사용자기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공동이용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이용요건 등) ①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간통계정보의 수집·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법인(국가가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권한의 위임·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간통계정보의 품질제고) ①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해당 공간통계정보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통계정보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 업무 상 주의의무를 다 하고 당해 공간통계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에 관한 책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③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공간통계정보의 품질제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간통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이 법에 의하여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간통계정보법(안) 시행령(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간통계정보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위통계공간 지정의 방법과 절차) 법 제2조 제4호의 단위통계공간은 통계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고 법 제8조의 공간통계정보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구축·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2. 공간통계정보의 활용 및 유통
3.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 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간통계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7조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조의 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시행계획 중 법 제6조의 기본계획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자격 및 선임방법, 절차

제6조 (민간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과 절차)

- ① 법 제8조의 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다음의 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토·통계·행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5. 그 밖에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의한 위원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과 운영)

- ① 협의회는 공간통계정보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부서장 12인에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② 통상협의회는 분기별 1회 통계정책관련 주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협의회는 통계청장 또는 협의회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 ④ 협의회는 협의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한다

제8조(분류체계 작성시 의견조회 방법과 절차)

- ① 통계청장은 법 제11조에 의한 분류체계 작성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다음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동활용성제고 지침의 보급
2. 공동활용성증진 관련 기술 개발
3. 전문인력 풀의 연계활용
4. 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
5. 제4호를 위한 연구개발시설·장비확보계획 및 연구개발

제10조(공간통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3항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법8조의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2.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3.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4.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
 5.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② 법 제8조의 위원회는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통계정보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공간통계 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의 위원회는 전 조 각호의 요건들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 설비 또는 장비 등을 감안하여 공간통계정보 제공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2조 (비용의 징수)

- ① 위원회는 공간통계정보 제공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 업체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보 제공을 받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 ④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공공복리의 유

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공간통계정보 제공대상자의 선정 취소)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는 선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개인정보의 보호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3. 공간통계정보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
4. 공간통계정보의 고의적 훼손 멸실
5. 기타 중대한 사유

제14조 (공간통계정보의 공개)

- ① 통계청장은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선정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에 의해 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공간통계정보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통계정보는 신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에 공개한다.
- ④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종류 및 내용
 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제15조 (공간통계정보의 민간 위탁 또는 협력)

- ① 법 제18조 제2항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하거나 위탁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의 내용을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1.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2.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3. 시스템은 표준과 기술 준수 여부
4.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
5.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6.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가능성

제16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 ① 법 제19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간정보통계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기관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7.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그 부설연구소
 8. 기업의 부설연구소
 9. 기타 공간통계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통계청장이 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와 지정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함에 있어서 그 지정절차와 취소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한다.
- ④ 법 제19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을시 통계청장은 지정된 전담기관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⑤ 통계청장은 제3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이 제출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제17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 사업의 절차 및 방법)

- ① 통계 작성 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통계정보를 법 제12조에 의한 표준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한 공간자료 및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조하여야한다.
- ③ 공간통계시스템의 구성 및 내용, 시스템의 변경은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이용의 방법 절차)

- ① 공간통계정보시스템·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및 연구개발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은 공간통계정보관련업무를 취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청장이 결정한다.
- ② 공동활용성증진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은 공동 활용자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하여 의견제시하도록 한다.
- ③ 기타 공동활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용 및 기기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단위 부서장이 공동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19조 (위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계법 제20조제1항과 법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통계에 관련된 대규모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2. 각종 조사표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3.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4. 각종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5. 통계자료의 처리 기타 조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권한의 위탁)

- ① 법 제25조 제3항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전항에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공간통계정보법(안)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간통계정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간통계정보 제공 승인 신청서) 영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의한 공간통계정보 제공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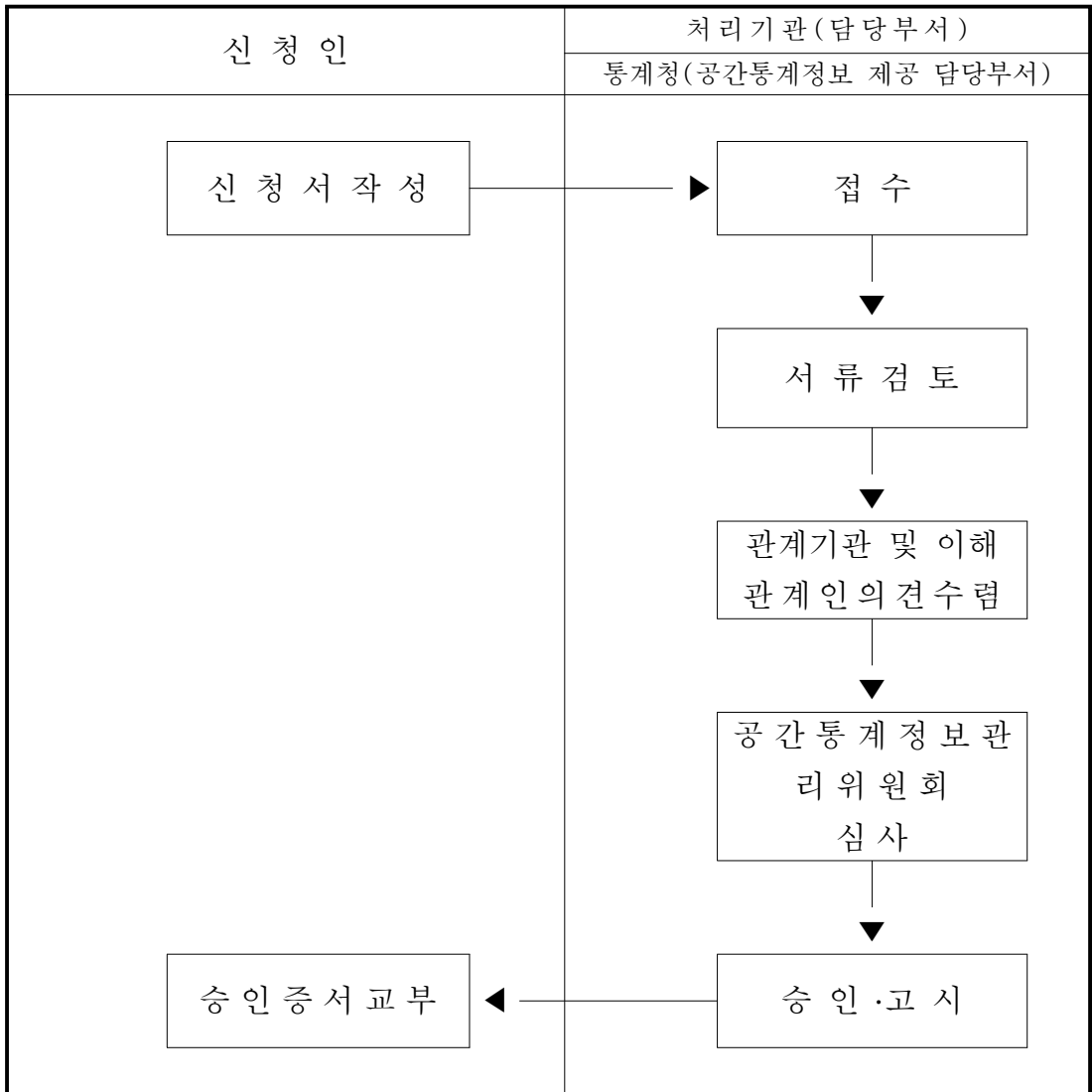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서) 영 제16조에 의한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Ⅲ.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입법 추진 전략

Ⅲ.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입법 추진 전략

제1절 법률안의 방향

1.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성격

공간통계정보법(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간통계정보법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앞서 추진방향에서 명시하였듯이 산재한 공간통계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통계정보법(안)은 통계정보 생산주체가 지속적으로 공간통계정보를 생산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공간통계정보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통계법을 기본적 위상으로 전제하고 그 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실시법적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

정리하면, 공간통계정보법(안)은 구체적 정책집행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규정하여 정책법적 성격을 지향하고, 공간통계정보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특성을 가능한 상세히 반영하여 기술법적 성격을 지향하며 통계법을 기본법적 위상으로 전제하고 그 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법적 성격을 지향한다. 이로써 공간통계정보법(안)은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이 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간통계정보법(안)의 목적

공간통계정보 생산, 운영, 보급 및 활용은 국가, 시장 나아가 국민이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 향상의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국가는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진보된 정책 의사결정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은 정보 활용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효율적·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익을 투입하여 참여가능 할 것이다. 국민의 경우 공간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통계정보는 국가정책 수립의 효율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국민경제활동에의 활용 증진 등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즉, 공간통계정보는 국가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를 실현하고, 다른 법률에서 추구하는 국가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앞서 명시한 기술법적 측면에서의 공간통계정보는 통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계관리 관점에서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즉, 기존

의 행정경계 기반의 통계정보를 보다 세분화된 단위의 경계를 이용하여 정보의 가시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지식정보를 생산 운영, 보급 및 활용에 총체적인 법률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법률안의 쟁점

1) 공간통계정보의 개념 정립

공간통계정보라는 용어는 기존 법률에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에 해당한다. 게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지리학의 발전적 모습의 일환으로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안이 2008년 12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률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면, 통계 중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것에 주목, 공간정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간에 관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이후 관련 '정보자원'과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율을 이 법률안의 핵심적 범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간통계정보, 정보자원과 정보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통계정보에 해당하므로 기존 통계법은 물론이고, 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지적법, 측량법, 수로측량법을 비롯하여 정보의 활용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전자정부법 등과 상호 관계가 문제되고 법률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조화로운 법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 정립하고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공간통계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기술 기준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분류체계는 통계를 담는 공간의 다양한 그릇을 의미하며 생산과 이용 모두에 있어서 진정한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적 이용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간통계정보서비스의 성패는 자료의 생산부터 이

용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기술기준에서는 통계작성의 방식, 형태, 분류체계, 분석방법, 유통방법, 적용기술 등에 관하여 세밀한 기준을 제시토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표준화의 일반적 책무는 범정부적으로 부여하여 기존 정책과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4) 타부처와의 소통 협력 기반 마련

공간통계정보는 정보의 생성과 활용 양면에서 모두 유관 행정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과 현장성, 실무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 지자체 등이 충분히 의견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생성된 공간통계정보를 모든 참여기관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정보의 보호와 정책품질에 관한 책임

이제까지 통계 정보는 신뢰도 높은 정보의 생성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반면 공간통계 정보법안은 빠른 정보 갱신과 활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 창의적인 통계정책의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동시에 통계정보의 품질에 관하여는 통상의 업무상 주의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을 완화하여 적극적 정책추진을 옹호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2절 입법 환경의 성숙

1. 헌법적 당위성

1) 지식정보사회 헌법적 요청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함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공간통계정보의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범적인 근거는 헌법적 요청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정보복지증진권

우리 헌법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¹⁾ 기본권으로 성격을 지닌 권리는 국가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복지증진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을 통하여 공간통계정보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 알권리의 보장

알권리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은 이미 기본권목록에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국민은 공간통계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국민의 접근권의 보장과 동 정보의 유통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본권 최대보호의무를 지닌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4)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의 실현

이와 같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통하여 개인은 공간통계의 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삶과 복지가 증진되어 행복추구권 또한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보호 규정을 통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활용증진을 통한 국민의 정보복지의 상향적 평등실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책무를 띤다.

5)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의무

우리 헌법이 비록 농경사회시대에 성안된 것이어서 아직 정보자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20조 제2항의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의무 규정으로부터 공간통계정보라는 중요한 정보자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를 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중요한 정보자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보호 및 균형개발과 그 보급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웹 2.0 시대에 있어서 양방향간의 소통구조를 지닌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은 문화국가 원리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사명이며 따라서 공간통계정보체계를 실시간적·쌍방 소통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규범적 근거마련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헌법상의 제규정으로부터 공간통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

1)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리·활용토록 하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실무적 당위성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통계와 공간의 정보(시스템)적 결합은 21세기형 지식창출의 필수적 요청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 행정체계와 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최우선 과제이다. 법치행정 국가에서 정책이 현실화되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공간통계정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렵다. 시스템의 부재가 발생하면 공간통계정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어 진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공간통계정보의 일부를 사용한 '통계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통계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의 근거법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2) 중앙기관 지자체 간의 행정협력 근거 마련

조사구와 기초 단위구 설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 기관은 물론이고 최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요청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수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구청 내에 설치되어있던 통계과마저도 폐지되는 추세라는 점이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

공간통계정보의 개념과 법률 목적을 고려할 때 유관 기관의 행정협력이 없다면 그 의의는 대폭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지속적 통계 수집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정보자원간의 연계를 위한 행정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 관련 정보자원간의 연계

공간 통계 정보 시스템이 기대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좋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양질의 지식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민관에서 수집 관리 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간통계정보가 호환되어 수집 가공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통계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

스텝, 행정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자원간의 연계가 중요함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센서스, 산업통계 등 주요통계정보와 공간정보 연계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호환 가능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활용이 필요하고 하나의 통일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는바 공간통계정보 분야에서 사용할 단일한 단위공간통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2)

4) 안정적 예산의 확보

공간통계정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며 현재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만을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다. 또한 구축한 DB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는 예산이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은 매해 예산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지속성을 위협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매우 어렵다.

법적인 근거를 가진 사업은 예산의 확보와 재정의 안정성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바 공간통계정보의 발전적 관리를 위해서도 근거 법률의 마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성과

2007년 통계법의 개정으로 통계청은 정보사회의 공공정보제공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위상에 비해 통계청 업무에 관한 집행법적 근거는 추상적이거나 체계성 미흡하다. 현행 통계법으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는바, 공간정보기반의 서비스 시스템을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행정절차와 체계 관련 정보의 보호 등 구체적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계정보서비스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21세기형인데 행정체계와 제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19세기형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제는 통계청과 현장 및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체계로 발전할 법적 기반 형성이 가능한 시대로

2) 법률에 의해서 동일 단면에서 정리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선별하고 표준화된 통계 분류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연동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규범적 강제를 위한 표준 결정에 있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과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 둘 필요가 크다.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 내부적으로도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입법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상당 부분 이루어 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사업체 기초통계 GIS DB를 구축하고 2006년에는 대전에서 통계내비게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PR 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수년전부터 준비해 왔다. 2007년 들어서는 공간통계지식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통계정보 근거법제 초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등 공간통계정보법안을 입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연구와 의견 수렴을 하였고, 2008년에는 본격적으로 공간통계정보법 제정추진 공론화를 위한 학술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³⁾

제3절 관련 법률과의 조화 모색

1. 관련 법률의 검토

1) 직접관련법률

공간통계정보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제로는 “통계법”, 현행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 활용등에관한법률” 와 “국가공간기본법안” 등이 있다. 이들과 공간통계정보법(안)과 더불어 모두 넓은 의미에서 공간통계정보를 다루고 있다. 때문에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이들과의 조화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상호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통계법은 공간통계정보법(안)의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바 공간통계정보법(안)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고,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 활용등에관한법률과 국가공간기본법안과는 이념적으로 유사한 영역이 중첩되나 규율 대상이 다른 법률을 담고 있기에 상충하는 법률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로 위상 정립이 가능한 관계라 할 수 있다.

2) 간접관련법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정보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공간통계정보관리법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물론이고 전자정부법⁴⁾등의 기본이념을 받

3) 2008년 10월에는 한국행정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공간통계정보법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공간통계정보정책의 재조명'을 주제로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으로부터 생산된 정보의 통합 활용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공간통계정보의 활용 단계에서도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을 통하여 유관부처는 메타정보로서의 속성을 가진 공간통계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각종 행정 분야에서 synergy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공간통계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연관된 법률들은 메타정보로서의 공간통계정보의 공동 활용성 증진을 꾀할 수 있는 각종 규범적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부처들간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조와 협력·업무지원 및 응원체계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법률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최근 공간통계정보 관련 입법 추진 상황

정부는 2004년 이후 매년 약 50%의 성장을 지속하여 그 규모가 2007년 약 1조 7천 억원에 달하고 있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현재의 성장추세가 지속된다면 2012년 11조 원 규모로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현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지형·지적·수로측량을 일원화하기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간통계정보법(안)의 입법추진을 위해서는 모범으로 설정된 통계법과의 위상 정립 뿐 아니라, 사전 준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의욕적으로 입법 추진중인 GIS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3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4) 국가통계정보는 국가 인프라로서 전자정부 추진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정보 공동 활용의 대상이다. 정보화촉진법 제5조 제3항 및 전자정부법 제44조의 2 참조.



2. 국토 해양부 추진 3법과의 위상 정립

1) 측량통합법과의 관계

(1) 법률안 추진 개요

5) 국회 공간통계산업진흥법 검토보고서(2008), 36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아래 공간정보 관련 2개의 법률과 달리 정부의 제출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본 법안은 공간정보 기본법, 산업진흥법의 기본이 되는 '정보의 수집원'을 관리하는 법률안이다.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 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측량제도

구 분	주무부처	범 위
측지측량 (측량법, 1961 제정)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舊) 건교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u>연안해역의 측량과</u>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
지적측량 (지적법, 1950 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제도과 (舊) 행자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에 <u>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u>
수로측량 (수로업무법, 1961 제정)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舊) 해수부)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地磁氣)·중력·지형·지질 등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하며, <u>연안의 자연환경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측량</u> 을 포함

(2)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내용

제정안이 통합법을 통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현행 측량제도는 측지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으로 3원화되어 각각 개별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어 측량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생산된 정보와 기술의 호환과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종전에는 재래식 측량 장비의 사용으로 육지와 해상간에 서로 다른 측량기준을 정하여 사용해 왔으나, 신장비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일된 측량기준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이 가능해지는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통합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정안을 통한 측량체계의 일원화로 중복측량을 배제하고 육지와 해양을 연계한 국가공간정보의 조기구축으로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국내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⁶⁾

기존 3개 법률과 통합법의 목적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로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에 이용하게 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로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간통계정보법(안)과의 관계

제정안이 3개 법률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측량기준점의 통일 등 일부 제도의 변화 외에는 현행 3개 법률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적인 규율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다.

공간통계정보법(안)과는 상충되는 영역이 부각되지 않으나, 입법과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과의 관계

6) 주영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6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JOE8J1W0Z2G7A1S9E4K6F2Q4A1G7Y
 7

(1) 법률안 추진 개요

현행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은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지리정보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 등 부처간 상호 협력·조정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이러한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공간정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간정보 관련 예산의 일괄 신청 및 관련 사업의 조정권 등 강력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정보목록의 대국민 공개 등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안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지리정보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 등 부처간 상호 협력·조정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간정보에 관한 입법이 별도로 추진 된 것이다.

2008.8.18. 권택기 의원 등 29인 제안.7) (의안번호 1800646)

2008.8.29. 국토해양위원회 회부

2008. 11.20. 위원회 상정

2008.11.25.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2)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의원 발의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 중이며 2008.11.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본 법안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법제의 근간이 될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國家地理

7) 강성천 강승규 구분철 권영진 권택기 김성태 김용태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종희 배은희 백성운 손범규 송광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원희룡 유일호 윤상현 이경재 이정선 이춘식 이해훈 주광덕 주성영 진수희

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계하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안된 것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공간정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간정보 관련 예산의 일괄 신청 및 관련 사업의 조정권 등 강력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정보목록의 대국민 공개 등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3) 공간통계정보법(안)과의 관계

국가공간관련3법 중 체계 유사도에 있어 공간통계정보법(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이다. 특히 ‘공간’이라는 용어가 주는 혼동으로 인해 양법의 상충 가능성이 높게 제기될 우려가 있다. 공간통계라는 용어는 공간정보에 비해 법률적 차원에서는 통계청에서 먼저 사용했으나 입법 발의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앞서게 됨으로 인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 입법 여부에 관계없이 입법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간통계정보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의 공간정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p>	

	<p>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유지·관리 및 공개하여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p> <p>②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p> <p>2. “공간통계정보자원”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 자원 및 정보기술 등 일체의 자원을 말한다.</p> <p>3.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구</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해양·대기 등 시간 및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p> <p>2. “기본공간정보”란 다른 공간정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p> <p>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p> <p>4. “국가공간정보기반”</p>	

<p>축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p> <p>4. “단위통계공간”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 관리를 위한 최소단위 지역의 지상 및 지하의 공간으로서 통계청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란 국가가 국토정책수립, 행정과 공간정보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 체계, 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공간통계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u>다른 법에 우선하여</u>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과의 관계는 공간통계정보법률(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음. ● 통계법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고 하여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제3조에서 적용 범위 제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입법 추진과정에서 본 조문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임.)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은 중첩 상충되는 법률

		<p>과의 정리가 미비된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다른법에 우선 적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바, 입법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p>
<p>제2장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등 제5조(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공간통계정보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 공간통계정보의 정보기반으로의 발전 3. 공간통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4. 민간참여 및 시장의 활성화 		
<p>제6조(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매년 갱신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p>	<p>제6조(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u>5년마다</u>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5년마다, 공간통계정보법률(안)은 3년을 기본단위로 매년 갱신. (주체는 정부로 동일) ● 포함될 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10가지, 공간통계정보법률(안)은 방향5가지 설정 후 11가지 제시 ● 수립 방법 : 국가공간

<p>(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p> <p>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 3.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및 변경 등 관리의 방법과 절차 4. 분야별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체계 5. 공간통계정보자원의 확보 및 배분 6.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투자의 활성화 등 민간참여 8. 공간통계정보관리 시행계획 9. 전문인력의 수급대책 10.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4조에 따른 기본 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연구·개발 4.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 및 유통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7.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국가적 표준의 관리(산업표준, 절차표준, 자료표준, 유통표준과 공간정보 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 8.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9. 위성원격탐사와 위성 측위에 관한 시책 10. 그 밖에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사항 <p>③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하여 수립</p>	<p>정보 기본법안- 중앙 행정기관 부문별 작성 ->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 -> 위원회 심의 확정(령에 의한 예외 근거 마련 : 제3항) / 공간통계정보법률(안)-위원회 심의 -> 국무 총리 확정</p>
--	--	--

	<p>하며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장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엔 예산 관련 조항이 추가적으로 있는바 유의할 부분임.

<p>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3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일괄 편성 및 배정하여야 한다.</p> <p>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와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p>	<p>✓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복투자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괄하여 예산신청을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을 일괄 편성 및 배정하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p> <p>✓ 예산관련 문제와 같이 중요하고 민간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 요청 /배정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관계 부처의 반발을 가져 올 것으로 보임.</p>
---	---	--

	<p>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시행계획의 조정)</p> <p>① 제8조에 따라 관리기관간에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u>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또는</p>	
--	--	--

	<p>관리기관의 장은 총괄기획·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8조(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 ①공간통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평가 및 조정 4.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학식과 덕망</p>	<p>제10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 관련 정책,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의결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제7조제3항에 따른 일괄요청 예산 4.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사항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성원격탐사와 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소속은 동일함. 위원장도 국무총리 동일. ● 최근 정부 소속 위원회의 정비 방침이 국무총리급 위원회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의 국무총리급 위원회도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복안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복안으로 상정할 수 있음.

<p>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통계청장으로 한다.</p> <p>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위원회의 운영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측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변경</p> <p>8.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③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30인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국토해양부장관</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7인 이상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p>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p>	
---	---	--

	<p>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 2. 기본공간정보(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 분과위원회 3. 표준화분과위원회 4. 기술분과위원회 5. 산업육성 및 유통분과위원회 6. 인력양성 분과위원회 7.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위원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과위원회 <p>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연차보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법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연차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님. ● 연차보고서의 작성 주체(정부) 시기(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제출처(국회) 등은 동일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p>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현황 4. 기본공간정보 및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 구축현황 5.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6. 공간정보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p>	<p>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제4항에서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함.</p> <p>● 제3항 연차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해계모니를 놓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작성 주체는 정부이나 자료의 수집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지려는 조항임. 그러나 공간통계정보법률(안)에서도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됨.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나 통계청장이 간사로 예정되어 있음(안 제8조 제3항)</p>
--	---	---

	<p>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공간통계정보의 관리</p> <p>제10조(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①통계청장은 단위통계공간을 기초로 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 분류체계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③통계청장은 분류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최적의 분류체계가 작성·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p> <p>④분류체계의 작성과 의견조회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0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여</p>	<p>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므로 양법의 각 조문 취지는 각 해당 분야에서 동일 목적을 가지고 있음.</p>

<p>②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작성의 방식 2. 자료의 형태 3. 분류체계 4. 자료의 분석방법 5. 보급 및 유통의 방법 6. 적용기술 7.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p>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 연구 및 개발 2.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 도입 3. 공간정보 관련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관련 시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10조제7항제3호의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표준 전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21조(표준 준수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법과 표준과 관련된 다른 법률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p>	<p>즉 통계분야와 지리분야에서 모두 표준화가 필요하므로 각 조문은 상충되는 것은 아님.</p> <p>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의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국회 검토보고서의 지적은 다음과 같음.</p> <p>[제정안의 내용이 국토해양부장관의 표준제정권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한국산업표준과의 중복이 우려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일원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공간정보 분야에서 한국산업표준이 32종이 제정·운용중에 있으므로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p>
<p>제12조(인력양성)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p>	<p>제11조(연구·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p>	<p>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은 병렬적으로 진흥될 필요가 있음. 시범 사업의 경우, 법적인 근거 없이도 실시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이며,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p>

<p>장에게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p>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국제기술협력 및 교류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계획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2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정보체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공간정보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p>이를 모방할 필요는 없을 것임.</p>
--	--	--------------------------

	<p>5. 공간정보의 유통 6. 공간정보목록의 작성</p> <p>제13조(시범사업) 정부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3조(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공간통계정보가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처리 및 취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14조(공간통계정보의 수집 및 생산) ①통계작성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통계작성기관은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기 위</p>	<p>제 14 조(기본 공간정보의 취득·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거나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형·해양·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의 ‘주요 공간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입법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큼. ●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공간정보’의 개념이 수

<p>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한 공간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국 단위의 공간통계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p> <p>④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통계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통계정보 생산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하고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통합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p> <p>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그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본공간정보의 통합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정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때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법률상 공간정보의 목록 작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는 관리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계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계청 소관으로 업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공간통계정보법(안)과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음.
---	--	--

	<p>제1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또는 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p>	
--	---	--

	<p>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p>	
<p>제15조(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통계정보공동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공간통계정보공동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관리, 도시계획, 지적관리, 자원개발, 연안관리, 해양개발, 환경보전, 농림, 건설관리, 수자원관리, 교통체계, 물류,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이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4조는 기존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 등에 관한 法律에 유사한 규정이 이미 있었음. ● 협력하여 구축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법적으로 근거지우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문임. ● 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4조 제3항의 관리기관 장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조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p>제16조(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가 산업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p>		

<p>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 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가공 및 활용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공간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정부는 공간통계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⑤공간통계정보의 제공 대상자 선정 및 선정취소, 그 제공과 이용 또는 활용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공간통계정보의 공개)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 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하거나 이를 민</p>	<p>제25조(공간정보의 공개)</p> <p>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p>	<p>구축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 관련 조문을 두고 있음.</p>

<p>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의 공개 및 민간위탁 또는 협력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아니하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 및 보유하는 방식과 공개등급·양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p> <p>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위원회가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 <p>③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전담기관의 자격이나 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p>		

한다.		
<p>제4장 공간통계정보시스템</p> <p>제19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의 전과정 관리의 전자화 2. 공간통계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3. 이용자 중심의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운용 4. 공간통계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p>③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요건과 운영계획 및 이용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공간통계정보센터) ①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산하에 공간통</p>	<p>제26조(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p>	<p>●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국토해양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형태로 발의되어 원안대</p>

<p>계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 공간통계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 4.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통계청장이 지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통계청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u>여</u>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지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8조(자료의 가공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합리적 이용과</p>	<p>로 입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26조도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문으로 각 부처에서 현재 관리중인 정보를 하나의 센터로 일원화 시키자는 취지는 공감될 수 있으나 자료 요구권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미 국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으며, 수정이 불가피해 보임. <p>안 제27조제2항은 공간정보의 과세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정보,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이들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p> <p>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요청권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적합한지 여부가 의문이고,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p>
--	--	--

	<p>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간정보를 가공·분석 및 활용할 수 있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지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p>
<p>제21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 ①통계청장</p>		

<p>은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접근권한관리 및 사용기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통계청장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p> <p>④공동이용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이용요건 등)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p>		

<p>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이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법인(국가가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권한의 위임·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벌칙) 이 법에 의하여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	<p>제33조(벌칙) <u>제31조제1항</u>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화 체계를 훼손하거나 관리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간정보를 제공 받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은 기존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 벌칙 규척에 있어 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비밀 누설행위에 대해서 1년이해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p>베이스를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된 데이터를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2.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p> <p>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p>	<p>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존 GIS법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특성상 공간통계정보법(안)의 해당 조문은 타당성이 있음.
--	--	---

부칙 1.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복안으로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임.
---	----	--

(4) 입법 추진과 대응 논리

“공간”이라는 용어가 주는 동질감으로 인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과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상충 법률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경쟁 구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입법 추진 전략에 있어 양 법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설령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이 먼저 입법되더라도 양자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오히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에서 공간정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리” 관련 정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차원적이었던 지리 정보가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이 공간정보의 기본 개념이다. 제정안에서도 “공간정보”란 지상·지하·해양·대기 등 시간 및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제2조 1호)고 하였는바, 개념을 모호하게 하여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범용적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안 그대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리에 대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 공간통계정보란 기본적으로 “통계”이다. 특정 공간에서의 통계 정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공간통계정보의 개념이다. IT기술의 발전으로 통계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다채롭게 수집 가능하게 되었고 실시간에 가깝게 수집 관리 가공되어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수량적 데이터를 통계로 인식하던 시대를 벗어나 이와 같은 통계행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통계의 시스템적 관리가 요청되었다. 공간통계정보법률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리 기반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과는 그 대상을 달리한다

공간통계정보법안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정의 규정을 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 진다.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결국 양 법률은 차별화된 법률이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법 모두 입법되더라도 공간통계정보법안을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하여 조화로운 위상 정립이 가능한 법이라고 하겠다.

3)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과의 관계

(1) 법률안 추진 개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은 송광호의원 등 10인의 제안으로 2008년 9월 3일 발의되어 10월 18일 공청회를 거쳤으며,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11월 20일 상정되어 제278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 11월 25일 상정되어, 12월 12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된 상태이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2)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내용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예산 관련 시스템 및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공간정보산업의 다음해 공공의 공간정보산업관련 수요를 예측하여 공개하고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 함(안 제5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 시책을 강구토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신속하게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제정한 공간정보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편집·제정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정부는 중소기업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기업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공간정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코자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간정보투자회사를 설립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하.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 투자회사 등을 설치토록 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토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3) 공간통계정보법(안)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는 공간 정보 산업 진흥에 관련된 조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다. 나아가 민간 산업 육성을 법률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민간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계정보의 제공,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을 뿐이다.

즉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과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법 추진 과정에서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 민간 산업 육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공간통계정보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 공간통계정보의 정보기반으로의 발전
3. 공간통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4. 민간참여 및 시장의 활성화

제6조(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매년 갱신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
3.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및 변경 등 관리의 방법과 절차
4. 분야별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체계
5. 공간통계정보자원의 확보 및 배분
6.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투자의 활성화 등 민간참여
8. 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9. 전문인력의 수급대책
10.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가 산업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간통계정보의 공개)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하거나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공간통계정보의 공개 및 민간위탁 또는 협력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법 추진과 대응 논리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은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민간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 위탁 등의 내용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다르고 상충하는 조항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 입법 추진의 장애가 되는 법률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의 입법 추진은 공간통계정보의 유통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통계법과의 위상 정립

1) 2007년 통계법 전부 개정의 의의

통계법은 2007년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통계청의 위상 강화와 통계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일조한 바 있다.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가. 2006. 3. 30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4. 17)에, 2006. 8. 25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9.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06. 9. 25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2. 22)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 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나.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다.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바.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 제외)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안 제37조).

전부 개정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통계 품질 진단 제도가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통계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통계청장이 통계사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제재 수단이 마련되었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력 있게 통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자발적 협조와 정보 제공에 의존하는 통계 정보의 마련이 점점 정확도와 현실성 양측에서 모두 어려움을 커져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7년 통계법의 전부 개정은 커다란

의미를 가짐에 틀림이 없다.

2) 통계법과 공간통계정보법(안)의 관계

특정 영역의 구체적인 행정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오늘날 법치 행정의 추세이며,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조문 외에 구체화된 법조문이 필요하다. 즉 시스템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률 조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계법을 모범으로 하는 공간통계정보법(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

기존 통계법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로 넓은 의미의 정보 수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량적 데이터를 통계의 대상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공간통계에 대한 포괄 범위가 명확치 못한 것 사실이다. 물론 다소 무리하게 넓은 의미에서는 공간 통계 역시 통계법상의 통계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계법은 기본법으로서 큰 틀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간통계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며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별도의 개별 법률이 아닌 통계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장을 마련하자는 논의 역시 현행 통계법의 구조상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계법 내에 삽입하는 것은 체계 적합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통계정보법(안)은 기존 통계법을 모범으로 공간 통계 관리와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법률로 마련 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은 관계에서 공간통계정보법(안)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기존 통계법을 준용하고,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통계법을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간통계정보법안	통계법	비고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 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통계의 국가적 정보기반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p>	<p>제1조 (목적)</p> <p>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통계법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음.</p>

<p>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간통계정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p> <p>2. “공간통계정보자원”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 자원 및 정보 기술 등 일체의 자원을 말한다.</p> <p>3.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p> <p>4. “단위통계공간”이라 함은 공간통계정보 관리를 위한 최소단위 지역의 지상 및 지하의 공간으로서 통계청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제3조 (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p>	<p>통계 중 공간통계정보는 통계(통계법 제3조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p>		

<p>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공간통계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공간통계정보법 제4조에서 ‘다만,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통계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p>
<p>제2장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등 제5조(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공간통계정보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 공간통계정보의 정보기반으로의 발전 3. 공간통계정보의 안</p>	<p>제2조 (기본이념) 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통계는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한다.</p>	<p>통계법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계승하고, 제4조의 국가 등의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법 제5조~제7조에서 구현함.</p>

<p>전한 관리</p> <p>4. 민간참여 및 시장의 활성화</p>	<p>제4조 (국가 등의 책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6조(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매년 갱신하는 공간통계정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p> <p>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 3.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및 변경 등 관리의 방법과 절차 4. 분야별 공간통계정보의 관리체계 5. 공간통계정보자원의 확보 및 배분 6.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투자의 활성화 등 민간참여 		

<p>8. 공간통계정보관리 시행계획</p> <p>9. 전문인력의 수급대책</p> <p>10.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분석 및 평가</p> <p>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공간통계정보관리시행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공간통계정보관리위원회) ①공간통계정보에</p>		

<p>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간통계정보관리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간통계정보 정책의 평가 및 조정 4.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통계청장으로 한다.</p> <p>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p>		
---	--	--

<p>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거나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위원회의 운영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연차보고) 정부는 공간통계정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장 공간통계정보의 관리</p> <p>제10조(공간통계정보의 분류체계) ①통계청장은 단위통계공간을 기초로 하여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 분류체계를 작성 또</p>		

<p>는 변경할 수 있다.</p> <p>③통계청장은 분류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최적의 분류체계가 작성·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p> <p>④분류체계의 작성과 의견조회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공간통계정보 관리의 표준화)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통계정보 관리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관리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작성의 방식 2. 자료의 형태 3. 분류체계 4. 자료의 분석방법 5. 보급 및 유통의 방법 6. 적용기술 7. 기타 공간통계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p>제22조 (표준분류)</p> <p>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p>	<p>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의 표준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통계법 제22조에 대응하는 규정임.</p> <p>공간통계정보법률은 통계법을 모법으로 하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구체화 보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p>

	<p>아야 한다.</p> <p>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12조(인력양성)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p> <p>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p>	<p>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것을 규정한 통계법 제7조와는 달리, 공간통계정보법에서는 보다 구체화하여 정부가 공간통계정보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음.</p>
<p>제13조(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공간통계정보가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처리 및 취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공간통계</p>	<p>제33조 (비밀의 보호)</p> <p>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p>	<p>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에서 나아가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취급시 주의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의 전환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현실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p>

<p>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공간통계정보의 수집 및 생산) ①통계작성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통계작성기관은 공간통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한 공간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국 단위의 공간통계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p> <p>④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통계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통계정보 생산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p>		

<p>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통계정보공동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공동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공간통계정보의 보급 및 확산) 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가 산업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정부는 공간통계정보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가공 및 활용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공간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정부는 공간통계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간통계정보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⑤공간통계정보의 제공 대상자 선정 및 선정취소,</p>		

<p>그 제공과 이용 또는 활용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공간통계정보의 공개)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민간과 협력하거나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공간통계정보의 공개 및 민간위탁 또는 협력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 (통계의 공표)</p> <p>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p> <p>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p>통계법 제27조의 의하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는 것이 원칙임.</p> <p>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 중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음.</p> <p>단 그 정보의 방대함과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보호 등에 있어 미치는 과급효를 고려하여 선별적 공개 방식을 택하고 있음.</p>

	<p>있는 경우</p> <p>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 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p> <p>①정부는 공간통계정보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위원회가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 <p>③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전담기관의 자격이나 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장 공간통계정보시스템</p> <p>제19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간통계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의 전 과정 관리의 전자화 2. 공간통계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3. 이용자 중심의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운용 4. 공간통계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p>③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요건과 운영계획 및 이용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 (통계의 보급)</p> <p>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제27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p>	<p>통계법 제28조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은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부과하고 있다.</p> <p>공간통계정보법률 제19조는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통계정보의 전 과정 관리를 전자화하고 간행물 발간보다 짧은 주기적 현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법정화하고 있음.</p> <p>본 시스템은 통계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통계가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p>

	<p>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p> <p>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p>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 보급 및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널리 보급 이용되어야 한다는 통계법의 기본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매체가 될 것임.</p>
<p>제20조(공간통계정보센터)</p> <p>①효율적인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산하에 공간통계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정보센터는 다음의 기</p>		

<p>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 공간통계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 4. 공간통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간통계정보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통계청장이 지정한 공간통계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통계청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1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 ①통계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p>		

<p>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p> <p>②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접근권한관리 및 사용기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통계청장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p> <p>④공동이용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이용요건 등) ①통계청장은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통계청장은 이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간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이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간통계정보의 수집, 생산, 처리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법인(국가가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권한의 위임·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벌칙) 이 법에 의하여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	<p>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p> <p>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를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통계법에서는 뇌물죄 관련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p> <p>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속</p>

	<p>제39조 (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p> <p>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p>	<p>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가지고 있다.</p> <p>공간통계정보법에서는 공간통계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형법에서 비밀 누설죄는 신분범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만이 처벌 대상이 되도록 신분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본 조항에서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의 법정형과 그 형벌의 무게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p>
<p>부칙</p> <p>1.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3) 통계법 관련 규범의 미래 지향적 목표 제시

현실적으로 이미 공간통계정보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통계청 내부에서 마

련되어 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계법에서 이 시스템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고 공간통계정보 시스템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계법의 새로운 장으로 마련하기에는 인구 센서스, 산업통계 등과의 균형상 체계 적합성이 떨어지고, 각각의 내용들을 모두 통계법에 담기에는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단일 법률로서 담을 수 없는 상세한 내용들을 적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계법은 현행과 같이 방향과 커다란 틀을 제시해 주는 구조를 유지하고,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위 법률로 개별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규범의 체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향후에는 통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위 구체화 법률들로 공간통계정보법, 인구센서스법 등 분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법률의 구조와 재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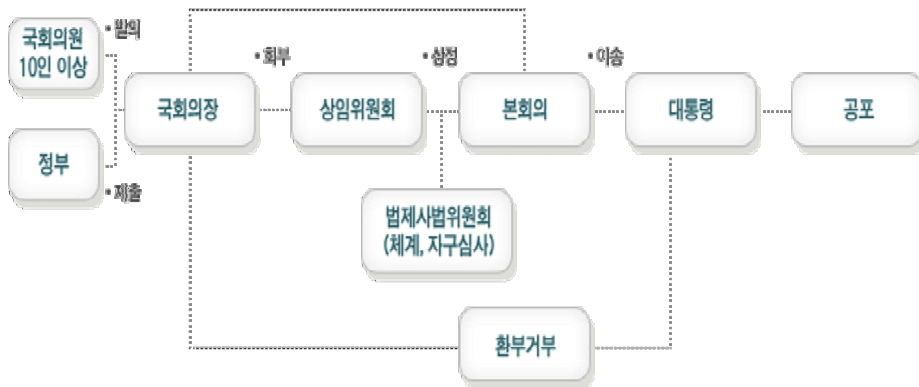
공간통계정보법(안)은 관련되는 직간접 법률과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보완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통계정보법은 관련 분야의 입법 및 정책과 완전한 조화가 가능한 분야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특별법으로, 공간에 관하여는 공간관계법의 특별법으로, 행정에 관하여는 시스템운동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4절 입법 방식의 선택

1. 입법 절차의 개요와 특징

1) 입법 절차의 개요



입법 절차

① 제안⁸⁾

제안권자 : 국회의원, 정부

국회의원 : 10인 이상의 찬성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정 부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

②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③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④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됨.

⑤ 전원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⑥ 본회의 심의·의결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⑦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⑧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⑨ 공포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제8항의 내용과 같이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2) 우리나라 입법 절차의 특징 : 이원적인 법률안 제안

우리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작용의 국회전속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52조가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입법과정에 투입의 길을 또 다른 국가권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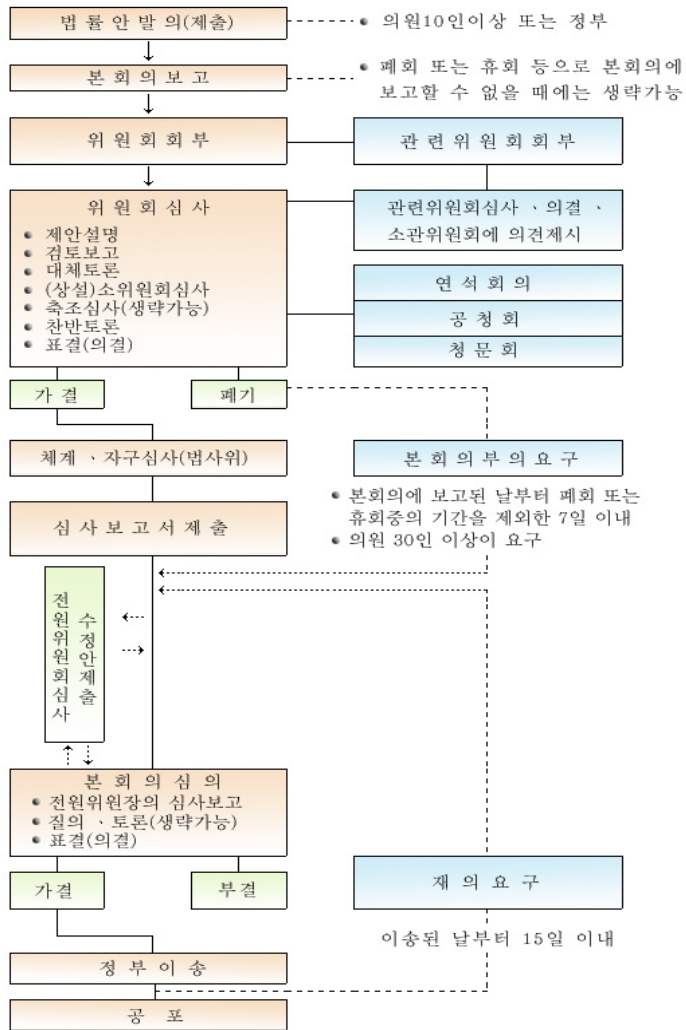
8) 발의는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이고 제출은 정부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내는 경우이다.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함께 묶어 가리킬 때 쓴다.

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제헌헌법 이래로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각각 국회의원과 정부로 나누어놓는 이원적 형태를 제도화하고 있다.⁹⁾

이원적인 법률안제안 형태는 결국 오랫동안 의원의 질적 미비와 자질 전문성이 문제시되어 왔고, 입법보조인력 및 입법준비제도가 미비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입법안의 정부 의존이 시작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⁰⁾

9) 이처럼 우리 헌법은 대부분 국가에서와 달리 이원적 법률안제안제도를 두게 되어 있는 바, 그 기원은 임시헌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1조 제10항은 임시의정원의 직권가운데 ‘법률안을 제출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헌법제15조 제9항에서는 임시대통령의 직권으로서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위원의 동의를 요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제헌헌법 이래 오늘에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법률안 제안의 이원적 구조는 이처럼 임시정부헌법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10) 다만 50년이 지난 현재에 달라진 의회환경에 비추어 이같은 두 갈래의 입법안의 제안방식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는 이제 바야흐로 입법론적으로 검토될 시점에 와있다.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공법연구 제14권 제3호, 3면.



입법의 세부절차

<해외 사례 비교>

1. 대통령제국가

미국은 입법과정에서의 투입은 전적으로 의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매년 1월 ‘일반교서’의 형식으로 입법권고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의원정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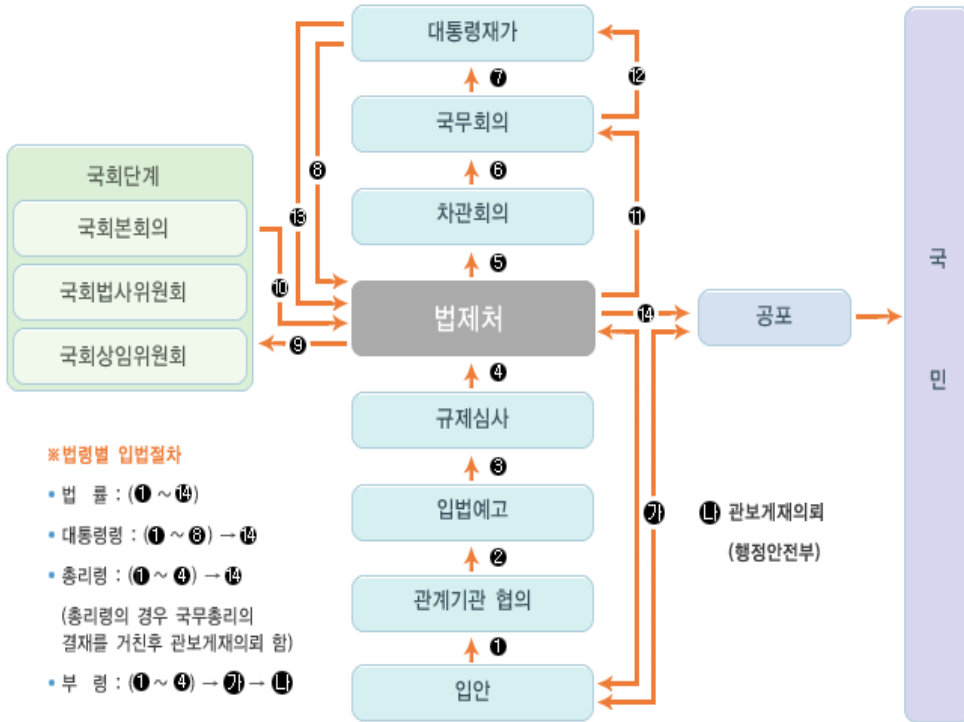
의원정부제 국가인 **프랑스**는 3·4공화국 당시의 혼란과 비효율에 대한 반성으로서 정부에 입법안제출권을 주는 동시에 의원발의입법과정의 경우에도 그 입법대상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특이하게도 프랑스헌법 제38조는 의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여 정부로의 입법권위임을 법률명령(ordinance)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

3. 의원내각제 국가

영국의 경우는 의원만이 입법발의를 할 수 있으나 의원내각제 본질상 의원이 각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구분은 별의미가 없다. 즉, 각료인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은 실질적으로 정부제출법률안이 될 것이고, 일반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의원발의법률안으로 분류가 될 뿐이다. 또한 두 법률안 심의 또는 심사 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 있어서도 헌법적으로는 의원만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나, 내각법 제5조에 의해서 정부제출법률안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일본 또한 의원, 위원회, 정부가 고르게 입법안제출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경우에는 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 전에내각의 법제국과 재무성의 법제국에 의한 심사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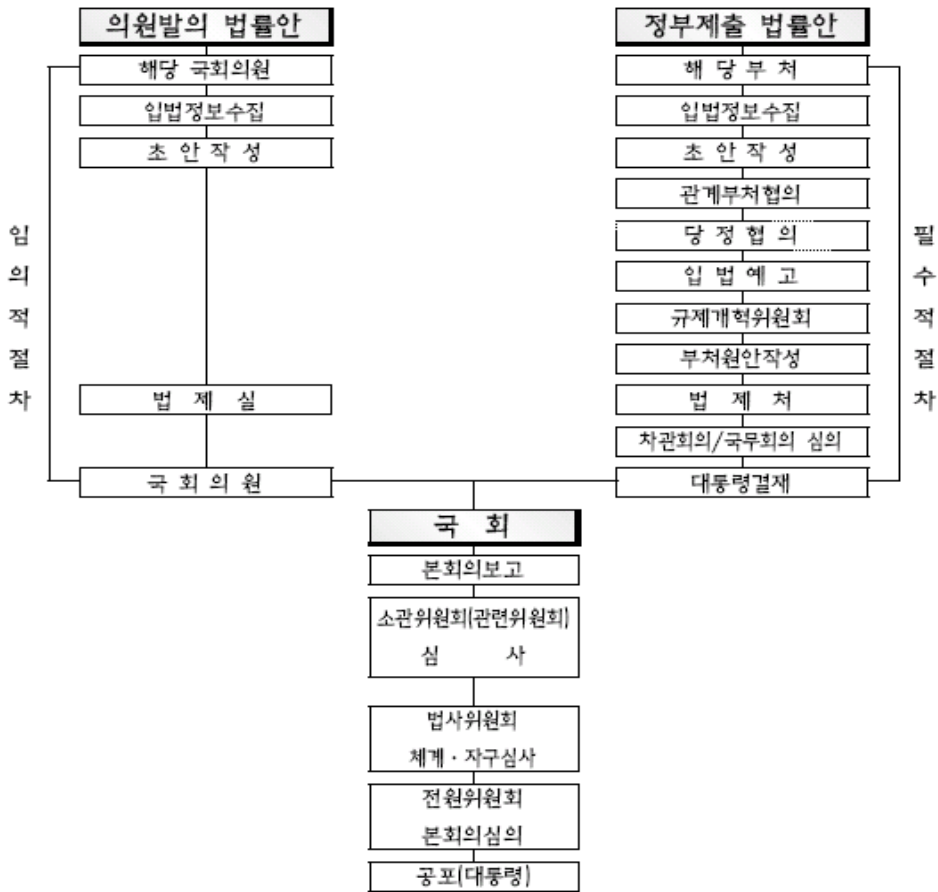
독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원내각제 국가이기는 하나 그 연방국가성의 결과 연방참의원 및 연방의원하원과 함께 연방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주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절차 비교표

2. 의원발의·정부제출의 선택

1) 절차의 비교



의원 발의, 정부 발의 법안 처리 절차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미국과 달리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이 발의한 경우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입법이 된 이후에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양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입법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의원 발의의 장단점

(1) 신속한 진행

의원 발의를 택하게 되면 정부제출에 비해 매우 빠르게 절차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경유하는 일련의 필수적 절차가 의원 발의시에는 필요치 않거나 임의적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입법의 경우,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절차의 진행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데 의원 발의가 이루어지면 공론화가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즉 의원발의의 경우에는 정부제출 법률안과는 달리 의원상호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론과 역주민의 이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과 접촉이 있는 까닭에 신속한 입법수요에의 대처가 용이하다는 점도 그 장점으로 들 수 있겠다.

(2) 민주주의 요청에 부합

국민 참여의 확대 내지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다양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회 중심의 입법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정부의 관여도를 줄여야 할 지양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요컨대 의회중심인 입법과정의 투입과 산출은 오늘날의 국가사회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용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요청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3) 개선 가능성과 문제점

의원 입법은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근본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17대 국회의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 실로 무분별한 수준의 형식적 의정활동경쟁과 난무하는 평가 발표의 공개에 국회의원들이 불모로 잡혀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저질 입법안발의 경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¹¹⁾ 지역민원적 성격의 입법안 발의, 충분한 검토 없는 그리고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 외국입법의 무분별한 베끼기 등도 이에 덧붙여진 폐단이라 할 수 있겠다.

(4) 정부 제출의 절차 회피 수단으로서의 활용

11) 권영설, 전계논문 5면.

입법안 제안과정에 있어서 순수 의원입법안 발의와 함께 정부제출이 갖는 복잡한 과정을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정부 청원적 성격의 입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우리와 같은 이원적 법률안제안 제도에 있어서는 법률안제안의 방식은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 또는 전술로서 어느 한쪽의 절차를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그 복잡성이 더해질 수 있다. 즉, 정부와 국회의원 사이에서 또는 여당과 야당 간에 이른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일종의 ‘차명발의(借名發議)’ 또는 ‘대명발의(貸名發議)’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야 공동발의’를 하는 등 법률안발의의 실질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치적 계산이 그 뒤에 깔려 있을 수 있다.

3) 정부 제출 입법의 장단점

정부 제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필수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률안이 수정되는 등 보다 발전적 형태의 법안이 도출 가능하고 관련 부처간의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통계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입법 추진 방안은 원칙적으로 정부 제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많은 시간을 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권한 설정이나 부처간 협력, 법안의 활용 및 운용을 위한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발의가 이루어지고 발의가 된 이후에는 법안의 통과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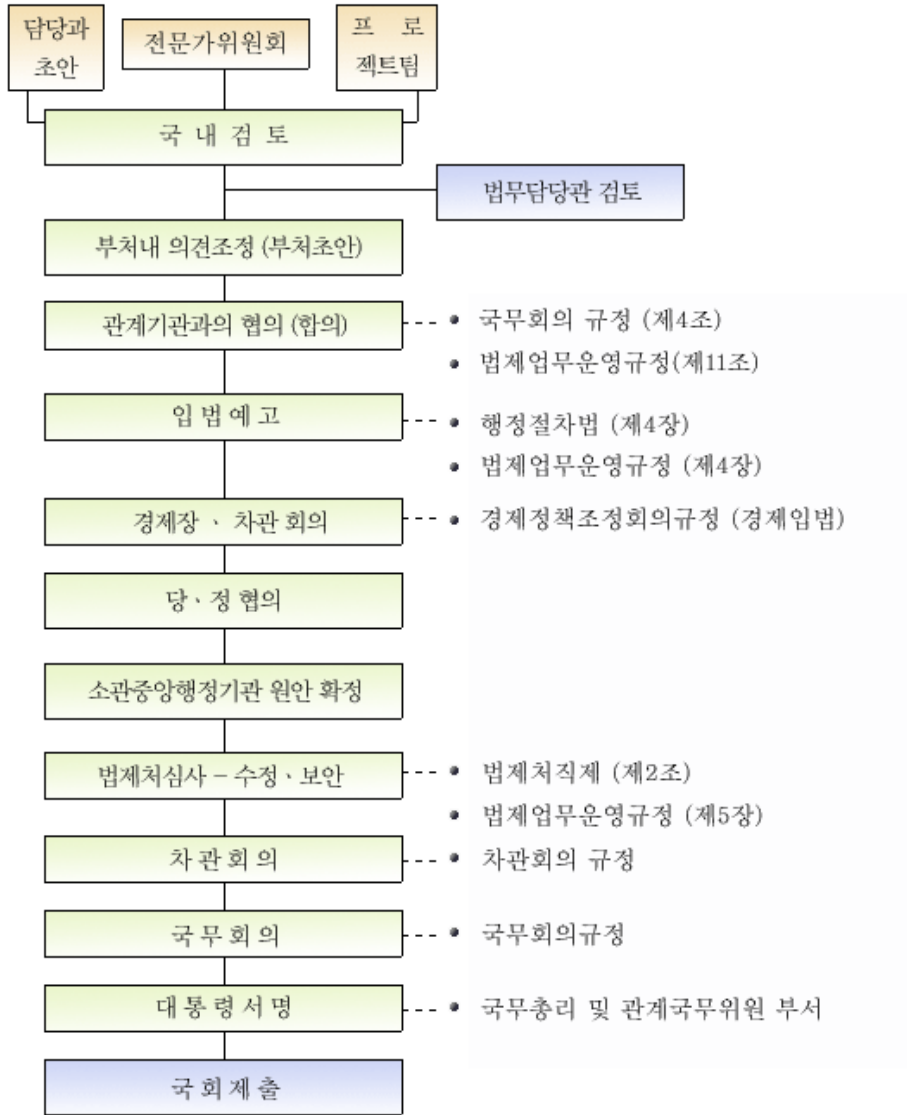
또한 집행 기관인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 향후 하위 법령의 운용 방안까지 미리 고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대통령과 부령으로 정부가 하위 법령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법률 체계 마련이 편리하다. 하지만 입법 추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은 동시에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3. 소결

1) 절차적 간편성과 가결율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절차에 있어 절차적 간편성은 의원발의가 매우 높다. 부처 간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정부제출과는 달리 의원발의는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의 가결율은 정부제출의 경우가 의원발의 보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입법부인 국회가 ‘통법부’라는 오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시절이 꽤 오래



지속된 바 있다. 법안을 사실상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는 단지 거수기의 역할로 통법만 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87년 이후로 의원 발의의 수는 정부 제출 법안 건수를 압도하고 있으며, 가결 된 법률안의 건수를 보더라도 정부제출 보다 의원발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발의가 압도적인 것은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며 또한 함양미달의 법안들도 많이 제출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정부입법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법안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이 사전 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

안의 가결율이 높다고 판단된다.

제17대 국회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의원발의가 6,387건으로 정부 제출 1,102건의 6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결된 건수를 보면 의원발의가 1,350건으로 발의 건수 대비 21.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정부 제출은 563건이 가결되어 무려 51.0%의 가결율을 보여주고 있다. 절차면에서 의원발의가 보다 절차적 간편성이 높은 반면, 가결율은 정부제출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9> 제17대 국회 처리의안 통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	원안	수정			
의원발의	6,387	6,387	1,350	823	527	6	4,945	86
정부제출	1,102	1,102	563	131	432	0	536	3
총계	7,489	7,489	1,913	954	959	6	5,481	89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2008-11-29 접속]

2)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

헌법적 관점에서 입법 추진은 의원 발의 형식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의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정부제출의 전통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통계청이 추진하는 법률안은 정부 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제출을 위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입법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제출이면서 법안제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비하여 의원발의의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부부처간의 예산 협의과정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 절차의 곤란성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여러 단계의 절차가 의원발의입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생략 또는 절약될 수 있는 까닭에 실제로 많은 경우에, 사실상 정부 제출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의원 발의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어떠한 입법 절차를 택할 것인지는 장단점과 헌법적 의의를 고민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관련 입법안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및 공간정보산

업진흥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속한 공론화를 원한다면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는 필수적 과정이며 통계, 정보, 행정, 지리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 자세로 거치는 것이 입법 전략 및 향후 업무에도 유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록]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안),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6
----------	-----

발의연월일 : 2008. 8. 18.

발 의 자 : 권택기 · 이경재 · 권영진
남경필 · 원희룡 · 강성천
신상진 · 윤상현 · 손범규
김용태 · 유일호 · 송광호
김효재 · 강승규 · 이춘식
진수희 · 박종희 · 안상수
백성운 · 주성영 · 심재철
김성태 · 배은희 · 이혜훈
주광덕 · 나경원 · 구본철
이정선 · 나성린 의원
(29인)

제안이유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해 온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국토공간에서 생산된 정보체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며,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국민은 관리기관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 나.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복투자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괄하여 예산신청을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을 일괄 편성 및 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 마.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두고, 국토해양부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형·행정구역·지적 등을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아. 관리기관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16조).
-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도로·하천 등에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차. 공간정보의 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카.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타. 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 파.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규정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의 공간정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해양·대기 등 시간 및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란 다른 공간정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국가공간정보기반”란 국가가 국토정책수립, 행정과 공간정보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체계, 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7.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국가공간정보기반과 활용체계를 말한다.
9.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형도·지적도·해도 등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10.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공간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취득·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에 유일하게 부여하는 공간정보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유지·관리 및 공개하여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현황
4. 기본공간정보 및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 구축현황
5.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6. 공간정보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계획수립 및 추진

제6조(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4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연구·개발
4.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 및 유통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7.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국가적 표준의 관리(산업표준, 절차표준, 자료표준, 유통표준
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
8.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9. 위성원격탐사와 위성측위에 관한 시책
10. 그 밖에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사항

③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3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0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일괄 편

성 및 배정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와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조정) ① 제8조에 따라 관리기관 간에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총괄기획·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 관련 정책,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의결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제7조제3항에 따른 일괄요청 예산
4.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사항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성원격탐사와 위성측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변경
8.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7인 이상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
2. 기본공간정보(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를 포함한다) 분과위원회
3. 표준화분과위원회
4. 기술분과위원회
5. 산업육성 및 유통분과위원회
6. 인력양성 분과위원회
7.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위원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과위원회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국제기술협력 및 교류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공간정보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공간정보목록의 작성

제13조(시범사업) 정부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 및 활용

제14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거나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형·해양·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하고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통합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하여는 제 15조를 준용한다.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그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본공간정보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또는 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기획·조정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중복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도로·하천·교량 등 주요 공간을 구성하는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공간정보참조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대상·유지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간정보 메타데이터의 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제19조에 따른 표준 또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고 상호 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 또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② 공간정보 공유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관련 표준 또는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또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의 표준 또는 기술적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의 공간정보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 연구 및 개발
2.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 도입
3. 공간정보 관련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관련 시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10조제7항제3호의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표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표준 준수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법과 표준과 관련된 다른 법률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22조(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기관 간의 공동 활용 촉진과 대국민 정보제공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최신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 산업계와 학계 등을 포함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4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관리, 도시계획, 지적관리, 자원개발, 연안관리, 해양개발, 환경보전, 농림, 건설관리, 수자원관리, 교통체계, 물류,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이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 및 보유하는 방식과 공개등급·양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국토공간정보센터

제26조(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지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가공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합리적 이용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간정보를 가공·분석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지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등

제29조(공간정보 등의 보호)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과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

제32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

원이었던 자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화 체계를 훼손하거나 관리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간정보를 제공 받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된 데이터를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보며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제195조의3을 삭제한다.

③ 국토기본법 제23조를 삭제한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를 삭제한다.

⑤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 정보”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연구와 개발(법안 제11조)

-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
- 산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와 개발
- 국제기술협력 및 교류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계획

나. 정부의 지원(법안 제12조)

- 공간정보체계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 공간정보체계의 전문인력 양성
-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공간정보의 유통
- 공간정보목록의 작성

다.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법안 제22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기관간의 공동활용 촉진과 대국민 정보 제공 기반조성을 위해 관기기관과 공동으로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라.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법안 제2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정보센터를 설치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기존의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서 정한 지리정보의 개념을 시간·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폐지됨

나. 법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안 제22조에 따른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은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수반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법 제정으로 재정수요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예산신청에 의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며,

법안 제11조, 제12조의 연구개발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6조의 내용을 이관한 것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해 새로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

다. 법안 제22조의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정한 중복투자 방지(안 제16조) 및 공간정보의 활용 등(안 제24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활용체계로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연히 정부재정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동 조문도 법안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와 같이 매 회계연도에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정부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임

또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특정대상 및 특정지역을 전제로 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법안 제11조, 제12조, 제22조의 내용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하여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됨

라. 법안 제26조의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은 현행 지방세법 제195조의3의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를 '국토공간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현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국토공간정보센터)함과 아울러 그 설치근거를 지방세법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한 것이고, 주요업무를 기존의 과세기초자료 수집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공간정보를 수집·관리·활용 등 업무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정부의 재정이 수반

되지 않아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권택기 의원실 김우영 보좌관(788-2207, kim412@assembly.go.kr)

〈참고자료〉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구·개발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국제기술협력 및 교류

제26조 (정부의 지원)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리정보체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지리정보체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지리정보체계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지리정보의 유통
6.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 지방세법

제195조의3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①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수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송광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7
----------	-----

발의연월일: 2008. 9. 2.

발 의 자: 송광호·정장선·김우남
구본철·권택기·조원진
여상규·이재선·나성린
나경원 의원(10인)

제안이유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3조).
-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예산 관련 시스템 및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공간정보산업의 다음해 공공의 공간정보산업관련 수요를 예측하여 공개하고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

- 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안 제5조).
-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안 제10조).
- 바.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신속하게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제정한 공간정보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편집·제정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차.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타. 정부는 중소기업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기업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 파. 공간정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코자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간정보투자회사를 설립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 하.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 투자회사 등을 설치토록 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토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8. 18 권택기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해양·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이를 다른 정보 또는 기술과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 나. 위성영상의 획득·처리·활용업
 -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마. 유비쿼터스 도시(u-city) 등 첨단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관련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솔루션, 서비스 등을 말한다.
-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 등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연차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9조의 국가공간정보체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4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예산 관련 시스템 및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관련 공공수요를 파악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수요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법 제25조의 국토공간정보센터(이하 “국토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공간정보센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에 수정이필요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공간정보센터에 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및 수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유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에 대한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결제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

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시스템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교통·물류, 실내공간 측위, 유(u)-건설, 첨단 도시 등 위치기반의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하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 활동과 관련기술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
2.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공간정보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0조(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가공공간정보, 공간정보 관련 서비스·솔루션·기기 등

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토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사업을 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규격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공동이용에 필요한 규격 등을 국제표준으로 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규격의 고시, 국제표준화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6조의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의 대가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가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동 기준의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 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중소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정보사업자 육성을 통한 공간 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공간정보 관련 공사· 제조·구매·용역 등(이하 “공간정보사업조달”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정보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입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세제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공간정보투자회사

제22조(공간정보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간정보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간정보투자회사(이하 “공간정보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같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공간정보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④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공간정보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투자대상사업) 공간정보투자회사가 투자하는 공간정보사업은 제10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가공공간정보, 공간정보에 관련된 서비스·솔루션·기기 등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4조(공간정보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공간정보투자회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존립기간) ①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공간정보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간정보투자회사는 공간정보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의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영업보고서의 제출) 공간정보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간정보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금융위원회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간정보투자회사
2.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 사무관리 회사
3. 공간정보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공간정보사업자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8조(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한 특례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는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간정보사업에 관한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등은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투자위험보증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간정보투자회사에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공간정보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간정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의 취득
3.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의 취득
4. 공간정보 등의 개발·생산·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공간정보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취득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공간정보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투자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2항 각 호의 방법
2. 국·공채의 매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공간정보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금차입 등) ① 공간정보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30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공간정보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장 공간정보산업진흥기금 등

제32조(공간정보산업진흥기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토해양부 소관 및 유관기관에 속한 기금 등으로부터 예탁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제3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및 연구의 지원
2.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3. 공간정보의 유통

4. 위치기반 융·복합공간정보산업의 지원
5.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6. 공간정보 지원연구
7. 공간정보기술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공간정보산업의 창업지원
9. 공간정보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용자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5조(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업무 전담인력 10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3. 비영리법인일 것
4.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공간정보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3. 공간정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공간정보관련 품질인증
7. 공간정보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산업의 분쟁 조정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간정보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3. 공간정보등의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관리기관의 정보 공개 실적이 우수한 자
3. 공간정보데이터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자
4. 공간정보 관련 산업 및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산업과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제3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지원기관의 직원으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잘못된 가공공간정보(제6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 가공공간정보를 포함한다)를 생산 또는 유통시킨 공간정보사업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한 유통사업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거짓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법안 제7조제2항에 따른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 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산업지원
- 법안 제1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제품 구매촉진 지원
- 법안 제11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
- 법안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
- 법안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 법안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 법안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설 지정 및 재정적 지원
- 법안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법안 제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법안 제7조제2항에 따른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망 시스템구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포함한 상기 재정수반요인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의 재정수반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은 각각의 특정대상 및 특정지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전체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어려움.

향후, 대통령령이 정해지고 유통망이 구축되어 추진되거나 융·복합 공간정보체계 수립 및 선업이 진행되는 등 동 법안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송광호 의원실 한동석 보좌관(연락처 784-17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1600
----------	------

제출연월일 : 2008. 10. 27.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 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안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안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안 제11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였으면 착공 및 완공 사실과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안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 등을 활용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안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안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토지의 조사·등록(안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부피 및 변위(變位)를 계산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 등을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및 지도의 제작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5. “수로측량”이란 해양의 수심·지구자기(地球磁氣)·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좌표 등으로 표시한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航空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를 포함한다.

11. “수로조사”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12. “수로조사성과”란 수로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13. “수로도서지”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인쇄물과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로도지(水路圖誌)와 수로서지(水路書誌)를 말한다.

14. “수로도지”란 다음 각 목의 도면을 말한다.

가.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해도(海圖)

나. 해양영토 관리, 해양경계 획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영해기점도

다. 연안정보를 수록한 연안특수도

라. 해저지형과 해저지질의 특성을 나타낸 해저지형도

마. 해저지층분포도, 지구자기도, 중력도 등 해양 기본도(基本圖)

바. 조류(潮流)와 해류(海流)의 정보를 수록한 조류도 및 해류도

사. 해양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안침수 예상도

아.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주제도

15. “수로서지”란 다음 각 목의 서지류를 말한다.

가.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나.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潮汐) 및 조류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다. 항로표지의 번호, 명칭, 위치, 등질(燈質), 등고(燈高), 광달거리(光達距離) 등을 수록한 등대표

라.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마. 해양위기 발생 시 선박의 안전에 관한 신호방법을 수록한 국제신호서

바.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사.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서지류

16. “항행통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로도서지의 정정, 항해에 필요한 경고,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과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17.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3. 순수 학술 연구 및 군사 활동을 위한 수로조사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탐사를 위한 수로조사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3.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측량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로조사에서 간출지(干出地)의 높이와 수심은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4.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②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측량기준점)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2. 공공기준점: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유지에 측량기준점표지가 설치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하여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및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파나 다른 공공측량성파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 각 목의 측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측량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공공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도지사는 공공측량을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측량성파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파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파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파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공측량성파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공측량성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파 및 공공측량기록 또는 그 사본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파 및 공공측량기록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공공측량성파 및 공공측량기록을 송부하여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성파 또는 공공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나 공공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및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①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의 정확도 확보
2. 측량의 중복 배제
3.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제4절 지적측량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제73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나. 제76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다.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라.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1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2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3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합병 등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절 수로조사

제30조(수로조사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로조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수로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연구
3. 수로도서지의 간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로조사의 구역과 내용
5. 수로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6. 조사용 선박의 건조(建造), 해양관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수로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수로조사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선박, 부표(浮標), 관측시설, 위성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어항 등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2.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기준점 설치 및 조사
3. 조석, 조류, 해류, 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측
4. 관할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5. 연안해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공사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공사(어항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의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서의 인공어초(人工魚礁)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 전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로도서지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④ 선박을 사용하여 수로조사를 하는 자는 수로조사에 사용되는 선박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수로조사 실시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로조사의 구역, 기간 및 조사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로조사계획을 받은 경우
4. 제102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로조사를 하는 경우

제33조(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①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한 자는 그 수로조사성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수로조사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판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된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로도서지를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⑦ 판매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수로정보 관련 사항의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로조사를 한 자(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 해당 수로조사성고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사항

2.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를 하는 자: 해당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면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어업의 면허, 면허취소, 면허 변경 및 정치어구(定置漁具)의 위치와 설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

4. 수중에서 침몰물(沈沒物) 또는 그 밖에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자 그 발견 사실에 관한 사항

제38조(관계기관의 수로조사성과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로조사를 할 때에는 그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석·조류·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계획을 제출한 관계기관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제39조(측량기술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신고를 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①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측량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④ 측량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로기술자) ① 이 법에 따른 수로조사는 수로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수로기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 해양,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3. 국제수리기구(IHO)가 인정하는 수로측량사 자격 취득자

③ 수로기술자의 신고, 의무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기술자”는 “수로기술자”로, “측량기술경력증”은 “수로기술경력증”으로, “측량업무”는 “수로조사업무”로 본다.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만을 할 수 있다.

1. 제72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제8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제72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제46조(측량업의 지위 승계)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8조(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

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측량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4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지적측량 신청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제7호·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12. 지적측량업자가 제104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적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측량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측량이 끝날 때까지 측량업자로 본다.
 - ④ 측량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측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① 수로조사업 또는 해도제작업(이하 “수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로사업을 등록하려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로사업자”라 한다)에게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로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수로사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수로사업의 지위 승계, 수로사업등록의 결격사유, 수로사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로사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 및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수로사업자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는 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업”은 “수로사업”으로, “측량업자”는 “수로사업자”로, “측량업등록증”은 “수로사업등록증”으로, “측량”은 “수로사업”으로 본다.

제55조(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①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절 협회

제56조(측량협회) ① 측량기술자와 측량업자는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측량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측량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측량협회를 설립하려면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과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측량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측량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해양조사협회) ①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를 연구·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해양조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해양조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해양조사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해양조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절 대한지적공사

제58조(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공사의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공사의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2.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4.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5. 그 밖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61조(공사의 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62조(공사에 대한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감독한다.

제63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지적 재조사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垸)·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

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적공부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2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경계점을 좌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추 두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74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76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7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8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필지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제82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8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③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正本(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제84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5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별) 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

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제87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무주(無主)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 등본·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8조(등기축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또는 제84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축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축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축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3조,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축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0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적공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경우

②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성

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91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2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9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면 취소 사실을 공고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6조(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7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판매대행업자가 제35조제5항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4. 제94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제99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99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1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02조(업무의 수탁)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만 해당한다)의 이전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5.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판매 또는 배포
7.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8.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수로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수로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4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3.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신청

8. 제36조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12.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3. 제7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7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8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79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0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1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2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5. 제91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7. 제92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81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

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벌칙

제105조(벌칙)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
5. 제54조를 위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하고 수로사업을 한 자
6. 제9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7.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자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6.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7.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4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8.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 가. 제76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 나. 제77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 다. 제78조에 따른 분할 신청
- 라. 제79조에 따른 합병 신청
- 마. 제80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 바. 제81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사. 제82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 아. 제8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 자. 제8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9.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제10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의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 7.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 8.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12.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14.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측량법」
2. 「지적법」
3. 「수로업무법」

제3조(측량업자 등의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호(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측량용 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의 「측량법」(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측량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Bessel)값에 따른다.

2. 위치는 지리학상의 경도 및 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값에 따른다.

2.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지적도를 제작할 때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 및 도곽(圖廓)을 직각좌표로 표시한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측량 및 수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시행한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 및 그 성과와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측량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지적측량 및 그 성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수로조사 및 그 성과로 본다.

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

제8조(판매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9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0조(측량업 및 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은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변경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변경등록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등록한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11조(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측량협회와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각각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측량협회와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로 본다.

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제13조(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제91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를」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 「지적법」 에 따른 측량”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6호 중 “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3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27조제1항제35호 중 “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내지 제31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3조부터 제89조까지, 제97조, 제100조, 제104조 및 제10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 「지적법」 제5조”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 「지적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 「측량법」 제39조”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地籍法에 의한 所管廳”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호 및 제109조제1항제18호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본문 중 “「지적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 제21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소관청(所管廳)”을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地籍所管廳)”으로 한다.

⑭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의한 도면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80조제4항 중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에도”로 한다.

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 「지적법」 제27조”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⑱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 「지적법」 제27조”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⑲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 「지적법」 제27조”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 「지적법」 제3조제2항”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㉑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 「지적법」 ”을 각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1호 중 “「지적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4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㉕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법」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㉖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㉗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㉙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의 카목 중 “地籍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㉖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㉗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7조, 제9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

한다), 제10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0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로 한다.

③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⑦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⑧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를」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⑤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제출

⑥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8조(지적위원회)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제58조(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90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법률 제정(안)은 기존의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을 통합한 법률안으로 법률 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 소요가 없음

※ 대한지적공사, 협회, 지적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등은 이미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본 법의 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 발생이 없이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음

4. 작성자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허 룡 (2100-8327)

